



## ■ 연구진

연구책임자	<b>고제이</b>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b>하솔잎</b>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b>나원희</b>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b>박소은</b>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b>이진이</b>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원
	<b>최환용</b>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7.29)한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5
<b>제2장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과 시사점</b> .....	<b>7</b>
제1절 수급자격 및 대상연령 현황 .....	9
제2절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현황 .....	17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32
<b>제3장 아동 양육부담과 정책인식</b> .....	<b>37</b>
제1절 아동 양육비용 추계 .....	39
제2절 아동수당 인식조사 결과 .....	49
<b>제4장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과제</b> .....	<b>69</b>
제1절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실태 분석 .....	71
제2절 법제분석 .....	91
제3절 공공재정 환수에 관한 법령과 아동수당의 환수제도와의 관계 .....	100
제4절 아동수당 오지급 환수관리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	103
<b>제5장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b> .....	<b>105</b>
제1절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별 기대효과 .....	107
제2절 제도개선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 .....	117
제3절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	123
<b>참고문헌</b> .....	<b>127</b>



**부록 ..... 131**

[부록 1] 조사표: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 조사 ..... 131

[부록 2] 조사표: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 조사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 148

# 표 목차



〈표 1-1〉 아동수당제도 변화와 지출 현황 .....	3
〈표 2-1〉 국가들의 아동(가족)수당 수급 관련 거주요건 사례 .....	10
〈표 2-2〉 아동(가족)수당 수급 관련 소득요건 적용 국가 .....	12
〈표 2-3〉 아동(가족)수당 수급 관련 기타요건 적용 국가 .....	13
〈표 2-4〉 아동(가족)수당 수급 관련 여건 변화에 대한 정보 고지 의무 명시 국가 .....	14
〈표 2-5〉 아동 본인에게 아동(가족)수당이 직접 지급될 수 있는 국가 사례 .....	15
〈표 2-6〉 25개국 아동수당 대상 아동연령 기준 (만 나이 기준) .....	16
〈표 2-7〉 25개국 아동(가족)수당 지급방식 (국가명 가나다순) .....	18
〈표 2-8〉 정액 지급 국가 .....	19
〈표 2-9〉 차등 지급 국가 .....	20
〈표 2-10〉 정액 지급 국가의 아동수당 및 다자녀가구 수당 현황 .....	22
〈표 2-11〉 차등 지급 국가: 연령 기준 .....	24
〈표 2-12〉 차등 지급 국가: 출생순서 또는 아동수 기준 .....	26
〈표 2-13〉 차등 지급 국가: 연령 및 출생순서/아동수 모두 적용 .....	29
〈표 2-14〉 OECD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 자동조정제도 적용 여부 .....	31
〈표 2-15〉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대상 연령 .....	33
〈표 2-16〉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금액 .....	35
〈표 3-1〉 인구집단별 필요 지출금액 및 사회보장 수요 .....	39
〈표 3-2〉 가구 내 성인 및 자녀에 대한 지출 항목과 공통지출항목 내역 .....	41
〈표 3-3〉 연도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추이 .....	41
〈표 3-4〉 첫째아 교육상태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	42
〈표 3-5〉 자녀 수별 1인당 양육비용(2021년) .....	42
〈표 3-6〉 소득수준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	43
〈표 3-7〉 자녀 수별 소득수준별 가구 수 분포(2021년) .....	43
〈표 3-8〉 자녀 수별 소득수준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	44
〈표 3-9〉 자녀 수별 첫째아 교육상태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	45
〈표 3-10〉 첫째아 교육상태별 소득분위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	46
〈표 3-11〉 가구 총지출 대비 자녀양육비용 추이 .....	46
〈표 3-12〉 자녀수별 가구 총지출 대비 자녀양육비용(2021년) .....	47
〈표 3-13〉 소득분위별 자녀수별 가구 총지출 대비 자녀양육비용(2021년) .....	48
〈표 3-14〉 설문조사 개요 .....	49
〈표 3-15〉 응답자 특성 .....	50

〈표 4-1〉 아동수당 부정적 지급 환수 결정 및 환수 현황(2019~2021) .....	72
〈표 4-2〉 2021년 해외장기체류 건당 환수결정액 분포 .....	72
〈표 4-3〉 2021년 시군구별 해외장기체류 환수결정건수 분포 .....	74
〈표 4-4〉 응답자 분포표 .....	75
〈표 4-5〉 복수국적 아동의 해외여권 사용 출입국 정보 인지/확인이 어려운 이유 .....	78
〈표 4-6〉 복수국적아동이 지자체에 변동신고 없이 해외여권으로 출국할 경우,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	80
〈표 4-7〉 해외장기체류 의심자 통보를 받았으나, 담당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과중 등으로 지급정지 결정 지연이나 착오로 인한 급여정지기간(국외체류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중 과오지급 발생 문제 해결 방안 .....	82
〈표 4-8〉 ① 시스템 정비 및 개선 필요(시스템상 자동정지 및 급여 미생성 기능 필요, 시스템상 조회 가능 개선 필요, 시스템 오류개선 등) .....	87
〈표 4-9〉 ② 규정개선 및 제재조치 강화(환수절차방식 규정 필요, 90일 이상을 즉시 정지로 수정, 제재조치 필요 등) .....	89
〈표 4-10〉 ③ 인력구조 개선 및 업무조정, 제도에 대한 홍보(민원에 따른 인력구조개선 및 업무조정, 업무 매뉴얼 개선,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홍보 필요 등) .....	90
〈표 4-11〉 아동수당법(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의 구성 .....	92
〈표 4-12〉 아동수당법 구성 및 내용의 변화 .....	94
〈표 5-1〉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 .....	110
〈표 5-2〉 빈곤율과 빈곤갭 정의 .....	110
〈표 5-3〉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별 빈곤 완화 효과(대상연령 확대) .....	111
〈표 5-4〉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별 빈곤 완화 효과(다자녀 추가지원) .....	112
〈표 5-5〉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별 빈곤 완화 효과(대상연령 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원) .....	112
〈표 5-6〉 다자녀 추가지원 시 자녀 양육부담 완화 효과(전체) .....	113
〈표 5-7〉 다자녀 추가지원 시 자녀 양육부담 완화 효과(자녀 수별) .....	113
〈표 5-8〉 다자녀 추가지원 시 자녀 양육부담 완화 효과(소득수준별) .....	114
〈표 5-9〉 추계산식 .....	117
〈표 5-10〉 현행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 .....	117
〈표 5-11〉 연령확대 시나리오별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 .....	118
〈표 5-12〉 연령별 출산순위의 산출과정 .....	119
〈표 5-13〉 출산순위별 아동 수(2021년 기준) .....	119



---

〈표 5-14〉 다자녀 추가지원 시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2023년) .....	120
〈표 5-15〉 다자녀 추가지원 시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 .....	120
〈표 5-16〉 시나리오별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 .....	121
〈표 5-17〉 시나리오별 지출 대비 소득분배 개선효과(2020년 기준) .....	123

# 그림 목차

[그림 3-1] 아동수당 수급여부(n=1000명) .....	51
[그림 3-2] 아동수당 수급자의 응답자 특성(n=200명) .....	51
[그림 3-3] 아동수당 사용처(n=200) .....	52
[그림 3-4] 아동수당 만족도(n=200) .....	53
[그림 3-5] 수급아동 연령별 만족도(n=257) .....	54
[그림 3-6] 연령별, 자녀수에 따른 만족도(n=200) .....	55
[그림 3-7]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n=205) .....	55
[그림 3-8] 연령별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n=205) .....	56
[그림 3-9] 자녀수별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n=205) .....	57
[그림 3-10] 아동수당 주요역할 .....	57
[그림 3-11] 미성년자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의 주요역할 .....	58
[그림 3-12] 아동수당 확대방식 .....	59
[그림 3-13] 만8세 미만 지급금액 인상 이유 .....	60
[그림 3-14] 만8세 미만 지급금액 인상 방안 .....	61
[그림 3-15] 만 8세 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	61
[그림 3-16] 만 8세 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	62
[그림 3-17]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	63
[그림 3-18]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	63
[그림 3-19]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	64
[그림 3-20]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	65
[그림 3-21] 이주아동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응답자 특성 분석 .....	66
[그림 3-22] 자녀유무 및 자녀수에 따른 응답결과 .....	66
[그림 3-23] 아동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응답결과 .....	67
[그림 4-1] 2021년 시군구별 해외장기체류 관련 건당 환수결정액 .....	73
[그림 4-2] 해외장기체류(90일 이상) 아동에 대한 과오지급 환수율 .....	76
[그림 4-3] 환수결정이 발생하는 이유 .....	77
[그림 4-4] 복수국적 아동이 해외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	77
[그림 4-5] 해외 장기체류 아동 수 대비 관련 신고 비율(2020~2021년) .....	83
[그림 4-6] 사전환수통지서 발송여부 및 통지방법 .....	84
[그림 4-7] 환수통지서 발송기간 및 통지방법 .....	85
[그림 4-8] 실제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86



---

[그림 5-1]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확대 방향별 양육부담(가구총지출 대비 양육비용) 차이 .....	115
[그림 5-2]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확대 방향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차이 .....	116
[그림 5-3]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별 연간 소요재정(국비+지방비) .....	122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아동수당은 사회구성원들의 생애초기 일정 기간 동안 이전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로써 2018년 9월 도입되어 현재에는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사회보장급여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요약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위험의 개인화 경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아왔고, 현재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급여제도이다. 2018년 3월 27일 제정된 「아동수당법(18.9.1 시행)」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시행되었고, 2019년 4월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같은 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되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동시에 0~1세 아동에 대하여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도입되었다.

〈표 1-1〉 아동수당제도 변화와 지출 현황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적용기간	지급연령	소득기준	수급아동 수	국비+지방비 총액
2018	9~12월	6세미만	소득하위 90%	216	8,581
2019	1~12월	7세미만(9월 이후)	4월 소득기준 폐지 (1~3월 분 소급지급)	264	28,992
2020	1~12월	7세미만	-	251	30,984
2021	1~12월	7세미만	-	248	28,729
2022	1~12월	8세미만(4월 이후)	-	273	29,423

주: 1) 2018~2022년 수급자수는 보건복지부 연도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기준

2) 2018~2021년은 결산, 2022년 제2회추경예산안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내부자료), 2018~2021년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결산; 대한민국정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자료 기초로 자체 작성

#### 4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이처럼 제도 도입 이래 계속 정책대상을 넓혀온 오늘날의 아동수당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생애주기의 초반 인구 집단 전체를 모두 포괄하는 사실상 유일한 보편적 수당제도로 발전해오고 있다. 제도 시행 만 4년이 경과한 지금 아동수당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제도 시행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최근의 아동수당제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자 만족도는 87.3%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지만, 전년도 조사에 비해 1.6%포인트 낮게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 제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라는 아동수당의 목적과 OECD 회원국들의 제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적정성 측면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크게 ①연령확대, ②지급 금액 인상, ③출생순위/자녀수별 금액 차등, ④연령별 금액 차등 등이 제안되었다. 국가별 재정여건이나 인구구조,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제도 또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데, 2018년 아동수당법 신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지급 연령 확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한국 아동수당제도의 성과를 진단하고 변화된 정책여건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아동수당제도의 내용과 별개로 제도운영에 있어 2021년도 정부합동감사와 국회 2021년도 결산 검토에서 해외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및 환수 소홀의 문제가 연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해외이동이 축소되었던 2020년의 상황을 예외로 고려하고 보면, 제도 도입 이후 아동수당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결정 건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환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으로 한정된 제도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지급대상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월 10만원으로 고정된 지원단가에 대한 인상 필요성,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등 양육환경을 고려한 추가지원 등의 요청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아동수당제도의 점진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그에 따라 관련 재정지출 규모 또한 지금보다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현재까지 아동수당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는 해외장기체류에 대한 과오지급의 발생 및 높은 미환수율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아동수당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크게 아동수당제도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검토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진단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먼저 아동수당제도 내용과 성과 진단을 위해서, 유럽 선진국의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비교분석과 함께 일반 국민과 아동수당수혜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양육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현 제도 내용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아동양육실태분석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책개선 방향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기대되는 정책영향을 분석한다. 실태분석은 대표적인 가계소비실태 조사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자녀양육 가구의 소비실태를 자녀수, 자녀 연령 및 소득수준별로 분석한다. 아동수당의 정책효과와 관련해서는 특히 자녀수를 고려한 아동수당지급의 경제적부담 완화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아동수당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본다.

한편, 국회나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복수국적자, 해외장기체류 아동 부적정 지급에 대한 환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아동수당 지급 및 환수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지급 및 환수시스템 상의 한계를 규명하고, 비교법제론적 분석을 통해 현행 규정상의 사각지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일반 국민 및 전문가 대상 아동수당제도 인식조사 및 양육실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환수실태 조사결과와 법제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수당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제2장

###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1절 수급자격 및 대상연령 현황

제2절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현황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제 2 장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의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어, 2022년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돌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경제적 지원 중 보편적 수당의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아동(가족)수당제도를 살펴보고자 하며, 대상국가는 25개 유럽국가이다<sup>1)</sup>.

### 제1절 수급자격 및 대상연령 현황

본 절에서는 아동(가족)수당 수급을 위한 자격요건과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때 수급 자격요건은 크게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기타요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1. 수급자격 요건

본 장에서 살펴본 25개 유럽국가 모두 아동(가족)수당 수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아동과 해당 아동의 부모(또는 보호자)가 자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유럽연합의 특성상, 자국이 아닌 다른 EU 국가, EEA(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국가에서 아동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아동의 부모가 자국에서 근로하거나 거주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갖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도 함께 다른 EU 국가나 EEA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부모의 근로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사회보장수급 자

1) 본 장의 내용은 고제이 외(2017), 고제이 외(2019), 이영숙 외(2020)의 선행연구, 유럽연합 홈페이지(<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필요시 각 국가별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음

격 취득 여부 등에 따라 어떤 국가가 아동(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순위 규정(Priority rule)에 따르면, 수당 지급의 주된 책임을 갖는 국가는 아동의 부모(또는 보호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나라이며, 만약 부모가 각각 다른 나라에서 근로하여 두 국가에서 수당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지급 책임을 갖는다.

한편, 아동이 EU 및 EEA 이외 국가, 그 외 사회보장급여 관련 국제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국가에서 학업 등을 이유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단기 체류(예: 6개월)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장기간 거주에 대해서는 아동수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표 2-1〉은 유럽연합 홈페이지, 나라별 아동(가족)수당 안내 홈페이지 등에서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몇몇 국가의 사례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1〉 국가들의 아동(가족)수당 수급 관련 거주요건 사례

국가	주요내용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덴마크에 살고 있지 않다면 신청자(부모 등)는 EU/EEA 국가, 스위스 시민권자여야 함.</li> <li>- 추가로 신청자(부모 등)는 최근 10년 이내 기간 동안 일정 기간 이상 덴마크에서 일하거나 거주하고 있었어야 함(기간에 따라 수당의 지급 비율 상이함. 10년 이내 기간 중 6년 이상 일하거나 거주한 경우 100% 지급, 6개월 단위로 지급 비율 감소하며, 최소 6개월인 경우 수당의 8.3%만 지급)</li> <li>- EU/EEA, 스위스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아동수당 청구 권리 상실</li> </ul>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로 영구 이주시 아동수당 지급 중단</li> <li>- 최대 6개월 기간 내의 해외 거주시에는 아동수당 수급 가능, 해외파견근로자(posted worker)나 공무원 등의 경우 6개월 이상 해외 거주시에도 아동수당 수급 가능</li> <li>- 아동이 6개월 이상 다른 EU / EEA 국가, 스위스에서 공부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핀란드의 사회보장수급 자격을 갖는 한 아동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음</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은 독일, EU 국가, 노르웨이, 리히테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에 거주해야 함</li> <li>- 아동수당을 청구하는 부모(보호자)는 다음의 거주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시민권자</li> <li>* EU 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테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시민권자</li> <li>* 독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가 허용된 합법적 거주자(실제 근로여부는 무관) 등</li> </ul> </li> <li>- 기본적으로 독일에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아동수당도 지급되지 않음. 청구자가 독일 이외 해외에 거주하지만, 여전히 독일에 납세의무가 있고, 위의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아동수당 청구 가능</li> </ul>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수당 신청자(부모 또는 보호자)는 신청시점 이전 5년 동안 합법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아동은 반드시 그리스에 거주해야 함</li> </ul>

(계속)

국가(계속)	주요내용(계속)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에 거주하며 세금납부 의무가 있고, 부모(보호자)는 해당 아동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함 - 아동이 아이슬란드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나, 이때 해당 아동은 EEA 국가나, EFTA, 페로제도(Faroe Islands)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는 아이슬란드에 납세의무가 있어야 함
이탈리아 <sup>1)</sup>	- 아동은 이탈리아, 다른 EU 국가, 그 외 이탈리아와 가족수당지급 관련 사회보장합의가 이루어진 국가에 거주할 수 있음 - 만약, 아동이 이탈리아/EU 이외 국가의 국적자인 경우, 아동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탈리아에 거주해야 하며 영주권이 있어야 함. 그리고 해당 아동의 부모는 반드시 무기계약 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근로하고 있어야 함
노르웨이	- 기본적으로 아동은 노르웨이에 거주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이 노르웨이에서 근로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이 다른 EEA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도 아동수당 수급 가능
포르투갈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살며,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포르투갈 시민권자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포르투갈 시민권자 중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가 포르투갈 정부에서 지급되는 경우 * 국제 협약 또는 European Community legislation에 적용받은 외국 시민권자 * 두 번째에 해당하지 않는 국적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아동의 경우, 포르투갈 거주, 근로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스웨덴	- 아동과 부모 스웨덴에 거주(스웨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아동이 다른 EU/EEA, 스위스, 영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구 가능
스위스	- 아동이 반드시 스위스에 거주해야 함
네덜란드	- 합법적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1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음 - 다른 EU/EEA국가, 스위스, 또는 네덜란드와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아동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주: 이탈리아의 경우, 2022년부터 단일화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the Single and Universal Allowance for Children)가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근로자나 사회보험가입자여야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은퇴자 등 모두 수급 가능함.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아동(가족)수당 수급에 있어 아동과 부모의 거주요건은 25개 국가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요건은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즉, 아동(가족)수당제도는 25개 유럽국가 중 과반 이상의 국가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요건을 적용하는 국가는 25개국 중 11개국이며, 이들 국가 간에도 소득요건의 적용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체코,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스위스는 ‘농업부문’과 ‘그외부문’으로 구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그외부문’은 근로하지 않는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해

야 한다. 반면,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등은 아동수당 수급자격 요건 자체로 소득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수당금액이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아동수당제도가 두 가지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수당(child benefit)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지만, 보충적 수당(child budget)은 기본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소득기준 등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표 2-2〉 아동(가족)수당 수급 관련 소득요건 적용 국가

국가	주요내용	
일정소득 초과시 수당 미지급	체코	- 저소득가구 대상 (최저생계비의 3.4배 이하 소득 수준 가구)
	그리스	- 균등소득(equivalent income) 기준 3개의 소득구간, €15,000 이하 가구
	포르투갈	- 가구소득을 5개 구간으로 분류, 5번째 구간(2021년 기준 €15,358 이상) 부터는 지급하지 않음. -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유동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함 (€106,368 미만)
	슬로베니아	- 가구소득은 2022년 1월 기준 €1,052.75 이하
	스페인	- 소득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함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적용안함)
	스위스	- 농업이외의 부문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연간소득이 일정기준 초과시 미지급
일정소득 초과시 수당감액	프랑스	- 수급자격 자체에는 소득조건이 없으나 소득에 연계하여 지급액 조정
	아이슬란드	- 일정소득 이하 기본수당금액 지급. 소득 초과시 일정 비율로 차감
	이탈리아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기타	네덜란드	- 아동수당이 2가지로 구성됨. child benefit과 child budget. 전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지만, 후자는 전자를 지급받는 가구에 대한 보충적 수당으로 소득기준 적용함
	폴란드	- 아동수당제도가 2가지로 구성 - 가구원 1인당 순월소득 €147 이하 가구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166 이하) -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수당(500Plus)는 아동 당 정액지급+12~36개월 연령의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한 정액 추가수당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다음으로 〈표 2-3〉은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의 경우 아동수당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 수당지급이 정지된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국세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

당 수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금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만 아동수당 수급이 가능하며, 스위스의 경우 산업부문별 아동수당 지급 주체가 상이한데, ‘농업부문’과 ‘그외부문’ 모두 기본적으로 신청자(아동의 부모, 보호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표 2-3〉 아동(가족)수당 수급 관련 기타요건 적용 국가

국가	주요내용
에스토니아	-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의 학업 여부 파악 가능. 만일 아동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아동이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 등 수급 자격을 상실
헝가리	- 대상 아동이 3~16세 사이인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함. 일정 기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정지
아이슬란드	-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작년 세금신고서상 소득에 기반하여 국세청에서 지급함. 이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은 세금신고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음
스페인	- 다른 사회보장제도 내에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스위스	- 농업부문 가족수당은 연방정부에서 지급. 그 외부문은 26개주의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연방법은 최소한의 조건만 규정 * 농업부문: 농업부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청구 가능 * 그외부문: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만약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연간소득이 €41,513을 초과하지 않아야 수급자격 있음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추가로, 25개국 중 일부 국가는 아동(가족)수당 관련 안내 홈페이지에 명시적으로 수당수급 여부 및 수당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경우 수급자(부모 및 보호자 등)는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로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웨덴이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표 2-4〉 참조).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고소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슬로베니아의 경우 특이하게 아동수당에 대한 청구(수급)권리가 인정되면 1년 간 유효하고, 이후 1년 단위로 관련 사회보장기관에서 자격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표 2-4〉 아동(가족)수당 수급 관련 여건 변화에 대한 정보 고지 의무 명시 국가

국가(계속)	주요내용(계속)
덴마크	- 가족수당(아동수당 등)을 받게 되면, 수당 지급 및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변화를 연금청(Udbetaling Danmark)에 알릴 의무 있음. 이러한 변화를 알리지 않아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등을 지급받게 되면, 연금청에서 환수금액 및 환수 이유에 대한 우편물을 보내며 연금청 은행 계좌로 보낼 것을 요구함
에스토니아	- 덴마크와 유사하게, 모든 가족이 다른 나라로 이사할 경우, 반드시 에스토니아 국가사회보장위원회(Estonian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음
핀란드	- 아동수당 수급 여부 및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변화시 변경사항을 사회보장국(kela)에 반드시 보고해야 함(법적 의무임). * 예: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 또는 아동의 해외체류 등
독일	- 아동수당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변화한 경우, 즉시 가족금고(Familienkasse, 아동수당 지급 공공기관)에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임 * 예: 부모의 해외 직장에 취업, 부모, 아동 등 해외로 이사, 아동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은 경우, 이혼, 별거 등의 발생, 아동의 부모와 거주하던 곳을 떠나 독립하는 경우, 18세 이상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학업기간 종료 여부, 취업 등등
노르웨이	-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으나 수급자격요건을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복지청(NAV)에 알려야 함 - 또한, 가족의 환경 변화 또는 장기 이주 계획 등은 아동수당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관련 사항 발생 즉시 고용노동복지청에 보고해야 함
아일랜드	- 아동수당 수급 여부 및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변화시 변경사항을 반드시 사회보호청(DSP, 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에 보고해야 함 * 예: 거주주소 변경, 아동이 더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 금융계좌 등의 변경, 국외로 나가는 경우, 16~17세 아동의 경우 학업이 종료될 때 부모(또는 보호자)가 다른 국가에서 근로하게 되었을 때 등등 -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고소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스웨덴	- 아동수당 수급/금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변화시, 변화인지 후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보고하지 않거나 더 많은 금액 수급시 환수조치 이루어질 수 있음 * 예: 아동이 16세 이상으로 학업 중단하는 경우, 아동이 16세 이상으로 부모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대가족수당의 대상 아동 중 결혼하는 자녀, 부모나 아동이 다른 국가로 이사하거나,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등,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로 예정된 해외체류가 장기화되는 경우 등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3) 각 국가별 제도 안내 관련 홈페이지 (덴마크, <https://lifeindenmark.borger.dk/family-and-children/family-benefits/child-and-youth-benefits>; 핀란드, <https://www.kela.fi/child-benefi-report-changes>; 독일, <https://handbookgermany.de/en/child-benefit>; 노르웨이, <https://www.nav.no/en/home/benefits-and-services/relatert-informasjon/child-benefit#chapter-1>; 아일랜드,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social\\_welfare/social\\_welfare\\_payments/socialwelfare\\_payments\\_to\\_families\\_and\\_children/child\\_benefit.html](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social_welfare/social_welfare_payments/socialwelfare_payments_to_families_and_children/child_benefit.html); 스웨덴, <https://www.forsakringskassan.se/english/parents/child-allowance>)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 살펴본 25개국 중 일부 7개 국가는 아동이 직접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개국 중 체코,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등의 5개국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 연령이 20대 초중반까지인 국가들로, 이들 국가는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에는 직접 아동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2개국인 덴마크와 핀란드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이 각각 만 17세 미만,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아동에게 직접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덴마크의 경우, 아동이 부모 중 어느 한쪽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양부모에게 지급하거나, 혹은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이라고 연금청(Udbetaling Danmark)에서 판단하는 경우 아동에게 직접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핀란드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15세 이상으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예: 학업을 위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합의 하에 아동이 직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5〉 아동 본인에게 아동(가족)수당이 직접 지급될 수 있는 국가 사례

국가	주요내용
체코	-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는 해당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아동이 18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아동이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함
이탈리아	- 18세 이상 아동은 본인이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룩셈부르크	- 18세 이상의 성년 아동(adult children)은 가족수당을 직접 지급받도록 청구할 수 있음(고등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직접 청구 불가)
폴란드	- 아동이 18세 이상이고 학업중에 있으며 부모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예: 부모의 사망) 아동(가족)수당이 아동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음
포르투갈	- 18세 이상 아동은 직접 가족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덴마크	- 아동이 부모 중 어느 한쪽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양부모 또는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이 직접 아동수당 수급 가능(Udbetaling Danmark에서 판단)
핀란드	-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예: 학업을 위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음 등) 아동수당을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3) 각 국가별 제도 안내 관련 홈페이지 (핀란드 <https://www.kela.fi/child-benefit>; 룩셈부르크 <https://guichet.public.lu/en/citoyens/brexit/allocations-familiales/allocations-familiales.html>)

## 2. 대상 아동 연령

〈표 2-6〉은 25개국을 대상으로 아동(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 연령 기준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16~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직업훈련 또는 고등교육 이상의 학업 중인 경우에는 20대 초중반까지도 그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대체로 연령제한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경우, 2022년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본 25개 유럽국가와 비교시 대상 연령 기준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2-6〉 25개국 아동수당 대상 아동연령 기준 (만 나이 기준)

국가	기본연령	연장된 연령
라트비아	16세 미만	- 20세 미만: 직업훈련, 학업중 (미혼상태)
스웨덴	16세 미만	- 20세 미만: 학업중, 이후에도 학업중이라면 해당 과정이 끝나는 시점까지 지급
스위스 <sup>1)</sup>	16세 미만	- 20세 미만: 근로활동 불가능
슬로바키아	16세 미만	- 25세 미만: 직업훈련, 대학생, 질병/상해로 학업이나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아일랜드	16세 미만	- 18세 미만: 훈련과정 이수, 학업중, 장애가 있는 경우
에스토니아	16세 미만	- 18세 미만: 직업훈련, 학업중
포르투갈	16세 미만	- 24세 미만: 고등교육과정 이수중(질병, 사고가 있는 경우 27세 미만), 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장애아동이 고등교육과정 이수시 27세 미만)
헝가리	16세 미만	- 20세 미만: 중등교육이수중, 직업훈련 - 23세 미만: 고등교육이수중 - 제한없음: 정기적 소득없는 장애아동
핀란드	17세 미만	
네덜란드	18세 미만	
노르웨이	18세 미만	
덴마크	18세 미만	
독일	18세 미만	- 21세 미만: 실업자로 구직중 - 25세 미만: 직업교육, 학업중 - 제한없음: 장애아동
룩셈부르크	18세 미만	- 25세 미만: 학업중,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참여중
리투아니아	18세 미만	- 23세 미만: 정규교육과정 이수중

(계속)

국가(계속)	기본연령	연장된 연령
벨기에 <sup>1)</sup>	18세 미만	- 25세 미만: 직업훈련, 학업중
스페인	18세 미만	- 제한없음: 장애정도 65% 이상인 경우
슬로베니아	18세 미만	
아이슬란드	18세 미만	
폴란드	18세 미만	- 21세 미만: 학업중 - 24세 미만: 지속적 학업중,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스	18세 미만(미혼)	- 19세 미만: 중등교육이수중 - 24세 미만: 고등교육이수중, 일정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 고아
오스트리아	19세 미만	- 24세 미만: 직업훈련, 학업중 - 제한없음: 장애아동
프랑스 <sup>1)</sup>	20세 미만	
이탈리아	임신 7개월째부터 21세 미만	- 18~21세 미만: 학업중, 전문적 훈련 이수중,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 연간소득 €8,000 이하 - 제한없음: 장애아동
체코	26세 미만	

주: 스위스의 경우 기본아동수당 이외에 훈련수당(training allowance)가 있으며 이는 의무교육 연령부터 훈련이 끝나는 시점까지 지급되며 최대 25세 미만까지만 지급함. 벨기에는 연방지역별 차이 있음. 프랑스의 경우 아동이 근로하지 않으나 월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야 함(€982.48).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 제2절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현황

본 절에서는 25개국을 대상으로 아동(가족)수당제도의 지급방식과 지급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라별로 아동의 출산·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지원과 현금성 급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아동(가족)수당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에 대체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 1. 수당지급방식

아동(가족)수당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나라별로 상이하 다. 크게는 아동연령, 아동수 등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과 이외는 무관하게 아동 1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또는 정률)방식이 있다. <표 2-7>은 25개국의 아동(가족)수당 지급방식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나라별로 다양한 방식

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정액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아동연령이나 아동수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도 하며, 차등지급방식에서도 한가지 기준이 아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외에도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가구나 한부모가구, 저소득가구, 고아 등을 고려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표 2-7〉 25개국 아동(가족)수당 지급방식 (국가명 가나다순)

국가	정액지급	차등 또는 추가지급				그 외 추가수당		
		연령 <sup>3)</sup>	출생 순서	아동수	소득 수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그리스			■		■			
네덜란드		■		■	■		■	
노르웨이		■ ↓					■	■
덴마크		■ ↓			■	■	■	■
독일			■				■	■
라트비아				■				■
룩셈부르크		■						■
리투아니아	■			■	■	■		
벨기에 <sup>1)</sup>	■	■	■		■	■		■
스웨덴	■					■	■	
스위스	■							
스페인	■					■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		■	■	■	
아이슬란드 <sup>2)</sup>			■		■			■
아일랜드	■						■	■
에스토니아				■		■	■	
오스트리아		■		■		■		■
이탈리아				■	■	■		■
체코		■			■			
포르투갈		■ ↓		■	■		■	
폴란드	■	■				■	■	■
프랑스		■		■	■	■	■	■
핀란드			■				■	
헝가리 <sup>2)</sup>				■			■	

주: 1) 벨기에의 경우 연방지역별로 금액 차이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기본수당은 정액지급 하고, 연령별 추가수당, 아동수별 추가수당이 있음

2) 헝가리의 경우 한부모가족에 추가수당을 지급하기 보다는 차등지급시 고려하는 요소가 아동수와 가구형태(일 반, 한부모)임, 아이슬란드의 경우, 세금신고에 기반하여 아동수당 지급하기에 결혼한 부부와 싱글에 따라서도 차등지급함

3) ↓ 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함을 의미, 그 외는 연령에 따라 지급액 증가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우선, 아동(가족)수당을 정액방식으로 지급하는 국가로는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폴란드가 있다.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수당에 다자녀가구, 저소득가구 등을 대상으로 추가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8〉 정액 지급 국가

국가	지급 방식
리투아니아	- 기본수당(정액)+추가수당(아동수 1~2명 저소득가구, <b>3명이상 다자녀가구</b> 등)
벨기에	- 기본수당(정액)+사회적수당( <b>일부 연방지역</b> , 저소득가구, <b>다자녀가구</b> )+연령수당 등
스웨덴	- 기본수당(정액)+보충수당( <b>다자녀수당: 출생순서별 차등 지급</b> )
스위스	- 기본수당(정액)
스페인	- 기본수당(정액)+보충수당( <b>다자녀가구</b> , 한부모가구 등)
슬로바키아	- 기본수당(정액)+추가수당(기본수당 수급자 중 일정조건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지급)
아일랜드	- 기본수당(정액, 다테아시 금액 인상)+추가수당(한부모가구, 저소득가구)
폴란드	- 소득조건이 적용되는 가족수당(family allowance)는 연령별 차등지급함 -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수당(500Plus)는 아동당 정액지급+12~36개월 연령의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한 정액 추가수당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다음으로 차등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나 아동수 또는 출생순서별로 차등적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출생순서나 아동수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은 대체로 아동수가 많아질수록 지급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자녀가구에 추가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아동수당 지급방식을 출생순서나 아동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들로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가 있다.

〈표 2-9〉는 다른 기준은 제외하고 연령별로 차등지급하는 국가, 출생순서 및 아동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국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차등지급하는 국가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우선, 아동수당 차등지급에 있어 연령 기준만을 적용하는 국가로는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체코, 폴란드가 있으며, 이 중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급금액이 감소한다. 연령별 기준을 적용하는 차등지급 국가 중 덴마크와 폴란드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출생순서 또는 아동수를 기준으로 아동(가족)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국가로는 독일,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핀란드, 헝가리가 있다. 출생순서별 차등지급 국가의 경우, 대체로 첫 번째 아동, 두 번째 아동 등 순서에 따라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수별 차등지급 국가의 경우 아동수에 따른(최대)지급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별 차등지급과 달리 출생순서 또는 아동수별 차등지급이 경우 가구내 아동수가 많아질수록 지급액도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가구일수록 아동 1명당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된다. 이처럼 기본수당 구조가 다자녀가구를 보다 지원하고 있음에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헝가리 등은 다자녀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더 지원하고 있다.

〈표 2-9〉 차등 지급 국가

	국가	지급 방식
연령기준	노르웨이	- 기본수당(연령별, 금액)+추가수당(한부모가구)+추가영아수당
	덴마크	- 기본수당(연령별/거주기간별, 금액)+추가수당(한부모가구, <b>다자녀가구</b> 등)
	룩셈부르크	- 기본수당(연령별)
	체코	- 기본수당(연령별, 소득/사회보장급여 조건 만족시 금액 증가)
	폴란드	- 소득조건 적용되는 기본수당(연령별)+추가수당(한부모가구, <b>다자녀가구</b> 등)
	그리스	- 기본수당(출생순서별/소득)
출생순서 아동수	독일	- 기본수당(출생순서별)+추가수당(한부모가족)
	라트비아	- 기본수당(아동수별)
	슬로베니아	- 기본수당(출생순서별/소득, 한부모가구 인상금액 지급)+추가수당( <b>다자녀가구</b> )
	아이슬란드	- 기본수당(출생순서별/소득/가구세금신고유형)+추가수당(7세미만 아동)
	에스토니아	- 기본수당(아동수별)+추가수당(한부모가구, <b>다자녀가구</b> 등)
	이탈리아	- 기본수당(아동수별/소득)+추가수당(모연령 21세 이하, <b>다자녀가구</b> 등)
연령 & 출생순서 /아동수	핀란드	- 기본수당(출생순서별)+추가수당(한부모가구)
	헝가리	- 기본수당(아동수별/가구유형)+추가수당( <b>다자녀가구</b> )
	네덜란드	- 기본수당(연령별)+보충수당(아동수별/소득/연령)+추가수당(한부모가구)
	오스트리아	- 기본수당(연령별)+추가수당( <b>2명이상, 아동수별</b> )+ <b>다자녀수당(셋째부터)</b>
	포르투갈	- 기본수당(연령별,금액/아동수별/소득), 한부모가구는 인상금액 지급
	프랑스	- 기본수당(둘째부터 지급, 아동수별)+추가수당( <b>다자녀가구</b> , 한부모, 고아)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프랑스는 아동(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연령 기준과 출생순서(또는 아동수)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국가들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기본수당은 연령구간별로 차등지급하고 기본수당을 받는 가구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가구소득, 아동연령, 아동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도 증가한다. 오스트리아는 기본적으로 연령구간별로 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아동수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아동 1명당 지급되는 추가수당 금액도 증가한다. 프랑스의 경우, 아동(가족)수당은 아동이 2명 이상일 때부터 지급하며,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도 증가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존재한다. 포르투갈은 기본수당 지급시 연령별, 아동수별, 소득구간별 기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한데,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감소하며,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추가수당 금액은 증가한다. 다만, 아동수별 추가수당은 아동연령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 2. 아동(가족)수당 금액

앞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OECD 회원국 중 25개 유럽국가별로 아동(가족)수당의 지급방식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아동(가족)수당 이외에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여기서는 모든 현금지원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아동(가족)수당 지급방식 유형별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이에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금액을 살펴보고,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수당은 다자녀가구 및 대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에 한정하여 급여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당 지급액은 MISSOC(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의 가족정책 분야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2021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해당 자료에서 일부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예: 기준 소득구간 등)에는 국가별 아동수당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2021년 정보가 없는 경우 2022년 정보를 활용하였다(예: 슬로베니아).

아동수당 지급액 수준은 앞서 지급방식 유형 분류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며, <표 2-10>은 정액 방식으로 지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급액을 정리한 것이다. 정액 지급은 아동 1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액 수준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

가 있다. 지급액이 €100 미만인 국가는 슬로바키아(€25.88), 리투아니아(€73.5), 스페인(€83.3)이며, 이중 리투아니아는 기본수당에 더해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에 아동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포함되어 있고, 아동 1명당 월 €43.26 추가 지급된다.

지급액이 €100 이상인 국가에는 폴란드(€109), 스웨덴(€122), 아일랜드(€140), 벨기에(€159.18~€169.79), 스위스(€193~260)가 있다. 벨기에의 경우, 연방지역 별로 지급액 및 지급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출생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제도와 바뀐 제도가 공존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최근 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sup>2)</sup>. 기본수당에 더해 보충적 성격으로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다자녀가구 지원은 사회복지적 추가수당에 포함되어 있고 4개 연방지역 중 2개 지역에서만 지급하고 있다. French-speaking Walloon Region은 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데 소득구간에 따라 €35.70 또는 €20.40을 지급한다. German-speaking Community 지역은 셋째 아동부터 €137.26을 추가 지급한다.

다음으로 스웨덴의 경우, 기본수당에 더해 아동수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는데, 둘째는 €15, 셋째 €52, 넷째 €99, 다섯째 이상은 €125를 지급한다. 스페인은 기본 아동수당을 연 2회 (각 €500) 지급하며, 다자녀에 대한 추가수당은 다른 국가와 달리 출산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즉,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추가로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1,000를 지급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500Plus)이 있으나, 기본수당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여 연령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으므로, 연령별 차등지급 국가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 2-10〉 정액 지급 국가의 아동수당 및 다자녀가구 수당 현황

국가	기본수당	별도수당(다자녀, 대가족)
리투아니아	- 아동당 월 €73.5 + 추가수당*	- 기본수당의 추가수당으로 지급
	* 추가수당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아동수 1~2명의 저소득가구(월 €129 이하)	
<b>아동수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소득조건없음)</b>		
	장애아동 양육가구 (소득조건없음)	

(계속)

2)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2019년 1월 1일(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전 시점 출생아에 대해서는 출생순서별로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가	기본수당	별도수당(다자녀, 대가족)															
벨기에	- 아동당 월 지급액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추가수당*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아동</th> <th>고아</th> </tr> </thead> <tbody> <tr> <td>Flemish Community</td> <td>€169.79</td> <td>€84.89 또는 €169.79(양친없음)</td> </tr> <tr> <td>French-speaking Walloon Region</td> <td>€164.49</td> <td>€371.42 또는 기본수당 50%</td> </tr> <tr> <td>Bilingual Brussels-Capital Region</td> <td>€159.18</td> <td>기본수당의 50% 또는 100%</td> </tr> <tr> <td>German-speaking Community</td> <td>€159.63 (셋째부터 €296.89)</td> <td>€122.01 또는 €243</td> </tr> </tbody> </table>		아동	고아	Flemish Community	€169.79	€84.89 또는 €169.79(양친없음)	French-speaking Walloon Region	€164.49	€371.42 또는 기본수당 50%	Bilingual Brussels-Capital Region	€159.18	기본수당의 50% 또는 100%	German-speaking Community	€159.63 (셋째부터 €296.89)	€122.01 또는 €243
		아동	고아														
	Flemish Community	€169.79	€84.89 또는 €169.79(양친없음)														
	French-speaking Walloon Region	€164.49	€371.42 또는 기본수당 50%														
Bilingual Brussels-Capital Region	€159.18	기본수당의 50% 또는 100%															
German-speaking Community	€159.63 (셋째부터 €296.89)	€122.01 또는 €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수당</li> <li>○ 사회복지적 추가수당: 소득조건 만족시 추가수당</li> <li>○ 연령수당: 연령별 보충수당 (일부 연방지역은 지급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적 추가수당에 포함되어 있으며, 두 연방지역만 지급</li> <li>○ French-speaking Walloon Region: 대가족(최소 3명 아동) 추가수당 지급, <b>€20.40</b> 또는 <b>€35.70</b> (소득구간별)</li> <li>○ German-speaking Community: 셋째부터 <b>€137.26</b></li> </ul>															
스웨덴	- 아동당 월 €122 + 연장/학업수당* + 다자녀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16세 이후 지속적으로 학업중이 경우 지급, €122</li> <li>** 아동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지급</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둘째</th> <th>셋째</th> <th>넷째</th> <th>다섯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5</td> <td>€52</td> <td>€99</td> <td>€125</td> </tr> </tbody> </table>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15	€52	€99	€125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15	€52	€99	€125														
		- 기본수당의 추가수당으로 지급															
스위스	- ‘농업부문’ 가족수당은 연방정부에서 지급. ‘그외부문’은 26개주의 개별법에 의해 규정. 연방법은 최소한 기준만 규정함																
	- 아동당 월 지급액(아동수당)+훈련수당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농업부문</th> <th>그외부문</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수당</td> <td>€193(저지대), €212(산악지대)</td> <td>€193</td> </tr> <tr> <td>훈련수당</td> <td>€241(저지대), €260(산악지대)</td> <td>€241</td> </tr> <tr> <td>가구수당</td> <td>€96.5</td> <td>-</td> </tr> </tbody> </table>		농업부문	그외부문	기본수당	€193(저지대), €212(산악지대)	€193	훈련수당	€241(저지대), €260(산악지대)	€241	가구수당	€96.5	-				
	농업부문	그외부문															
기본수당	€193(저지대), €212(산악지대)	€193															
훈련수당	€241(저지대), €260(산악지대)	€241															
가구수당	€96.5	-															
스페인	- 아동당 연간 €1,000 (반기별 지급, 18세 이상 장애아동은 월별 지급)																
		- <b>다자녀수당</b> : 아동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추가 아동 출산 또는 입양시 일시금으로 지급, <b>€1,000</b>															
슬로바키아	- 아동당 월 €25.88* + 추가수당** 월 €12.14																
	*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서 일회성 인상된 금액 지급 €106.33																
	** 추가수당은 부모가 연금수급자로, 돌봄수당(carer's allowance) 수급, 근로활동 하지 않음, 부양아동에 대한 아동장려금(child tax credit) 받지 않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																
아일랜드	- 아동당 월 €140																
	* 쌍둥이는 아동당 월 €210, 셋쌍둥이 이상은 아동당 월 €280																
폴란드	- 소득 무관 아동수당(500Plus): 18세 미만 아동, 아동당 월 €109유로	- <표 9> 참조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표 2-11〉~〈표 2-13〉은 아동수당 차등지급 국가 중 다른 기준은 제외하고 연령과 아동수(+출생순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각각 연령 기준, 아동수/출생순서 기준, 두 기준 모두 적용 국가의 수당 지급액 현황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우선, 〈표 2-11〉에서 연령별 차등지급 국가를 살펴보면,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며, 나머지 국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급액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가별 월 지급액 수준을 보면, €100 미만인 국가로는 폴란드(€21~€29), 체코(€25~€35)가 있다. 폴란드의 경우, 소득조건이 적용되는 아동수당에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추가수당 중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당이 있으며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 월 €21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9를 지급하며, 소득 무관 추가수당 중 가족돌봄수당은 12~36개월 연령의 둘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다자녀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해당 수당은 최대 €2,610 지급되며, 지급기간과 금액의 선택이 가능하다.

월단위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100 이상인 국가로는 노르웨이(€168~€106), 덴마크(€208~€43), 룩셈부르크(€271.66~€322.91)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령 구간은 4개로 감액폭이 큰 편이다. 기본아동수당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Child allowance)은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데, 다자녀가구도 이에 포함되며 분기별로 €204(월단위 약 €68)를 지급하고 있다.

〈표 2-11〉 차등 지급 국가: 연령 기준

국가	기본수당				별도수당(다자녀, 대가족)
노르웨이	- 아동당 월 지급액				
		기본수당	추가수당*	영아수당**	
	0~5세	€168	€106	€66	
	6~17세	€106	€106		
	* 추가수당: 1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구				
	** 영아(infant)수당: 3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구				
덴마크	- 아동당 분기별 지급 (15세부터는 월별 지급)				
	3세 미만		DKK 4,653 (€626)		
	3~7세 미만		DKK 3,681 (€495)		
	7~15세 미만		DKK 2,898 (€389)		
	15세~18세 미만		DKK 966 (€130)		
	* 연간 소득 DKK 828,100 (€111,356) 초과시. 초과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액에서 감소함				
					- Child Allowance (분기별): <b>DKK 1,517 (€204)</b>
					* 다자녀 이외 한부모, 연금수급자 등에도 지급

(계속)

국가	기본수당		별도수당(다자녀, 대가족)	
룩셈부르크	- 아동당 월 지급액			
	6세 미만	€271.66		
	6~12세 미만	€271.66 + 아동당 €20.53		
	12~18세(25세) 미만	€271.66 + 아동당 €51.25		
체코	- 아동당 월 지급액			
	연령	기본금액		증가금액*
	6세 미만	CZK 630 (€25)		CZK 1,030 (€45)
	6~15세 미만	CZK 770 (€31)		CZK 1,270 (€51)
	15~26세 미만	CZK 880 (€35)	CZK 1,380 (€55)	
	* 증가금액은 근로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수혜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결정됨			
폴란드	- 소득조건 적용 아동수당, 아동당 월 지급액+추가수당*		- 소득조건 적용 아동수당의 보충수당으로 다자녀가구 지원 있음 - 소득 무관 수당 중 가족돌봄수당(family care capital): 12~36개월의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추가지급. 최대 €2,610. (12개월 월 €261 또는 24개월 €130.05 선택가능)	
	0~5세 미만	€21		
	5~18세 미만	€27		
	18~24세 미만	€29		
	* 추가수당 ○ 한부모가구: 아동당 월 €42, 가구당 최대 €84 ○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 월 €21 - 소득 무관 아동수당(500Plus): 18세 미만 아동, 아동당 월 €109유로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표 2-12〉는 출생순서 또는 아동수에 따라 차등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급액 수준을 보여준다. 출생순서 또는 아동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지급금액이 증가하고, 출생순서별로도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다자녀가구에 추가적인 현금지원을 더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수당을 이러한 구조로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별도의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체로 가구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별 월 지급액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아동수별 가구당 금액이 제시된 국가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평균 금액을 산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월 지급액이 €100 미만인 국가로는 라트비아(€25~€100), 헝가리(부모기준, €33~€43), 에스토니아(€60~€100), 그리스(가장 낮은 소득구간 기준 €70~€140), 핀란드(€94.88~€182.69)가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기본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 3명 이상

을 양육하는 가구에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동이 3명~6명인 경우 월 €300, 7명 이상인 경우 월 €400을 추가 지급한다. 헝가리의 경우, 기본아동수당은 아동수 이외에도 가구유형(한부모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중 아동 양육지원수당은 3명 이상 아동 양육시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이 3~8세인 기간 동안 지급되는 수당(월 €77)으로 다자녀가구 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월 지급액 수준이 €100 이상인 국가로는 슬로베니아(가장 낮은 소득구간 기준 €122.79~147.35), 아이슬란드(합산세금신고 기준, €140~€166.58), 이탈리아(최대금액 기준, €175~€242.5), 독일(€219~€250)이 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의 소득구간이 8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8개 구간 중 가장 낮은 소득수준에서는 첫째 아동 기준 월 €122.79, 가장 높은 소득수준에서 €21.36으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인다. 각 소득구간별로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액은 증가하고, 3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는데, 아동이 3명인 경우 연간 €404.48, 4명 이상은 연간 €491.52를 지급한다. 이탈리아는 아동수 이외에도 소득, 자산, 부양가족 수, 연령 등에 따라 지급액 규모가 결정되어, 가구내 아동수별 최소 및 최대 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수 4명까지 기본수당 금액이 증가하며, 아동이 4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100을 추가지급하고 있다.

〈표 2-12〉 차등 지급 국가: 출생순서 또는 아동수 기준

국가	기본수당				별도수당(다자녀, 대가족)
그리스	- 아동당 월 지급액				
		가구 균등소득(equivalent income)			
		~€6,000	€6,00~€10,000	€10,001~15,000	
	첫째	€70	€42	€28	
	둘째	€70	€42	€28	
	셋째 이상	€140	€84	€56	
독일	- 아동당 월 지급액				
	첫째/둘째	셋째	넷째 이상		
	€219	€225	€250		
라트비아	- 아동수별 월 지급액				
	1명	2명	3명	4명 이상	
	€25	€100	€225	아동당 €100	

(계속)

국가	기본수당	별도수당(다자녀, 대가족)				
슬로베니아	- 아동당 월 지급액(2022년 기준)				- <b>다자녀가구수당</b> : 3명 이상 아동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 연간금액 ○ <b>3명: €404.48</b> ○ <b>3명초과: €491.52</b>	
	가구원1인당 월평균소득	첫째	둘째	셋째 이상		
	~€200.78	€122.79	€135.06	€147.35		
	€200.79~€334.64	€104.98	€116.05	€127.05		
	€334.65~€401.58	€80.01	€89.43	€98.81		
	€401.59~€468.50	€63.11	€72.00	€81.07		
	€468.51~€591.22	€51.60	€60.22	€68.78		
	€591.23~€713.91	€32.70	€40.92	€49.1		
	€713.92~€914.71	€24.53	€32.70	€40.92		
	중등교육이상	€30.97	€39.14	€53.33		
€914.72~€1.104.33	€21.36	€29.54	€37.71			
중등교육이상	€24.58	€32.76	€42.85			
* 한부모가구의 경우, 30% 인상된 금액 지급						
아이슬란드	- 아동당 연간 총 최대 지급액 + 특별수당*					
	합산세금시고(married and cohabiting couples)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최대금액	€1,680	€1,999	€1,999		
	감액 비율	€61,640~ €83,469	4%	6%		8%
		€83,469~	5.5%	7.5%		9.5%
	한부모(single parents)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최대금액	€2,789	€2,866	€2,866		
	감액 비율	€3,082~ €41,734	4%	6%		8%
	€41,734~	5.5%	7.5%	9.5%		
*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1,003 추가 지급, 감액적용 소득구간에 속하는 경우 4% 감액						
에스토니아	- 아동당 월 지급액				- <b>대가족수당</b>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3명 이상 양육): 월 <b>€300(6명)~€400(7명 이상)</b>	
	아동 2명 이하	€60				
	아동 3명 이상	세 번째 아동부터 €100				
이탈리아	- 아동수별 월 최대 지급액(소득/자산, 부양가족수 및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셋째 아동부터 최대 €85 추가 지급 하며, 아래표는 해당 금액이 포함된 최대금액임)				- <b>다자녀수당</b> : 아동이 4명 이상인 가구, 가구당 <b>€100</b>	
		최대	최소			
	1명	€175	€50			
	2명	€350	€100			
	3명	€610	€165			
	4명 이상	€970	€430			
* 추가수당 ○ 엄마의 연령이 21세 이하: 아동 1명당 €20 추가 지급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30						

(계속)

국가	기본수당					별도수당(다자녀, 대가족)
핀란드	- 아동당 월 지급액 + 추가수당*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94.88	€104.84	€133.79	€163.24	€182.69	
	* 한부모가구에 대한 보충수당: 아동당 월 €63.30					
헝가리	- 아동당 월 지급액					- <b>아동양육지원</b> : 3명 이상 아동 양육시,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이 3~8세 기간 동안 지급, 월 €77
		부모		한부모		
	1명	HUF 12,200 (€33)		HUF 13,700 (€37)		
	2명	HUF 13,300 (€36)		HUF 14,800 (€40)		
	3명 이상	HUF 16,000 (€43)		HUF 17,000 (€46)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마지막으로 <표 2-13>에서는 연령 기준과 출생순서/아동수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지급액 수준을 제시하였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기본수당은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되, 추가수당 부분에서 아동수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좀 더 현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고 있다. 두 국가 중 오스트리아는 이에 더해 별도의 다자녀보너스 수당을 지급하는데, 셋째 아동부터 월 €20 추가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구소득이 €55,000 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25개국 중 유일하게 아동수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아동수별 지급되는 기본수당에 더해 연령(14세 이후)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다자녀가구 지원의 성격의 갖는 추가수당이 있는데 ‘월별정액급여(lump-sum allowance)’와 ‘가족소득보충급여(family income supplement)’이다. 전자는 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가구 중에서 1명 이상의 아동이 곧 20세가 되어 수당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1년간 지급된다. 후자는 가구내 3~21세 연령의 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가구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기본수당은 연령과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데 연령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감소한다. 연령 이외에도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는데, 이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만 해당하며, 출생순서별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별 지급액 수준을 보면, €100 미만의 국가는 네덜란드(€76.8~€109.86), 프랑스(가장 낮은 소득구간 기준, €66.04~€117.63)로, 네덜란드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하기에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연령별 차등지급하는 기본수당에 보충적 수당으로 아동수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기본수당을 지급받는 가구 중 추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며 아동수별 연간 최대 지급될 수 있는 규모는 증가한다. 프랑스의 경우, 앞서 기본수당에 보충적 수당으로 지급되는 추가수당 중 다자녀가구 지원 성격에 해당하는 수당을 언급하였는데, ‘월별정액급여’는 월 €83.52, ‘가족소득보충급여’는 €175~€262.52(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본수당의 월 지급액 규모가 €100 이상인 국가는 오스트리아(€114~€165.10)와 포르투갈(최저소득구간&36개월 미만 기준, €149.85~€224.77)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기본수당 수급가구에 아동수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자녀 보너스수당도 추가 지급한다. 아동수별 추가수당을 보면, 아동 1명당 지급금액이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2명인 경우 €7.10, 7명 이상인 경우 €52로 나타난다.

〈표 2-13〉 차등 지급 국가: 연령 및 출생순서/아동수 모두 적용

국가	기본수당				별도수당(다자녀, 대가족)	
네덜란드	- 아동당 분기별 금액(아동수당) + 추가수당(child budget)*					
	6세 미만		6~12세 미만		12~18세 미만	
	€230.60		€280.13		€329.59	
	* 추가수당: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 대한 보충적 수당. 가구소득, 아동수, 아동연령 등에 따라 차등지급,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연간 최대금액					
	1명		2명		3명	
€1,220		€2,326		€3,327		
				4명 이상		
				아동당 €1,001		
○ 아동연령이 12~15세인 경우 연 €251 추가지급, 16~17세인 경우 연 €447 추가지급						
○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3,285유로 추가지급						
오스트리아	- 아동당 월 지급액 + 추가수당*(아동수당 추가)					
	3세 미만		3~10세 미만		10~19세 미만	
	€114		€121.90		€141.50	
					19세 이상	
					€165.10	
* 추가수당(아동당 1명당 각각)						
2명		3명		4명		
€7.10		€17.40		€26.50		
				5명		
				€32.00		
				6명		
				€35.70		
				7명 이상		
				€52.00		
						- <b>다자녀보너스</b> : 세 번째 아이부터 월 €20 추가지급, 연소득 €55,000 이하 가구

(계속)

국가	기본수당					별도수당(다자녀, 대가족)
포르투갈	- 아동당 월 지급액(소득기준 2021년 기준)					
	소득구간	출생순서	~36개월 미만	36~72개월 미만	72개월 이상	
	~€3,071.67	첫째	€149.85	€49.95	€37.46	
		둘째	€187.31			
		셋째 이상	€224.77			
	€3,071.67~ €6,143.34	첫째	€123.69	€41.23	€30.93	
		둘째	€154.62			
		셋째 이상	€185.55			
	€6,143.34~ €9,215.01	첫째	€97.31	€32.44	€28.00	
		둘째	€125.31			
셋째 이상		€153.31				
€9,215.01~ €15,358.35	첫째	€58.39	€19.46	-		
	둘째	€72.99				
	셋째 이상	€87.59				
€15,358.35 이상	-	-	-	-		
* 출생순서별 추가수당은 36개월 미만 연령까지만 지급. 마지막 소득구간은 아동수당 미지급						
* 한부모가구는 위의 금액에서 35% 인상된 금액 지급						
프랑스	- 가구당 월 최대 지급액(가장 낮은 소득구간시) + 추가수당*					- 기본수당에서 보충적 수당에 포함되어 지급: 월 별정액급여 및 가족소득 보충급여
	2명	3명	4명			
	€132.08	€301.30	€470.53			
	* 추가수당					
○ 기본수당에서 4명 이후 아동당 €169.22						
○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 아동당 €66.04						
○ 월별 정액급여: 아동 최소 3명 이상 가구에서 20세가 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간 월 €83.52						
○ 가족소득보충급여: 3~21세 사이 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가구 중 소득조건 만족하는 가구: €175~€262.52						
○ 가족지원수당: 고아(€154.78, 한부모가구 €116.11)						

자료: 1) 유럽연합(<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2)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의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 3. 아동·가족수당 지원금액 자동조정제도 적용 여부

제한된 정보에 의한 유형구분이나, 대략 2022년 2월 현재 명시적으로 자동조정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아래 24개국 중 11개국으로 파악된다(〈표 2-14〉).

이중에서 덴마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스위스는 ‘물가지수’ 이외의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표 2-14〉 OECD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 자동조정제도 적용 여부

국가명	자동조정 여부	내용
오스트리아	X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
벨기에	O	-Walloon지역(불어사용지역) 및 브뤼셀 수도지역의 경우 <b>'소비자물가지수' 연동</b> -플랑드르 지역:2020년부터 자동연동제 폐지, 다만 매년 정해진 날짜에 고정비율로 변동시킴 -독일어권 공동체 지역: 2020년부터 자동조정되며,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와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의 25%를 고려하여 매년 7월에 조정
체코	X	-물가상승률에 대해 자동조정되지 않지만 법개정을 통해 임의적으로 조정
덴마크	O	-매년 조정비율(satsreguleringsprocenten)에 따라 조정(wage-rate기준)
핀란드	O	-아동수당(Lapsilisä), 16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Maintenance allowance, 가정양육수당, 민간보육수당, 부분 보육수당, 탄력보육수당은 매년 <b>'생활비지수'</b> (cost of living index-핀란드 통계청이 필수품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에 따라 조정됨
프랑스	O	-매년 4월1일 <b>소비자물가</b> 변동에 따라 금액을 조정. 단 이때 물가변동률은 담배를 제외하고 계산된 변동율임
독일	X	-법에따라 비정기적으로 조정
그리스	X	
헝가리	△	-국가예산법에 따라 매년 조정
아이슬란드	△	-아동수당( Child benefit-barnabætur )은 매년 금액적정성 평가하고, 법개정을 통해 조정 -기타수당은 매년 국가예산에 따라 조정
아일랜드	△	-자동물가연동제는 없으나, 예산편성에서 정부에 의해 재량적으로 조정
리투아니아	O	-수당금액은 <b>기본사회급여(Basic Social Benefit (Bazinė socialinė išmoka))</b> 에 연동되어 자동 조정 단, 별도의 자동물가연동제는 없음
룩셈부르크	O	- <b>물가지수연동</b>
노르웨이	?	-아동양육비(bidragforskort) 선지급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7월1일자 조정 -전환수당(overgangsstønad)의 조정은 기본금액(B.a.: Grunnbeløpet)의 연간 조정에 연동 (위와 같은 국가보험제도 수당은 기본적으로 기본금액에 연동. 이때 기본금액은 임금상승률에 연동. 2021년 평균 기본금액은 NOK104,716, 2022년 평균 기본금액 NOK 106,399) -아동수당 법 제4장10조에 따르면, 아동수당 금액은 Storting(노르웨이 국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
폴란드	△	-매 3년마다 가족소득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정부가 조정
포르투갈	△	-매년 정부 결정에 따라 조정
슬로바키아	O	-아동수당(Pridavok na dietu) 및 부모수당(Rodičovský príspevok)은 매년 1월 1일, <b>최저생계비지수</b> (the Subsistence minimum (Životné minimum))변화를 고려하여 고용복지가족부가 결정
슬로베니아	O	- <b>필수품 물가지수</b> 에따라 매년 3월 조정
스페인	△	-자동물가연동제는 없으나, 매년 법에 따라 조정
스웨덴	X	-국회의사결정에 따라 조정, 매년 조정되지는 않음
스위스	O	- <b>1차연금제도에 연동</b> (단, 지난 조정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소 5%이상 상승했다는 전제하에 조정)
네덜란드	O	-아동수당 (Kinderbijslag): 1월과 7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간 2회 조정 -아동양육수당 (kinderopvangtoeslag): 네덜란드 통계청이 결정하는 임금 및 물가 상승 평균에 따라 매년 1월 1일 조정 -아동돌봄수당 (Kindgebonden budget):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조정
영국	△	-정부 예산법을 통해 조정(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최근 고정)
캐나다	O	-기본적으로 소득세 및 CCB(캐나다아동수당-조출) 등의 급여수준은 캐나다 <b>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b> 에 연동

자료: MISSOC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2022.7.25. 검색;  
[https://lovdata.no/dokument/NL/lov/2002-03-08-4#KAPITTEL\\_4](https://lovdata.no/dokument/NL/lov/2002-03-08-4#KAPITTEL_4) 2022.7.25. 검색)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1.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 관련

#### 가. 연령 확대

아동 연령 확대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영(2019)은 아동수당제도가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과 건강한 발달’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며, 만 18세 미만 아동 대부분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고등학교 진학률 99.9%) 있는 상황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최영, 2019:28). 아동수당 대상의 단계적 확대방안으로 2019년 만 7세미만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 이후 교육과정에 따른 확대를 고려하여 초등교육 연령기(12세 미만), 그 다음으로 중등교육 연령기(15세미만, 18세 미만 등) 등으로 영유아부터 시작하여 차츰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나영(2019)은 최소한 의무교육을 받는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 연령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여러 국가의 경우 아동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시기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만 16~20세까지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김나영, 2019:61). 이영숙 외(2020)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을 2022~2026년 중 만 18세 미만 아동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2년의 확대 주기를 가지고 매 단계에서 2~4세 구간의 연령이 추가되는 방안을 상세하게 설정하였다.

이영숙 외(2020)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의 아동수당 대상연령은 대체로 만 17세까지이며, 25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라트비아를 제외하면 총 22개국에서 만 15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중 리투아니아는 만 18세, 프랑스는 만 19세로 아동수당의 대상연령이 가장 높다.

〈표 2-15〉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대상 연령

아동 연령	해당 국가
~6세	· 한국
~14세	· 라트비아(1세 초과부터) 18세(장애)/20세(전일 학생), · 일본(중등 졸업식까지)
~15세	· 영국 18세(부분 학생)/20세(전일 학생), 아일랜드 18세, · 스위스 20세(미취업), 포르투갈 24세(학생), 네덜란드
~16세	· 슬로바키아 18세(만성질환)/25세(전일 학생, 장애), 에스토니아 19세, 스웨덴, 핀란드
~17세	· 독일 미취업·전일 학생 등 연장, 장애는 연령제한 없음, · 폴란드 21세(전일 고등)/24세(전일 대학), 룩셈부르크 25세(학생, 장애), · 이탈리아 21세(아동3명이상이며 전일 학생), 헝가리 23세(학생), · 오스트리아 24세(학생, 장애),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덴마크, 캐나다, 스페인
~18세	· 리투아니아 21세(학생, 훈련)
~19세	· 프랑스 21세(3자녀이상)

자료: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https://www.missoc.org/INFOR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2021. 4.15. 인출: 이영숙 외(2020:112)에서 재인용

## 나. 금액 인상

아동수당 적정 급여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최소기준) 협약(Convention on Social Security(Minimum Standard), 1952)에서는 가족급여(Family benefit)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고, 급여의 지급수준은 아동 1인당 남성 성인 근로자 임금의 3%로 규정하고 있다(최성은 외, 2009; 최영(2019)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 이를 적용하면, 2016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에서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342만 5천 원이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2016년 8월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236만 8천 원이다. 이에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동 1인당 최초 7~1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 2019:32). 김수정(2006)은 2004년 전국가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계층의 아동 2인가구의 경우,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월평균 42만원 정도의 추가지출이 있고, 이중 식료품비가 약 5만원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정 아동수당의 급여

액을 식료품비 수준의 지원(월 5만원)에서부터 식료품비와 소비지출 총액의 중간(월 10만원)정도로 제안하였다(최영, 2019:33).

그러나 아동수당 지급수준이 현재 10만원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6년 OECD국가의 평균적인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2명의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기준으로 총소득 대비 7.7%, 가처분소득 대비 9.3%이며, 금액으로는 평균 25만 8천원정도(최성은 외 2009; 김수정, 2006; 최영(2019)에서 재인용)로 아동 1인당 약 12만 4천원 수준이다. 최영(2019)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4인가구 소득과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기준에 따른 4인가구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액을 추정한 결과, 아동 2인당 약 34만원~40만원 내외이며, 이를 아동 1인으로 환산하면 20만원 내외라고 밝혔다. 고제이 외(2015)는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보육료를 제외하고 아동 1인당 월평균 양육관련 소비지출은 7만원(2세)에서 7만 8천원(만4세 이상)으로 나타났고, 2014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보육비를 제외하고 아동 1인당 양육에 들어가는 소비지출 비용을 약 21만원에서 28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김나영(2019)은 물가의 상승, 자녀 양육에 대한 지출 패턴 및 규모 변화 등 향후 자녀 양육 가구가 처할 여러 가지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아동수당 지원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책정될 수 있는 정책적 모형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아동수당 증액 혹은 일정 시기별 일정 액수를 증액시킴으로써 아동수당 지원액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가구 지출의 부담을 줄이는데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김나영, 2019:61). 이영숙 외(2020)는 현행 아동당 월 10만원 수준에서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경우(2022년 기준 약 10.6~11.2만원)와 아동수당을 통한 양육비 지원율을 높이는 경우(약 15만원), 아동 연령별로 차등적으로 아동수당을 높이는 경우(7세/12세/15세/18세 미만 아동에게 각각 월10만원/11만원/13만원/14만원)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16〉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금액

아동 연령	해당 국가
5~10만원 미만	· 슬로바키아(0.5만원), 리투아니아(2.0~3.8만원), 스페인(3.3만원), 폴란드(3.1~4.0만원), 라트비아(1.5~6.7만원), 헝가리(5.3~6.9만원), 슬로베니아(2.7~15.4만원)
10~20만원 미만	· 그리스(9.4만원), 한국(10만원) 영국(8.3~12.5만원), 에스토니아(7.4~13.5만원), 네덜란드(9.0~12.9만원), 포르투갈(3.7~19.7만원), 일본(10.1~15.2만원), 노르웨이(13.2만원), 프랑스(4.4~22.6만원), 스웨덴(14.3만원), 핀란드(12.8~23.3만원), 오스트리아(15.3~22.2만원)
20~30만원 미만	· 덴마크(16.8~27.0만원), 스위스(22.8만원), 독일(26.1~30.3만원)
30만원 이상	· 룩셈부르크(35.7만원), 캐나다(39.9~47.2만원)

주: 아동 1인당 기준값으로, 요건에 따라 차등금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단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고, 2021. 4.30.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https://www.missoc.org/INFOR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2021. 4.15. 인출; 이영숙 외(2020:11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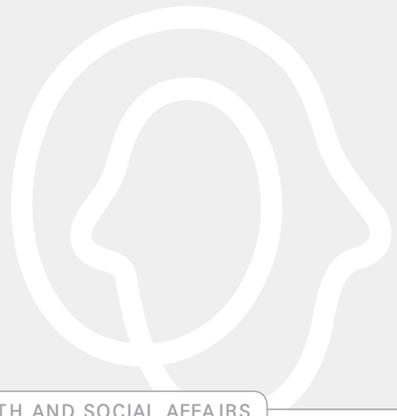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금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폴란드, 라트비아, 헝가리 등이 한국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며, 영국,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차등지급액이 우리나라(10만원)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다. 다자녀 차등지원

최영(2019)에서는 아동수당제도가 아동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녀수나 출생순위에 따른 지급액의 차이를 크게 나타내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구 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아동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액 총량이 줄어드는 구조로 아동수당의 지급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첫째 자녀에게 18.10파운드/주를 지급하지만, 둘째자녀 이상부터는 1인당 12.10파운드/주를 지급하고 있다(최영, 2019:34).

그러나 국내의 학계에서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 수가 증가할 때마다 지원금액이 추가되는 형태가 적절하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김나영(2019)은 아동수당 제도 목적에 저출산대응을 둔다면 둘째 혹은 셋째 아이부터 아동수당 지원의 증액을

고려해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김나영, 2019:61). 아동수당제도가 다자녀가구에 보다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기제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아동별로 동일한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 내 아동 수 증가에 따른 총급여액 증가를 고려해서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최영, 2019:35).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를 위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후순위 출생아동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급여’ 기제를 도입하고 있다(최영, 2019:35). 스웨덴의 경우,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아동수당에 더하여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가족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을 추가지급하고 있으며,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하여 다자녀가구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2년 이후 첫째 둘째 자녀까지는 월 10,000엔, 이후 출산 자녀는 월 15,000엔을 지급하여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급여가 제공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최영, 2019:35).



## 제3장

### 아동 양육부담과 정책인식

제1절 아동 양육비용 추계  
제2절 아동수당 인식조사 결과



# 제 3 장 아동 양육부담과 정책인식

## 제1절 아동 양육비용 추계

### 1. 추계방법

본 절에서는 가구의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수준에 따른 공적지원의 충분성과 개선방안의 검토를 위해 최근 기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양육비용 규모를 산출하였다.

신윤정·김지연(2010)에 따르면, 아동 양육에 대한 비용 추계의 방법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조사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대표성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양육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얼마만큼의 비용 지출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지불의도(willingness to pay)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고제이 외(2022)에서는 ‘사회보장수요 및 지출부담 수준에 관한 인식조사’를 통해 각 인구집단에 따른 연간 필요 소비지출 금액과 그에 대한 공적지원 수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다음 표를 살펴보면 만 12세 미만 영유아 및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연간 약 862만원의 지출이 필요하고, 이 중 약 54%는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표 3-1〉 인구집단별 필요 지출금액 및 사회보장 수요

구분	필요 소비지출 금액 (1인당, 만원/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수준 (필요금액 중 %)
노인(만 65세 이상 은퇴자)	1,568.4	54.4
<b>영유아 및 초등학생(만 12세 미만)</b>	<b>861.6</b>	<b>54.4</b>
장애인	1,460.4	61.0
실업자 및 한계근로자	1,734.5	32.1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89.6	56.7
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	1,734	32.1

\*질문: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귀하가 생각했을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비지출금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정부가 얼마만큼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소비지출은 식비, 주거비, 교육비, 돌봄비용, 의료비, 의류 및 신발구입, 교통통신비, 오락 여가 등 일상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을 의미합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이자지출, 예금, 부동산 구입 등과 관련된 지출은 제외합니다.)

자료: 고제이 외(2022), 사회보장 재정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II):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성 진단기준

자녀 양육비용의 추계방법으로 두 번째는, 예산분석 방법론(Budget analysis)으로,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연령대의 아동에게 필요로 하다고 간주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표준 목록을 작성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로써, 경험적인 실제 지출의 수준보다는 ‘일정한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지출 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성격이 강한 특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두당 비용 접근법을 들 수 있다. 이는 현재 가구의 지출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앞의 두 경우에 비해 경험적이고 객관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을 가구원 수 혹은 자녀 수로 나누어 이를 1인당 양육비용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방법은 그 측정과정이 간편하고 결과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모든 가구원에 대해 동일하다는 강력한 가정을 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 이상) (2019~2021년)를 활용하여 가구의 현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의 규모를 산출하고자 한다. 추계방법은 가구 소비지출 항목 중 자녀에 대한 직접 지출 항목과 가구 공통지출항목에 대한 지출금액의 합계를 자녀의 양육비용으로 간주하였으며,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 중인 부모 및 자녀 2세대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에 대한 지출, 공통지출 항목 등은 신윤정·김지연(2010)에서 전문가 및 자녀 양육 여성들과의 FGI를 통해 결정된 항목들을 기준으로 하였다(다음 표). 단, 신윤정·김지연(2010)에서는 ‘고등교육비’를 공통지출 항목으로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고등교육비는 성인지출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항목별 실제 지출 내역을 활용하여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자녀지출 항목계/자녀수)와 (공통지출항목계/가구원수)의 합계’로 정의하였으며, 모든 금액변수는 연도별 물가상승(2020년=100)을 고려한 실질금액으로 변환하여 추계하였다.

〈표 3-2〉 가구 내 성인 및 자녀에 대한 지출 항목과 공통지출항목 내역

구분	대분류	지출항목
성인지출항목	주류담배 구입비	주류 및 담배
	교육	성인학원비
		고등교육비
		평생교육원교육비
기타상품서비스	팁 및 기타서비스	
자녀지출항목	식료품비·주류·음료	분유 구입비
	의류신발	이유식 구입비
		아동용외의 구입비
		교복 구입비
		아동용내의 구입비
	오락문화	아동화 구입비
		참고서 학습교재 구입비
	교육	중고생 교재 구입비
		초등교육비
		중등교육비
		학생학원교육비
		학교보충교육비
		국내교육연수비
기타상품서비스	보육료	
공통지출항목	위의 항목 외의 모든 소비지출 항목	

자료: 신윤정, 김지연(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추계결과

### 가.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최근 3개년 간 연도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2019년 기준 자녀 1인당 월 118.9만원에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하여 118.8만원으로 회복되는 패턴을 보인다. 현재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의 8.4% 정도에 해당한다.

〈표 3-3〉 연도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추이

(단위: 원/월)

연도	가구 수	(1) 자녀지출	(2) 공통지출	(1)+(2)	증감률
2019	1,938	389,419	799,881	1,189,300	-
2020	2,440	315,077	824,753	1,139,830	-4.2%
2021	2,419	366,716	821,672	1,188,389	-0.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이상), 2019~2021년 원자료 분석.

42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자녀 양육비용은 첫째아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데, 첫째아가 아직 학령 전일 경우에는 1인당 월 110만원 수준인데 비해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약 127만원으로 학령 전인 경우에 비해 약 15.6% 정도 크다.

〈표 3-4〉 첫째아 교육상태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단위: 원/월)

첫째아 교육상태	가구 수	(1) 자녀지출	(2) 공통지출	(1)+(2)	학령 전 대비
학령 전	630	219,019	878,968	1,097,987	-
초등학교	859	376,738	814,992	1,191,730	108.5%
중학교	503	445,137	786,193	1,231,331	112.1%
고등학교	427	480,445	789,190	1,269,635	115.6%
전체	2,419	366,716	821,672	1,188,389	108.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이상). 2021년 원자료 분석.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자녀 양육부담 추계 정의에 포함되는 공통비용은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 표와 같이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다만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공통지출(2)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직접지출(1)도 함께 작아지는데, 자녀 수가 2명일 경우에는 1명일 경우에 비해 공통지출의 감소폭이 더 크지만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통지출 보다 자녀에 대한 직접지출의 감소폭이 더 크다.

〈표 3-5〉 자녀 수별 1인당 양육비용(2021년)

(단위: 원/월)

자녀 수	가구 수	(1) 자녀지출		(2) 공통지출		(1)+(2)	자녀 1명 대비
			자녀 1명 대비		자녀 1명 대비		
1명	1,126	402,581	-	914,589	-	1,317,170	-
2명	1,100	348,424	86.5%	760,748	83.2%	1,109,172	84.2%
3명 이상	193	262,036	65.1%	635,612	69.5%	897,648	68.1%
전체	2,419	366,716	91.1%	821,672	69.5%	1,188,389	90.2%

\*자녀 수가 4, 6명인 가구의 경우 그 표본 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이상). 2021년 원자료 분석.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양육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다음 표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최저소득층 대비 최고소득층의 자녀 1인당 양육비용(1+2)은 약 76%(1.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에는 공통지출(2) 보다는 자녀에 대한 직접 지출(1)의 차이가 더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6〉 소득수준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단위: 원/월)

소득분위	가구 수	(1) 자녀지출		(2) 공통지출		(1)+(2)	
			1분위 대비		1분위 대비		1분위 대비
1분위	71	256,724	-	599,183	-	855,907	-
2분위	238	220,524	85.9%	585,117	97.7%	805,641	94.1%
3분위	497	252,304	98.3%	663,929	110.8%	916,233	107.0%
4분위	781	342,554	133.4%	816,576	136.3%	1,159,130	135.4%
5분위	832	506,124	197.1%	1,002,914	167.4%	1,509,037	176.3%
전체	2,419	366,716	142.8%	821,672	137.1%	1,188,389	138.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이상). 2021년 원자료 분석.

〈표 3-7〉 자녀 수별 소득수준별 가구 수 분포(2021년)

(단위: 가구)

자녀 수	소득분위				
	2분위 이하	3분위	4분위	5분위	계
1명	170 (7.0%)	243 (10.0%)	366 (15.1%)	347 (14.3%)	1126 (46.5%)
2명	117 (4.8%)	217 (9.0%)	353 (14.6%)	413 (17.1%)	1100 (45.5%)
3명 이상	22 (0.9%)	37 (1.5%)	62 (2.6%)	72 (3.0%)	193 (8.0%)
계	309 (12.8%)	497 (20.5%)	781 (32.3%)	832 (34.4%)	2419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이상). 2021년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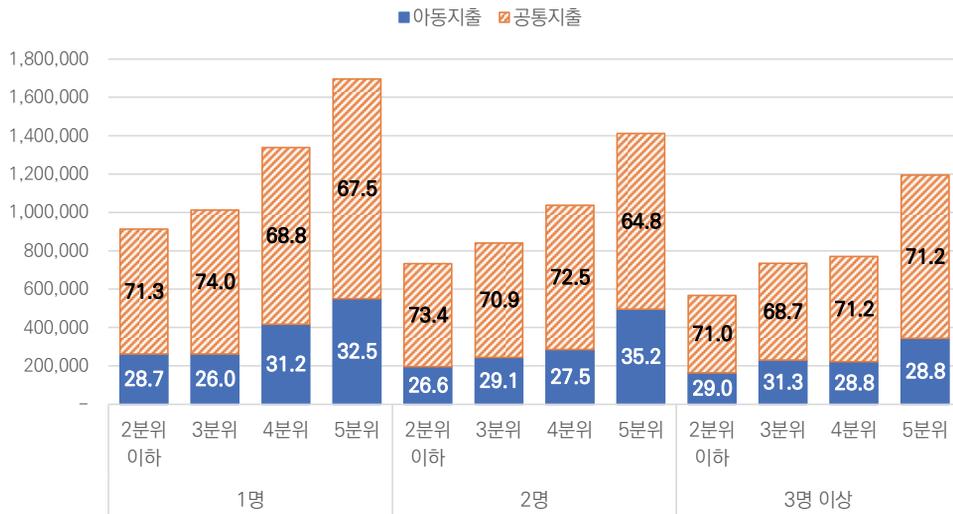
또한 양육 중인 자녀 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용에 차이가 있는데(다음 표), 자녀 1명을 양육 중인 가구들 중에서는 저소득층 대비 최고소득층의 양육비용이 약 85.7% 높고, 2명을 양육 중인 가구들 중에서는 그 차이가 92.5%, 3명 이

44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상 양육 중인 가구들 중에서는 2배 이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용(1+2)의 격차가 더 커진다. 이는 공통지출 보다는 자녀에 대한 직접지출(1)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18세 미만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직접지출의 격차가 다소 감소한다.

〈표 3-8〉 자녀 수별 소득수준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단위: 원/월)



자녀 수	소득분위	가구 수	(1) 자녀지출		(2) 공통지출		(1)+(2)	
			2분위 이하 대비	2분위 이하 대비	2분위 이하 대비	2분위 이하 대비		
1명	2분위 이하	170	262,196	-	650,807	-	913,003	-
	3분위	243	262,755	100.2%	749,519	113.7%	1,012,274	110.9%
	4분위	366	417,046	159.1%	921,732	139.8%	1,338,778	146.6%
	5분위	347	550,846	210.1%	1,144,743	173.7%	1,695,589	185.7%
2명	2분위 이하	117	195,344	-	537,678	-	733,022	-
	3분위	217	244,574	125.2%	596,989	112.3%	841,563	114.8%
	4분위	353	285,501	146.2%	752,163	141.5%	1,037,664	141.6%
	5분위	413	495,873	253.8%	914,847	172.1%	1,410,719	192.5%
3명 이상	2분위 이하	22	164,485	-	403,252	-	567,737	-
	3분위	37	230,064	139.9%	504,855	125.2%	734,919	129.4%
	4분위	62	221,537	134.7%	548,605	136.0%	770,142	135.7%
	5분위	72	343,608	208.9%	851,005	211.0%	1,194,612	210.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이상), 2021년 원자료 분석.

이번에는 양육 중인 자녀 수가 같더라도 첫째아의 교육상태에 따라 1인당 양육비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학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용이 커지지만 앞의 경우(소득분위별)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음 표). 양육 중인 자녀 수가 같다면 첫째아 교육상태에 따라 공통지출(2)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총 비용(1+2)은 주로 자녀에 대한 직접 지출(1)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9〉 자녀 수별 첫째아 교육상태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단위: 원/월)

자녀 수	첫째아 교육상태	가구 수	(1) 자녀지출	(2) 공통지출	(1)+(2)	학령 전 대비
1명	학령 전	404	241,404	953,250	1,194,654	
	초등학교	286	465,649	942,218	1,407,867	117.8%
	중학교	197	517,797	894,191	1,411,987	118.2%
	고등학교	239	509,560	833,727	1,343,286	112.4%
2명	학령 전	211	182,897	761,414	944,311	
	초등학교	483	353,533	771,302	1,124,835	119.1%
	중학교	249	413,651	743,788	1,157,438	122.6%
	고등학교	157	464,422	750,856	1,215,278	128.7%
3명 이상	학령 전	15	155,615	637,958	793,573	
	초등학교	90	235,505	674,438	909,944	114.7%
	중학교	57	318,800	576,718	895,518	112.8%
	고등학교	31	312,573	613,144	925,717	116.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이상), 2021년 원자료 분석.

소득수준에 따라 첫째아의 학령별로 양육비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아의 교육상태가 높을수록 소득수준별 양육비용(1+2)의 격차가 비교적 큰데 이는 소득수준별로 공통지출(2)보다는 자녀에 대한 직접지출(1)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첫째아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용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표 3-10〉 첫째아 교육상태별 소득분위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2021년)

(단위: 원/월)

첫째아 교육상태	소득분위	가구 수	(1) 자녀지출	(2) 공통지출		(1)+(2)	2분위 이하 대비
				2분위 이하 대비	2분위 이하 대비		
학령 전	2분위 이하	78	207,915	-	667,125	875,040	-
	3분위	157	178,061	85.6%	719,040	897,101	102.5%
	4분위	222	221,643	106.6%	885,503	1,107,146	126.5%
	5분위	173	256,147	123.2%	1,096,905	1,353,052	154.6%
초등학교	2분위 이하	111	199,548	-	564,133	763,681	-
	3분위	168	271,426	136.0%	653,038	924,463	121.1%
	4분위	290	353,535	177.2%	802,751	1,156,285	151.4%
	5분위	290	523,706	262.4%	1,010,537	1,534,243	200.9%
중학교	2분위 이하	66	305,942	-	534,397	840,339	-
	3분위	104	261,831	85.6%	641,630	903,461	107.5%
	4분위	140	376,162	123.0%	753,800	1,129,962	134.5%
	5분위	193	646,440	211.3%	979,898	1,626,338	193.5%
고등학교	2분위 이하	54	221,595	-	594,473	816,067	-
	3분위	68	358,806	161.9%	598,572	957,378	117.3%
	4분위	129	486,512	219.6%	794,411	1,280,923	157.0%
	5분위	176	592,519	267.4%	913,925	1,506,444	184.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이상). 2021년 원자료 분석.

### 나. 자녀 양육부담 규모

이번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 우선 가구 총 지출 대비 자녀에 대한 지출 비중은 2019년 12.4%에서 2020년 10%로 감소하였고 2021년 11.6%로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 공통지출을 포함할 경우 전체 지출 대비 비중은 약 72% 정도이다.

〈표 3-11〉 가구 총지출 대비 자녀양육비용 추이

(단위: 원/월)

연도	(1) 총지출	(2) 자녀지출(계)	(2)/(1)	(3) 공통지출(계)	((2)+(3))/(1)
2019	4,782,141	607,396	12.4%	2,868,893	72.7%
2020	4,750,786	483,592	10.0%	2,941,493	72.1%
2021	4,852,512	570,439	11.6%	2,935,032	72.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이상). 2021년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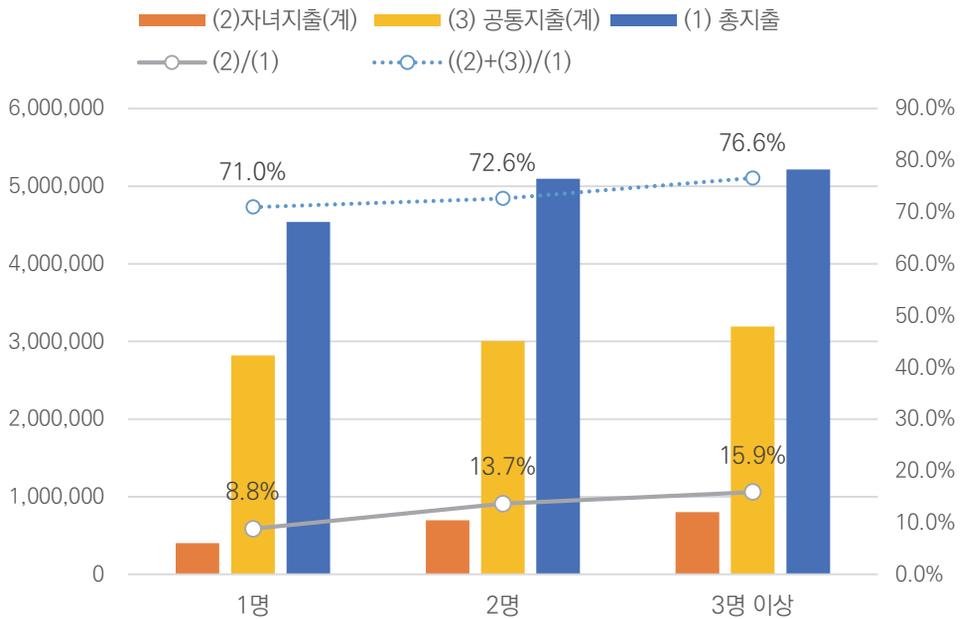
자녀 수에 따라 지출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다음 표), 자녀가 1명일 경우 그에 대한 지출 비중은 8.8% 정도이고, 2명일 경우에는 13.7%, 3명 이상일 경우에는

15.9% 정도를 차지한다. 공통지출을 포함할 경우 자녀가 2명인 가구와 1명이 가구 간 지출 비중의 차이는 약 1.6%p 정도인데 비해 양육 중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4%p 정도로 더 커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 수에 따른 지출 비중의 차이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표 3-13).

〈표 3-12〉 자녀수별 가구 총지출 대비 자녀양육비용(2021년)

(단위: 원/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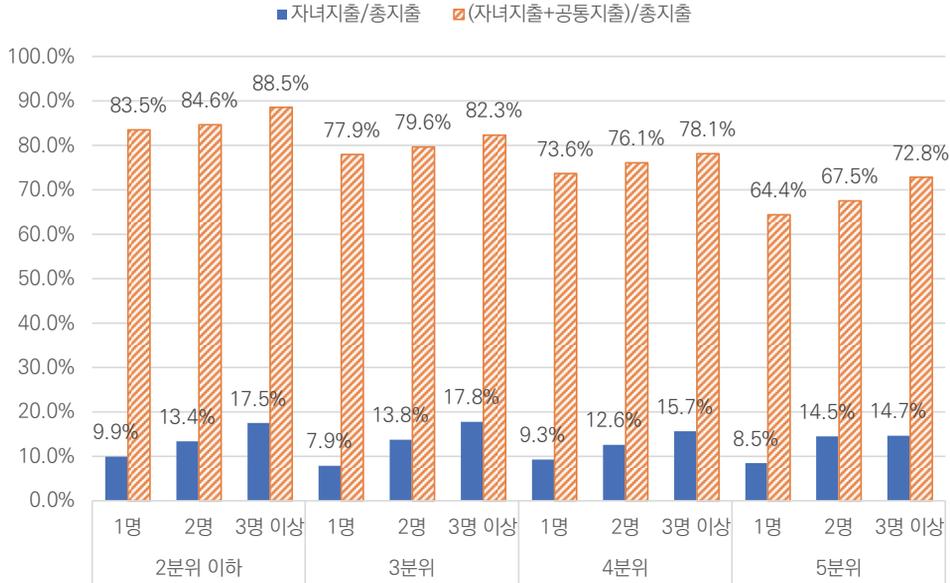


자녀 수	(1) 총지출	(2) 자녀지출(계)	(2)/(1)	(3) 공통지출(계)	((2)+(3))/(1)
1명	4,541,683	402,581.3	8.8%	2,820,750	71.0%
2명	5,097,497	696,848.6	13.7%	3,005,540	72.6%
3명 이상	5,215,901	803,735.9	15.9%	3,191,710	76.6%
전체	4,852,512	570,439	11.6%	2,935,032	72.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 이상). 2021년 원자료 분석.

〈표 3-13〉 소득분위별 자녀수별 가구 총지출 대비 자녀양육비용(2021년)

(단위: 원/월)



소득분위	자녀 수	(1) 총지출	(2) 자녀지출(계)	(2)/(1)	(3) 공통지출(계)	((2)+(3))/(1)
2분위 이하	1명	2,468,118	262,196	9.9%	1,798,174	83.5%
	2명	2,849,195	390,688	13.4%	2,020,976	84.6%
	3명 이상	2,798,445	507,472	17.5%	1,970,207	88.5%
3분위	1명	3,253,024	262,755	7.9%	2,272,600	77.9%
	2명	3,535,083	489,148	13.8%	2,325,993	79.6%
	3명 이상	3,939,129	714,256	17.8%	2,526,352	82.3%
4분위	1명	4,424,595	417,046	9.3%	2,841,446	73.6%
	2명	4,645,764	571,002	12.6%	2,962,269	76.1%
	3명 이상	4,418,126	688,206	15.7%	2,762,380	78.1%
5분위	1명	6,529,518	550,846	8.5%	3,654,824	64.4%
	2명	6,900,196	991,745	14.5%	3,667,484	67.5%
	3명 이상	7,317,380	1,040,805	14.7%	4,287,497	72.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 이상). 2021년 원자료 분석.

## 제2절 아동수당 인식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2018년 9월 도입된 이후 4년간 지속되고 있는 아동수당 인식조사를 위해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수당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서 아동수당 전문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추가하였다.

〈표 3-14〉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일반국민	조사 대상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
	표본 오차	±3.1%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
	조사 기간	2022년 10월 13일 ~ 10월 21일 (9일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50% 및 온라인 조사 50%
	표집틀	유·무선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 프레임(무선 10%, 유선 20%) 및 전국 일반인 대상 온라인 패널
전문가	조사 대상	아동수당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조사 기간	202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8일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아동수당 인식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연령대, 거주지역, 성별에 따라 비례적으로 조사 대상자 수를 산정하였고, 아동수당 수급자 200명은 임의로 할당표집하였다. 응답자 1,000명 중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음’은 322명, ‘없음’은 678명이며, 미성년의 자녀 수는 1명이 가장 많았다(58.7%).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고졸이하(22.2%), 전문대졸(13.7%), 대졸(53.0%), 대학원이상(11.1%)이며, 직업은 사무직을 의미하는 화이트칼라(44.7%)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은퇴/무직/기타(15.8%), 주부(14.1%), 블루칼라(13.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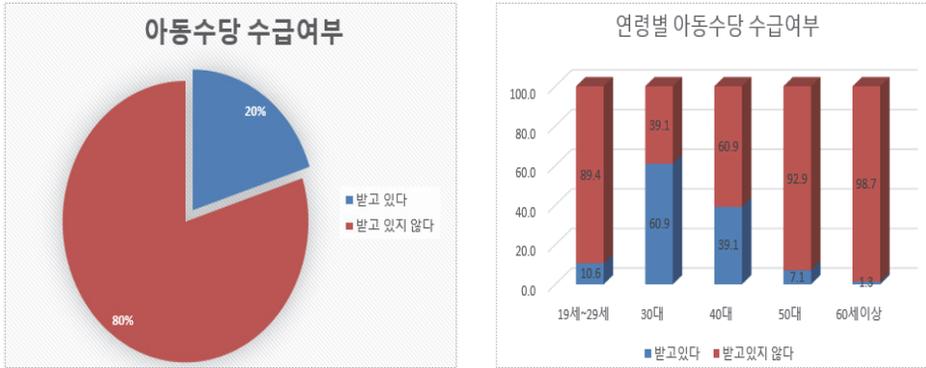
〈표 3-15〉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b>전체</b>		1000	100.0	미성년자 자녀유무	있다	322	32.2
연령대	19세~29세	170	17.0	미성년자 자녀유무	없다	678	67.8
	30대	151	15.1	미성년자 자녀수	1명	189	58.7
	40대	184	18.4		2명	119	37.0
	50대	196	19.6		3명	14	4.3
	60세이상	299	29.9	아동수당 수급여부	받고 있다	200	20.0
권역	서울	188	18.8	아동수당 수급여부	받고 있지 않다	800	80.0
	경기/인천	318	31.8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22.2
	대전/충청세종	107	10.7		전문대졸	137	13.7
	강원	31	3.1		대졸	530	53.0
	부산/울산/경남	150	15.0		대학원이상	111	11.1
	대구/경북	98	9.8	직업	자영업	86	8.6
	광주/전라	96	9.6		화이트칼라	447	44.7
	제주	12	1.2		블루칼라	134	13.4
성별	남성	496	49.6		주부	141	14.1
	여성	504	50.4	학생	31	3.1	
					농림축어업	3	0.3
					은퇴/무직/기타	158	15.8

## 2. 아동수당 만족도 조사 결과

아동수당 수급자 20%가 임의로 할당표집되었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이며,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80.0%이다. 응답자 연령별 아동수당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19~29세 응답자는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0.6%이며, '받고 있지 않다'의 비중은 89.4%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응답자 중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60.9%), 다음으로 40대(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를 비롯하여 50대 이상의 응답자에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상으로 아동수당 수급대상 자녀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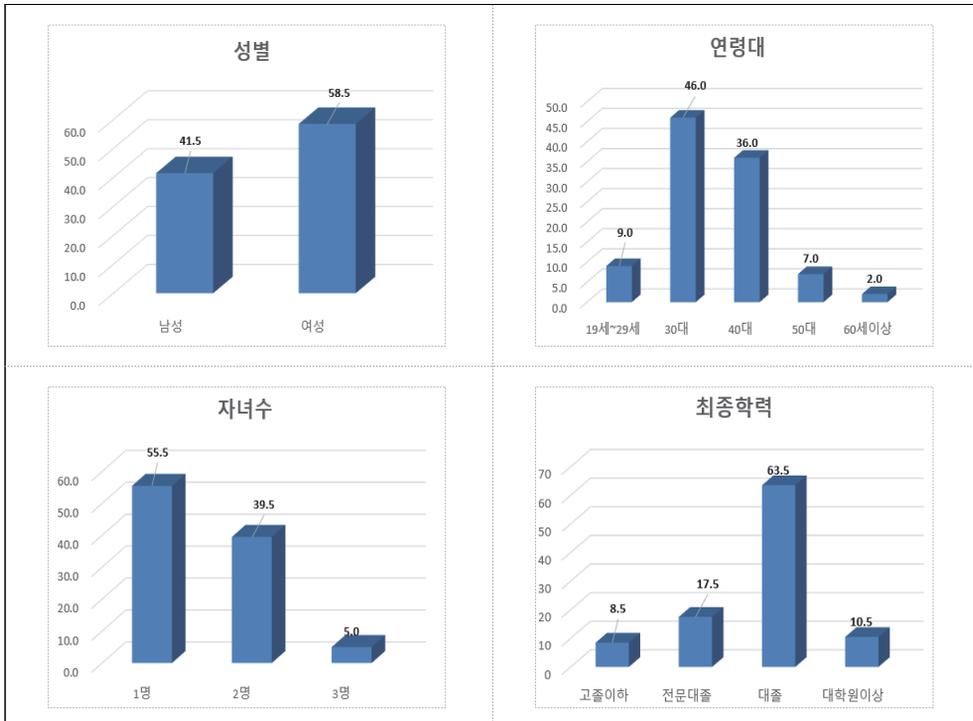
[그림 3-1] 아동수당 지급여부(n=1000명)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아동수당 지급자(‘받고 있다’) 200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41.5%이며, 여성은 58.5%이다. 연령대는 30대가 46.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36.0%이다.

[그림 3-2] 아동수당 지급자의 응답자 특성(n=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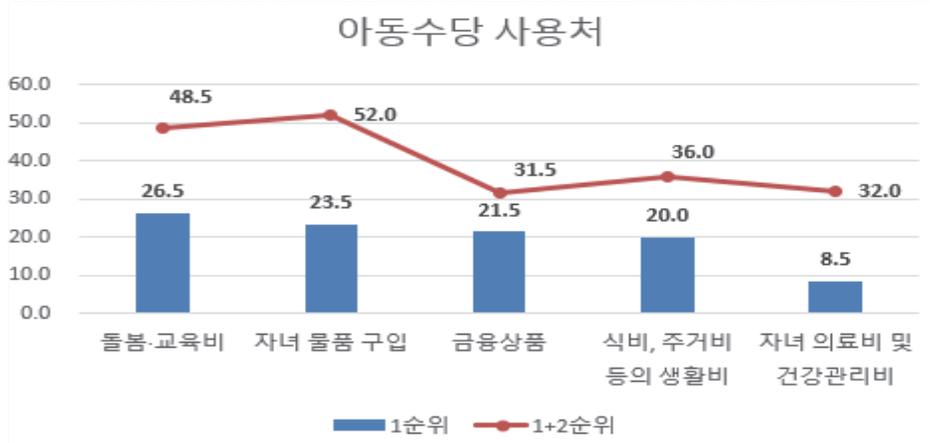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아동수당 수급자 자녀수는 1명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명 39.5%, 3명이 5.0% 순이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대졸 63.5%, 전문대졸 17.5%, 대학원이상 10.5%, 고졸이하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혹은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문에는 1순위가 '돌봄·교육비(26.5%)'이며, 다음으로 '자녀 물품 구입(23.5%)', '금융상품(21.5%)',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20.0%), '자녀의료비 및 건강관리비(8.5%)' 순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계한 결과에서는 '돌봄·교육비(48.5%)'보다 기저귀, 유모차, 젖병, 이불, 의류, 신발, 장난감, 도서 등의 '자녀 물품 구입(52.0%)'에 대한 지출이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녀 이름으로 된 저축·보험 등과 같은 '금융상품(31.5%)'에 대한 지출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 아동수당 사용처(n=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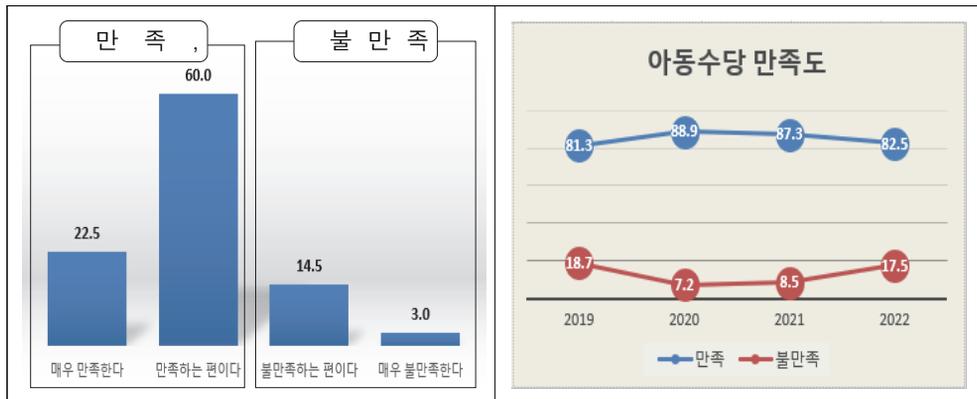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아동수당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2.5%(매우 만족 22.5%, 만족하는 편 60%)이며, 2021년 조사결과(87.3%)와 비교하여 약 4.8%p 감소하였다.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022년 만족도 점수는 70.2점<sup>3)</sup>으로 2021년(73.0점) 대비 2.8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전년 대비 아동수당 만족도가 소폭 감

3) 2021년 모름/무응답 4.5%가 100점 환산 시에는 제외되어, 분자에 해당하는 만족도결과 합계(A)가 100% 아닌 95.9%로 계산되었음. 이에 동일한 기준의 비교를 위해 2022년 100점 환산점수 산출시에도 2021년과 동일하게 모름/무응답의 비율을 4.5%로 가정하여 산출함

소한 이유는 2021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2022년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의 확대 등의 정책변화가 있었으나, 기존 6세 아동 수급자가 만 7세가 된 해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하였으므로 추가 수급자에 따른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보통 정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 수혜자의 유입이 많거나, 정책변화로 수혜자의 수혜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을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3-4] 아동수당 만족도(n=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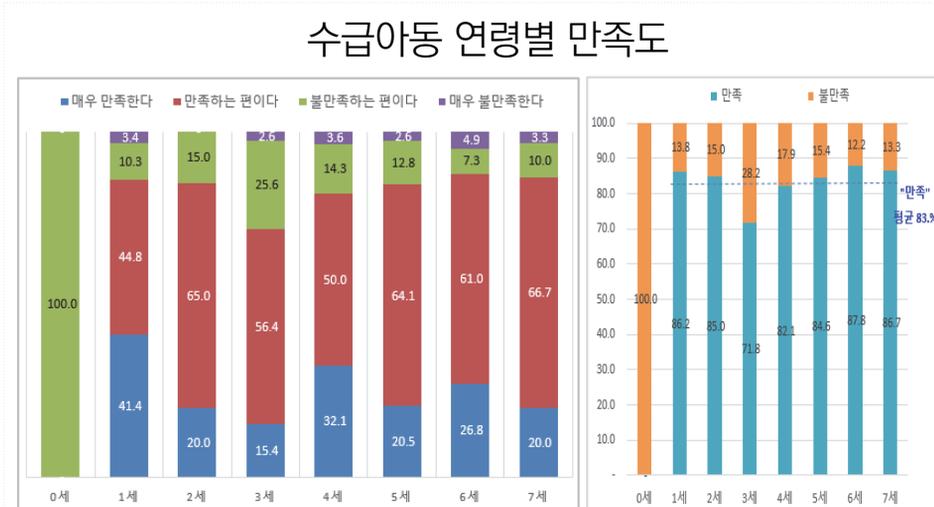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수급아동 연령별(만0~7세까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1세 자녀를 둔 응답자의 “매우 만족” 응답비율이 41.4%로 가장 높았으나, 만2세와 만3세로 갈수록 ‘매우 만족’의 응답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만 4세 자녀를 둔 응답자의 ‘매우 만족’ 응답비율이 소폭 상승하다가 만7세 자녀를 둔 응답자의 응답비율은 만6세 자녀를 둔 응답자의 ‘매우만족’ 비율과 비교하여 약 6.8%p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2021년과 비교하여 100점 환산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점수배점이 가장 높은(100%) ‘매우만족’의 비중이 2021년 대비 5%p 낮기 때문임(‘만족’은 ‘21년 대비 0.2%p 높음). 아동수당 수급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결과는 모수가 매우 적은 한계가 있으며, 100점 만점 환산점수 시 활용되는 가중치(‘매우만족’은 100%, ‘만족’ 66.7%)에 따라 더욱 급격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해석시 주의가 필요함.

[그림 3-5] 수급아동 연령별 만족도(n=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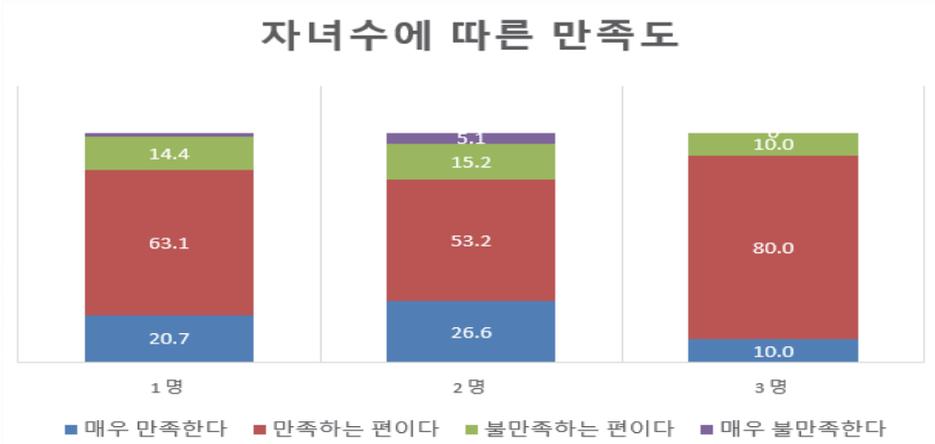


구분	아동수 (명)	매우 만족 (%)	만족하는 편 (%)	불만족하는 편 (%)	매우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0세	1	-	-	100.0	-	-	100.0
1세	29	41.4	44.8	10.3	3.4	86.2	13.8
2세	20	20.0	65.0	15.0	-	85.0	15.0
3세	39	15.4	56.4	25.6	2.6	71.8	28.2
4세	28	32.1	50.0	14.3	3.6	82.1	17.9
5세	39	20.5	64.1	12.8	2.6	84.6	15.4
6세	41	26.8	61.0	7.3	4.9	87.8	12.2
7세	60	20.0	66.7	10.0	3.3	86.7	13.3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다음으로 응답자의 자녀수에 따른 만족도 결과이다. 3명의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1명의 자녀를 둔 응답자보다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6.2%p 높았으며, ‘매우 만족한다’(10.0%)보다는 ‘만족하는 편이다’(80.0%)의 비중이 높았다. ‘불만족하는 편이다’는 10.0%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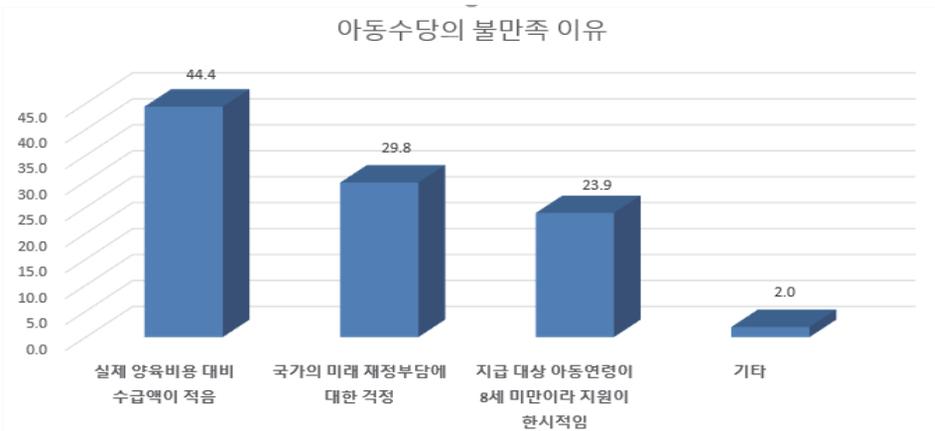
[그림 3-6] 연령별, 자녀수에 따른 만족도(n=200)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전체 응답자(1,000명) 중 아동수당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205명을 대상으로 한 불만족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의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이 4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이 29.8%, ‘지급 대상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응답이 23.9%이다.

[그림 3-7]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n=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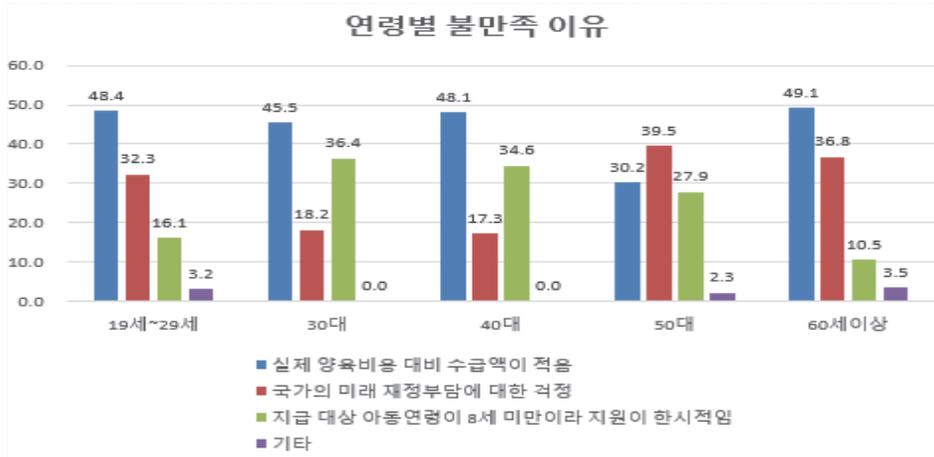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전 연령대에서 모두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을 가장 불만족한 이유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상이하였다. 30대와 40대에서는 ‘지급 대상 아동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이유를,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아동수당 수급과 관련이 낮은 19~29세와 50대, 60대에서는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을 불만족 이유로 답했다.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른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유무와 상관 없이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을 모두 가장 불만족한 이유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높은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지급 대상 아동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이유를, 미성년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이는 연령별에서의 차이와 같이 아동수당 수급 대상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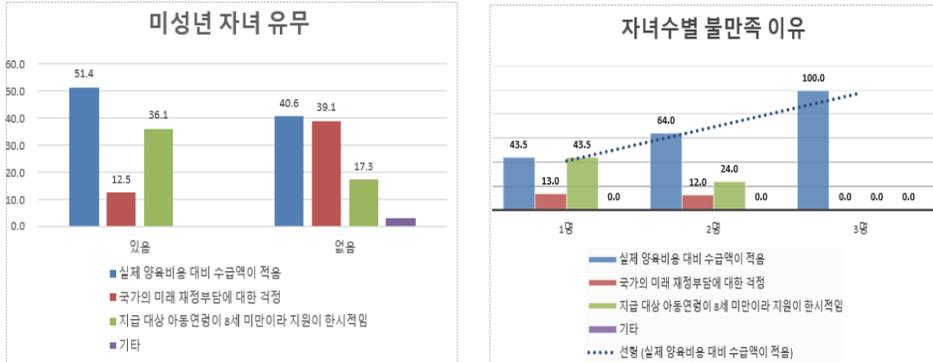
[그림 3-8] 연령별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n=205)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성년 자녀가 1명, 2명, 3명인 경우 모두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이 가장 큰 불만족 이유였는데, 자녀수와 비교하여 응답비율이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에 대한 불만족 응답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림 3-9] 자녀수별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n=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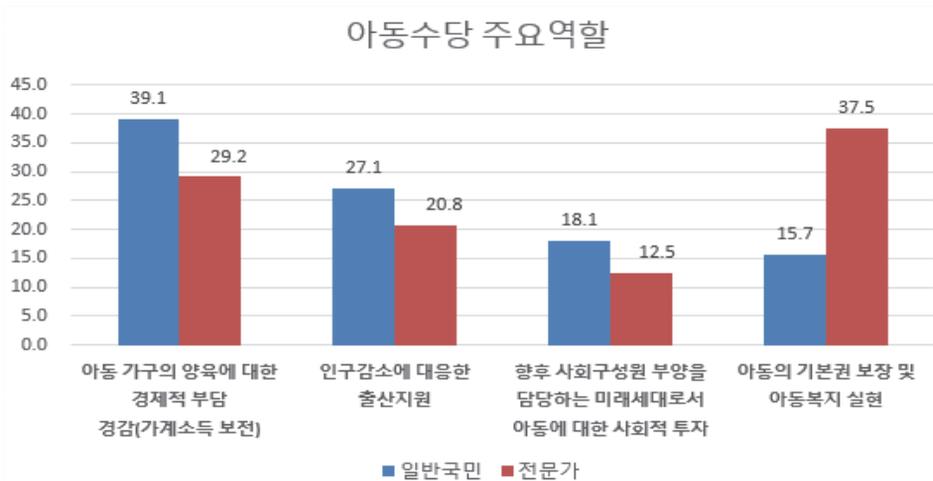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 3. 아동수당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아동수당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과 아동 및 보육, 재정 등의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전문가 24명이 참여하였다. 아동수당의 가장 주요한 역할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계소득 보전)(39.1%)’ 과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27.1%)’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전문가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37.5%)을 아동수당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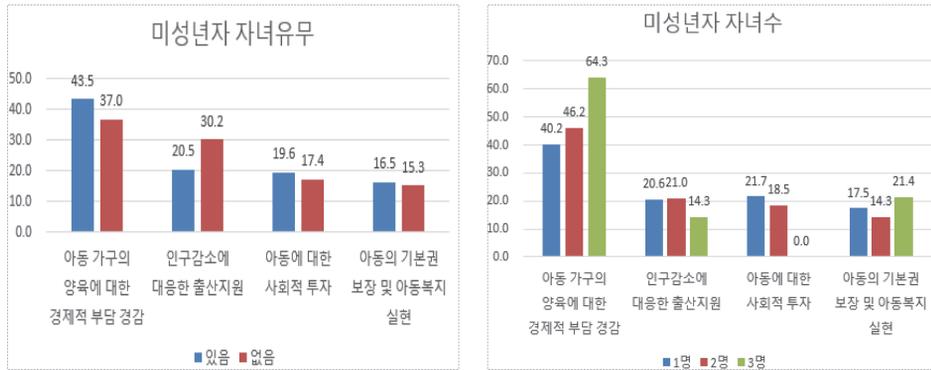
[그림 3-10] 아동수당 주요역할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일반국민의 경우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가장 주요한 역할(43.5%)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 경감(64.3%)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미성년자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의 주요역할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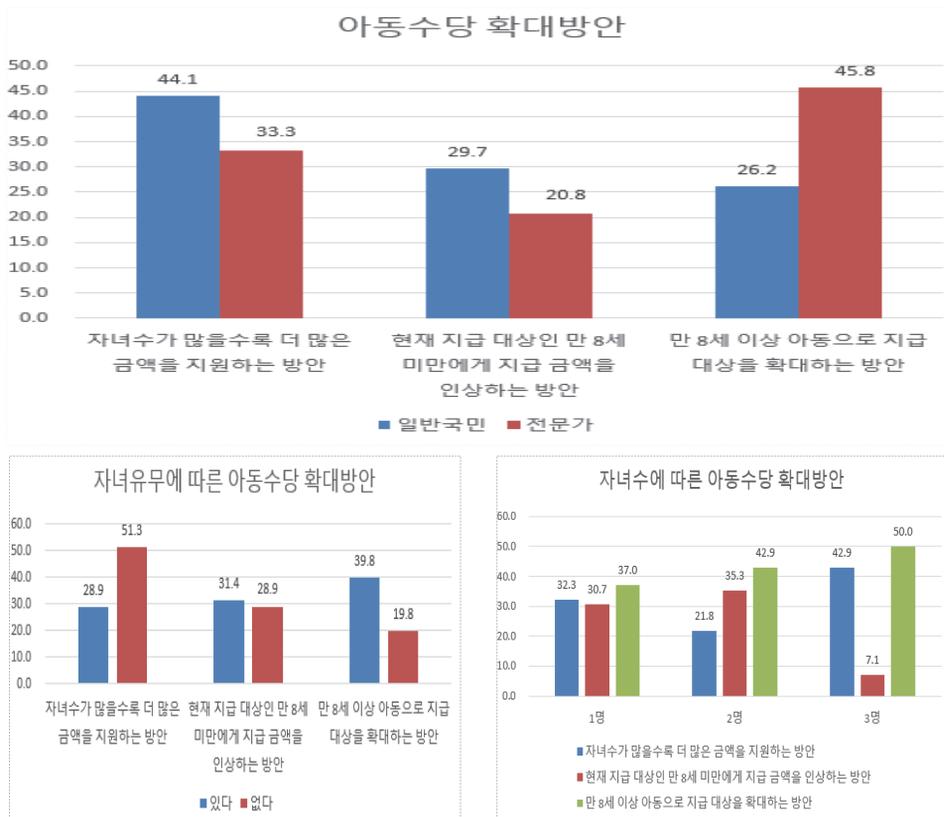
아동수당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현재 지급 대상인 만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금액인상), 둘째,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지급 연령 확대), 셋째,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첫째보다 둘째에, 둘째보다 셋째 자녀에게 더 많은 금액 지원) 하는 방안(아동수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지원) 중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상이하였는데, 전문가는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지급연령 확대(45.8%)’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은 이 항목의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26.2%)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경우, ‘아동수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지원(44.1%)’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선택한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51.3%)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전문가 응답과 동일한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39.8%)’을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답했다. 위 결과는 2020년, 2021년 실시한 아동수당 인식조사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에 지원을 집중’하기 보다는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과 같다.

자녀수에 따른 아동수당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을 둔 응답자 모두 1순위로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하였

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선호도(자녀 1명 37.0%, 자녀 2명 42.9%, 자녀 3명 50.0%)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녀 3명을 둔 응답자의 경우, ‘만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50.0%, 다음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42.9%로 선호하였다. ‘현재 지급 대상인 만8세 미만에게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1%만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아동수당 확대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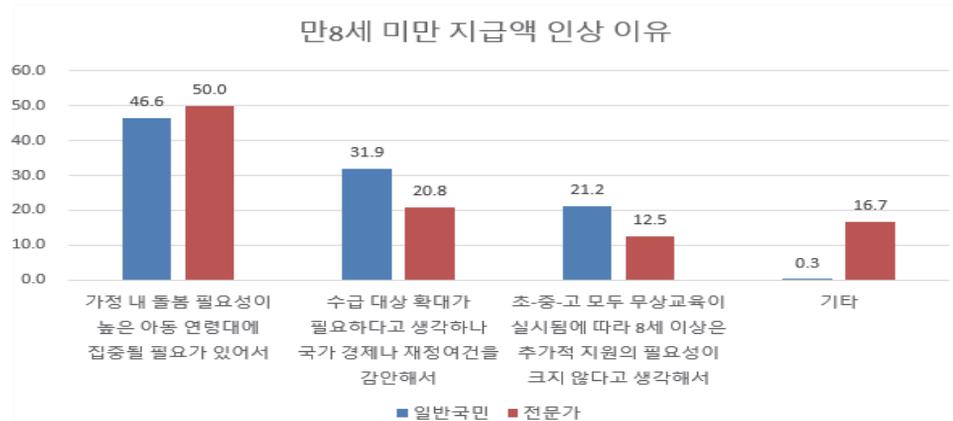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 가. 확대방안① : 지급 금액 인상

아동수당제도를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금액 인상)으로 확대한다면,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일반 국민 46.6%, 전문가 50.0%)’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일반국민 31.9%, 전문가 20.8%)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8세 이상은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일반국민 21.2%, 전문가 12.5%)’가 가장 적었다.

[그림 3-13] 만8세 미만 지급금액 인상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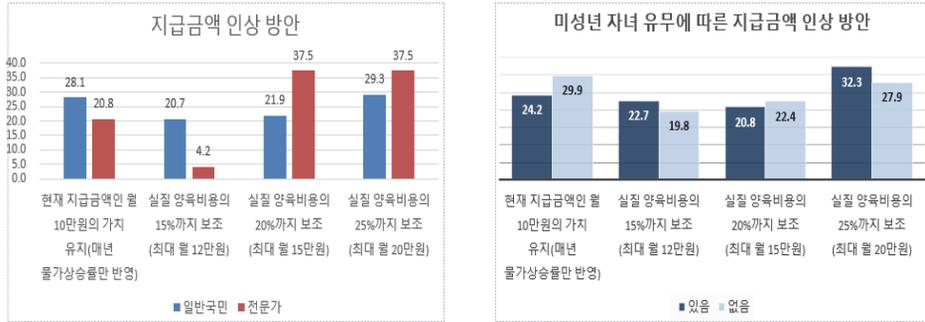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전문가 그룹의 기타의견으로는 “만 8세 미만에게 확대한다면 2세 이상 아동에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0~1세에게는 부모급여 도입 등 향후 현금성 지원이 증가할 예정이다, 실제 양육비 부담은 영아보다 유아기에 더 높아지므로 양육비 부담이 큰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와 “연(월)령이 낮을수록 기본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 마련 및 조성을 위한 지원이 상징적으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인상방안으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에서 모두 ‘실질 양육비용의 25%까지 보조(최대 월 20만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일반국민 29.3%, 전문가 37.5%). 일반국민 중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는 ‘현재 지급 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를 유지(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것을 가장 선호(29.9%)하였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보기문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인 ‘최대 25%까지 보조’를 가장 선호(32.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전문가와 일반국민(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모두가 가장 선호되는 지급금액 인상방안은 아동당 실질 양육비용의 25%까지 보조(최대 월 20만

원)하는 것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일반국민은 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 현재가치를 유지할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14] 만8세 미만 지급금액 인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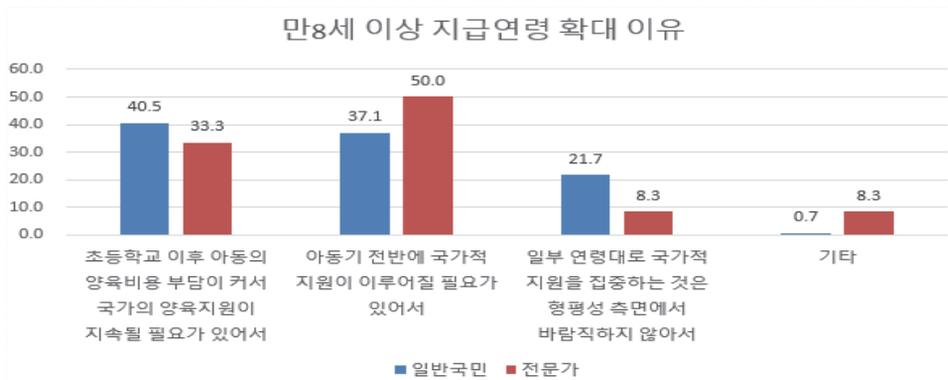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 나. 확대방안② : 지급 연령 확대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연령을 확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40.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문가는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50.0%)’이라고 응답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룹에서 모두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경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통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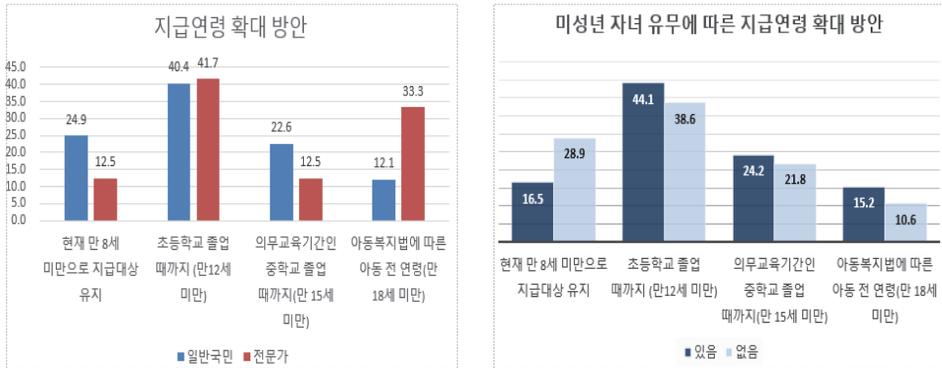
[그림 3-15] 만 8세 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만 8세 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12세 미만)’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까지 지급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두 번째(33.3%)로 많았다. 일반국민의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지급연령 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음’인 경우가 ‘없음’인 경우보다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12세 미만)까지 지급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약 5.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만 8세 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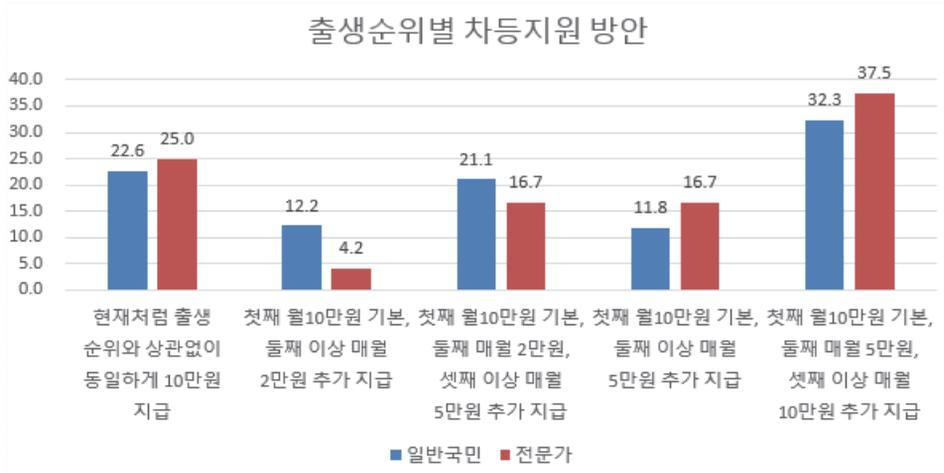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 다. 확대방안③ :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아동수당제도 확대 방안 중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첫째 월 10만원은 기본으로 하고,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방안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선호되는 것은 ‘현재처럼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만원 지급’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가장 선호되는 방식과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방식이 ‘(선택지 중) 최대치 지원’ 혹은 ‘현상 유지’로 응답자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7]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차등지원’이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80% 이상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국민 중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차등지원’이 경제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16.9%(1명 자녀)→25.2%(2명 자녀)→50.0%(3명 자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8]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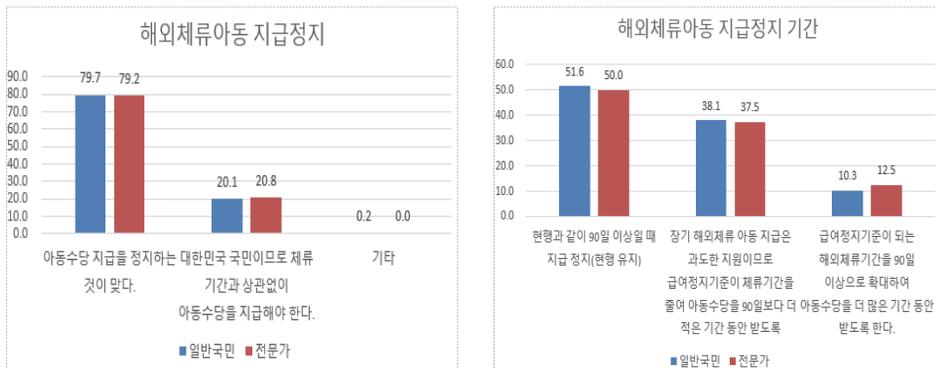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 4. 아동수당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현재 해외 체류기간(해외출생, 복수국적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입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결과, 대체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에 동의하는 것(일반국민 79.7%, 전문가 79.2%)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20%는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림 3-19]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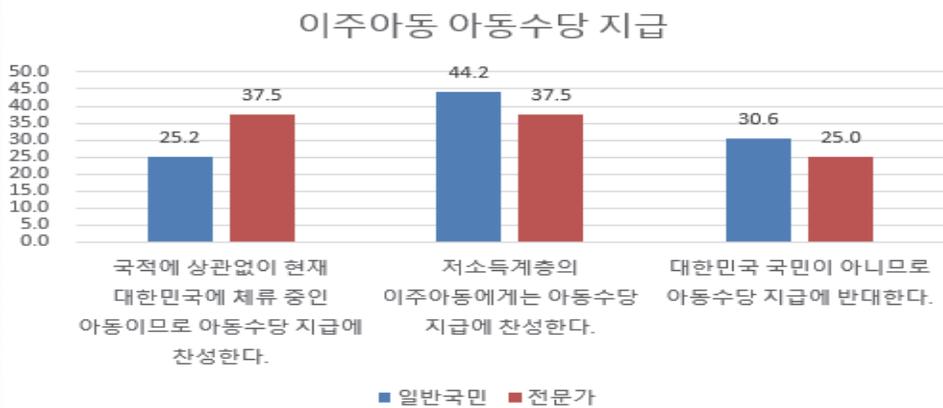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정지(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50%) 되었고, 다음으로 ‘장기 해외체류 아동 지급은 과도한 지원이므로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받도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음으로 많았다.

해외체류자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사후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해외체류 90일 이상에 대해 중지하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일가친척 방문 등으로 외국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 정도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한 지급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출국 시 아동수당을 익월부터 중지시키고, 재입국 시 익월부터 지급하도록 한다면, 단순히 단기간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다녀오는 아동들을 아동수당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오랜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에겐 지급이 되지 않음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아동(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가 44.2%가 가장 많았고, 전문가는 ‘현재와 같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찬성한다’가 37.5%, ‘저소득계층 이주아동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가 37.5%로 조사되었다. 이주아동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국민의 경우, 30.6%의 응답자가 ‘지급 반대한다’를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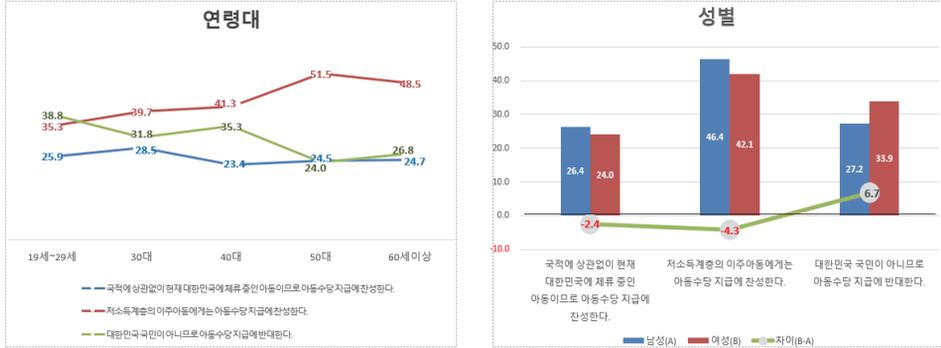
[그림 3-20]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일반국민 19~29세를 제외한 30대 이상의 응답자는 대체로 ‘저소득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50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저소득계층 이주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찬성하다’고 응답하였고, ‘지급 반대한다’가 가장 낮게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9~29세의 응답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소득층의 이주아동에게 지급 찬성’이 35.3%, ‘국적에 상관없이 아동수당 지급 찬성’은 가장 낮은 25.9%가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남녀 모두 ‘저소득계층 이주아동에게 지급 찬성’한다는 응답이 46.4%, 42.1%로 가장 높고, ‘국적에 상관없이 아동수당 지급 찬성’이 가장 응답비율이 낮았다. ‘지급 반대’에 대해서는 남자는 27.2%, 여자는 33.9%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6.7%p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3-21] 이주아동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응답자 특성 분석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저소득계층 이주아동에 대한 지급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이 자녀가 없는 응답자보다 약 5.3%p 높았다. 특히 2명의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42.0%가 ‘지급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22] 자녀유무 및 자녀수에 따른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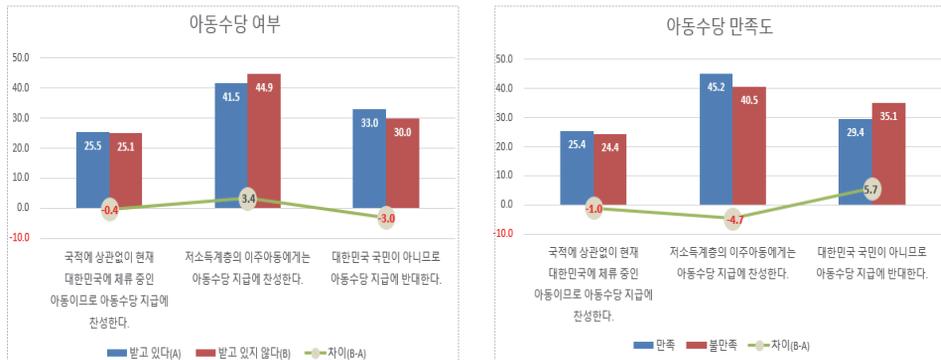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아동수당 수급여부 및 만족도에 따라, 이주아동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동수당 수급여부와 만족도와 상관없이 모두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응답

자가 받고 있지 않은 응답자보다 ‘지급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고, 아동수당에 만족하는 응답자보다 불만족하는 응답자가 ‘지급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합해보면, 이주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반대’하는 응답자의 특성은 19~29세 연령층,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가 있고, 특히 자녀수는 2명인 응답자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하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응답자, 아동수당제도에 불만족하는 응답자가 ‘이주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반대’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아동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응답결과



자료: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조사(‘22.12)」 결과임.





## 제4장

###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제1절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실태 분석

제2절 법제분석

제3절 공공재정 환수에 관한 법령과

아동수당의 환수제도와의 관계

제4절 아동수당 오지급 환수관리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 제 4 장

#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 제1절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실태 분석

#### 1.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 현황

복지급여의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급여수급자격을 심사하여 급부행위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급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거짓 또는 허위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급신청 당시에는 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였으나,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여 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급여를 수령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수급자격에 변경이 있음을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급여의 지급을 중단시켜야 할 책임은 급여수령자에게 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부당하게 급여를 계속 수령한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며 특히 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당연히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수당은 연령(8세 미만의 아동)을 기준으로 하여 보편적으로 급여(월 10만원)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복수국적을 가지고 해외여권을 활용하여 출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표 4-1>의 2021년 기준 아동수당 환수 현황에 따르면 환수결정 건수는 4,251건으로 전년 대비 4.5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환수결정금액 또한 전년 보다 3.8배 정도 증가한 13억 9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2019년 환수금액 기준으로 78.4%였던 환수율이 계속 낮아져 2021년에는 41.5%까지 하락했다는 점이다. 아동수당 과오지급 사유를 보면 그 주요 원인이 해외장기체류로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전체 환수결정 건수의 92.1%와 환수결정금액을 기준으로 95.7%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수당 환수율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 역시 해외장기체류 사유에 대한 미환수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표 4-1〉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결정 및 환수 현황(2019~2021)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구분	환수결정 건수	환수결정 금액	환수납부 건수	환수금액	환수율 (건수)	환수율 (금액)
2019	전체	2,263	586	2,062	460	91.1	78.4
	해외장기체류	1,200	339	1,049	242	87.4	71.4
	(해외장기체류 사유 비중)	(53.0)	(57.8)	(50.9)	(52.6)	-	-
2020	전체	942	364	757	234	80.4	64.2
	해외장기체류	708	323	558	201	78.8	62.3
	(해외장기체류 사유 비중)	(75.2)	(88.6)	(73.7)	(85.9)	-	-
2021	전체	4,251	1,387	2,066	576	48.6	41.5
	해외장기체류	3,915	1,327	1,775	530	45.3	40.0
	(해외장기체류 사유 비중)	(92.1)	(95.7)	(85.9)	(92.1)	-	-

자료: 보건복지부(내부자료). 연도별 시군구별 아동수당 환수 내역.

이처럼 해외장기체류 사유에 대한 환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환수결정 1건 당 환수금액이 2021년 기준 33만 8874원으로 매우 소액인데 비해 환수절차에 수반되는 각종 재·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해외장기체류 관련 시군구별 환수 실태를 보면, 총 229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226개+세종+제주 서귀포시 및 제주시) 중 183개 시군구에서 해외장기체류를 사유로 한 환수결정이 이루어졌다. 1건당 환수결정금액이 10만원인 시군구가 29개, 10만원초과~20만원 이하 33개 시군구,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30개 시군구,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49개 시군구 등 약 90%의 시군구에서 건당 환수결정금액이 7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표 4-2〉 2021년 해외장기체류 건당 환수결정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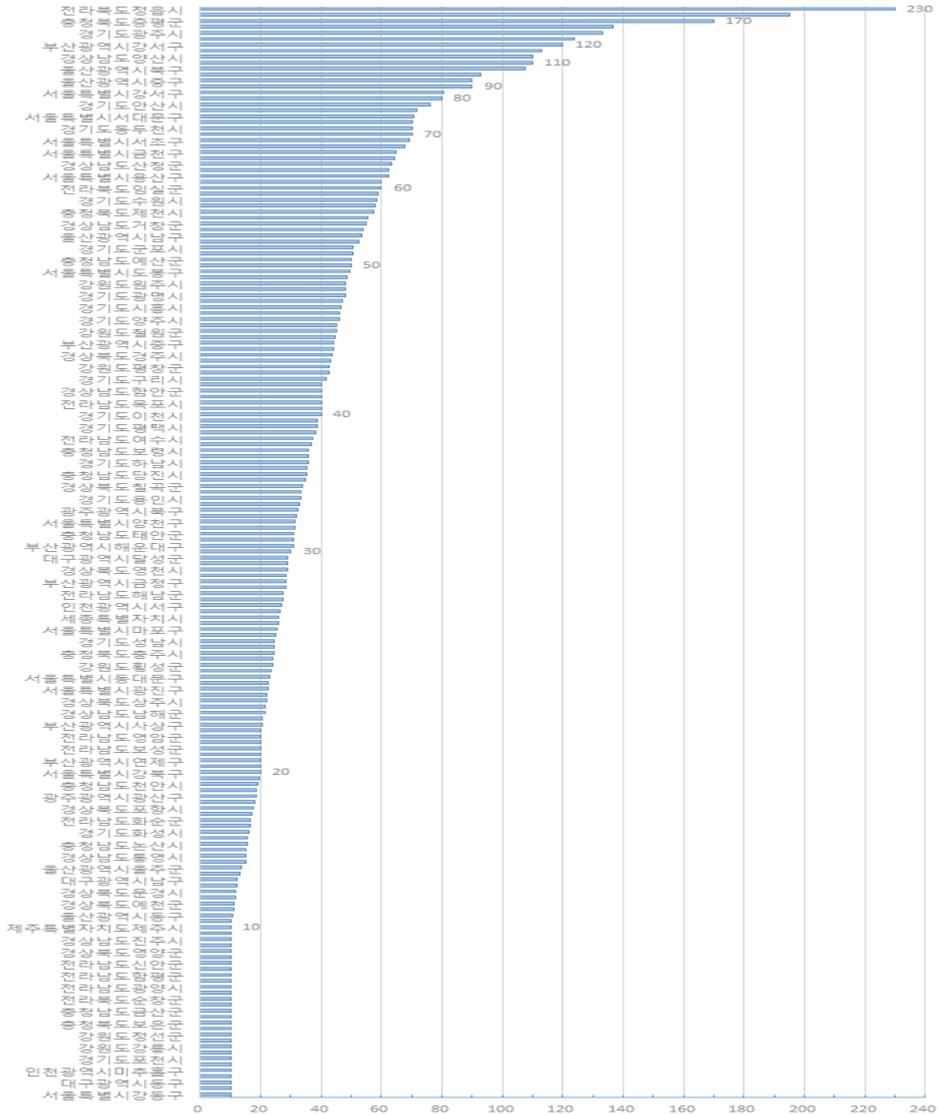
(단위: 개, %)

건당 환수결정금액	시군구 수	비중
10만원	29	15.9
~20만원 이하	33	18.0
~30만원이하	30	16.4
~50만원 이하	49	26.8
~70만원 이하	23	12.6
70만원 초과	19	10.4
계	183	100

자료: 보건복지부(내부자료). 연도별 시군구별 아동수당 환수 내역.

[그림 4-1] 2021년 시군구별 해외장기체류 관련 건당 환수결정액

(단위: 만원)



자료: 보건복지부(내부자료), 연도별 시군구별 아동수당 환수 내역.

한편, 시군구별로 처리해야 하는 해외장기체류아동에 대한 환수건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많게는 236건에서 작게는 1건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환수현황 자료를 통해 해외장기체류에 대한 환수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시군구의 성격

이나 규모(도시 vs. 농촌), 환수결정건수 또는 환수결정금액과 미환수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표 4-3〉 2021년 시군구별 해외장기체류 환수결정건수 분포

(단위: 개, %)

분위수	환수결정건수 구간
25%	1~3건 미만
50%	~9건 미만
75%	~27건 미만
90%	~59건 미만
95%	~71건 미만
99%	~235건 미만

자료: 보건복지부(내부자료). 연도별 시군구별 아동수당 환수 내역.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로서 해외장기체류와 관련한 환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수율 제고에 앞서 해외장기체류아동에 대한 과오지급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현행의 장기해외체류 관련 환수 절차를 살펴보면, 출입국 관련 90일 이상 해외체류 의심자가 발생하면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변동사항을 알려주게 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변동알림 미확인(미처리)시에 급여가 미생성되지만, 확인처리 후 급여정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당월말 추가 급여 및 익월 급여가 생성되는 구조이다. 즉, 변동사항이 통보되더라도 급여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변동알림 확인 후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이 국외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적기에 지급 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sup>5)</sup> 해외체류 90일 경과 시 지자체 공무원이 적기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시스템상 변동알림 확인 지연에 따른 환수 이외에도 복수 국적 아동이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자임을 신고하지 않아 해외여권정보가 누락된 상태에서 해당 아동이 출입국 시 등록되지 않은 국외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본

5) 보건복지부는 변동알림 확인 지연으로 인한 환수 이외에도 복수 국적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신청시 복수국적자임을 신고하지 않아 국외여권정보가 누락되어 사후에 90일 이상 해외체류가 확인된 경우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복수국적자의 국내외 여권등록 의무화, 행복e음상 국외여권 등록 및 해외체류 확인 기능 추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외여권 출입국시에도 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하여 관리 중이라고 설명함.

연구에서는 전국 지자체 아동수당지급 및 사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외장기체류와 관련한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사후관리 절차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 2.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 가. 조사 개요 및 해외장기체류 환수결정 관련 기본 현황

본 연구에서는 조사전문업체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22년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15일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아동수당 지급 및 환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전수 리스트를 이용한 웹조사(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사용하였고 조사된 표본크기는 총 6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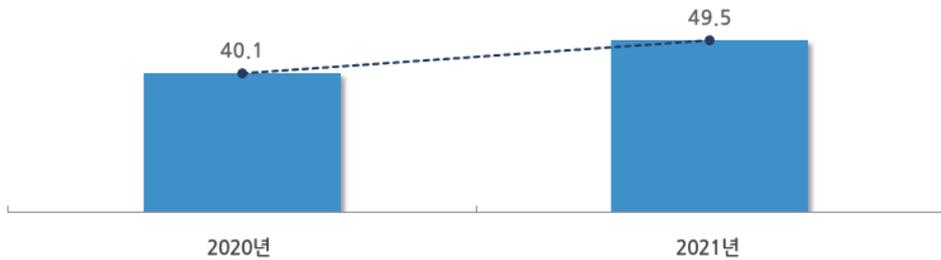
〈표 4-4〉 응답자 분포표

		(단위 :명, %)	
		사례수 (명)	%
▣ 전체 ▣		(60)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10
	부산광역시	(6)	10
	대구광역시	(1)	1.7
	인천광역시	(3)	5
	대전광역시	(1)	1.7
	울산광역시	(1)	1.7
	경기도	(11)	18.3
	강원도	(3)	5
	충청북도	(2)	3.3
	충청남도	(4)	6.7
	전라북도	(3)	5
	전라남도	(6)	10
	경상북도	(6)	10
	경상남도	(5)	8.3
	제주특별자치도	(2)	3.3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10
	기초자치단체	(54)	90

자료: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2020년과 2021년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결정 건에 대한 환수율을 조사한 결과, 앞의 전수 분석 결과와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50%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해외장기체류(90일 이상) 아동에 대한 과오지급 환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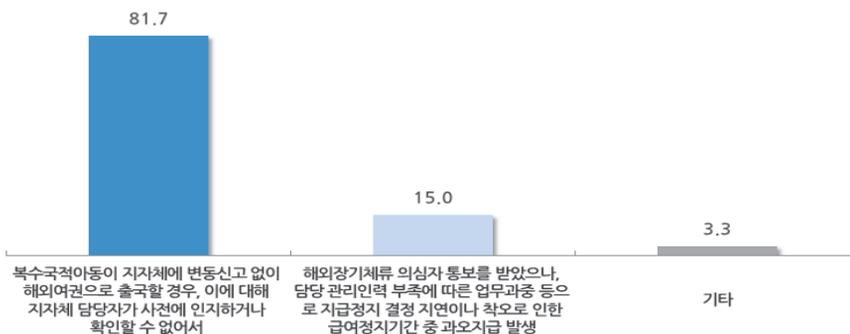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결정 대상 아동 중, 복수국적 아동의 해외여권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본 결과, 36.7%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여권 사용비율을 물어본 결과, 2020년 52.3%와 2021년 49.8%로 나타났다. 응답자 표본이 작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동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해외장기체류에 따른 환수결정 대상의 상당수가 해외여권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모든 응답 공무원에게 해외장기체류아동에 대한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이유, 즉, 환수결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복수국적아동이 지자체에 변동신고 없이 해외여권으로 출국할 경우,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서'가 81.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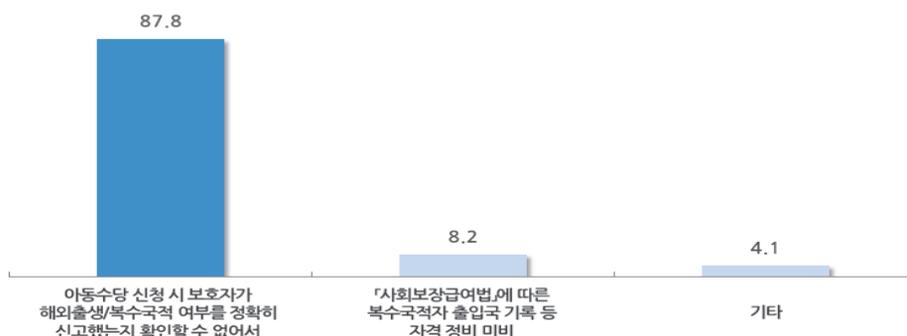
[그림 4-3] 환수결정이 발생하는 이유



자료: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임.

이에 환수결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아동수당 신청 시 보호자가 해외출생/복수국적 여부를 정확히 신고했는지 알 수 없다고 응답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다시 물어본 결과, ‘아동수당 신청 시 보호자가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 여부를 정확히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가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 복수국적 아동이 해외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자료: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임.

주어진 보기 이외 확인이 어려운 사유에 대한 오픈값 응답을 보면, 대체로 현행 시스템에서는 보호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복수국적 아동이 해외여권으로 출입국 시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표 4-5〉 복수국적 아동의 해외여권 사용 출입국 정보 인지/확인이 어려운 이유

No	내 용
1	증빙 자료 부족
2	행정정보에서 출입국 현황 조회 불가
3	연락 두절
4	출입국 내역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여 출입국내역서를 따로 전달 받아 처리 가능함. 민원인이 제출 안하면 알 수 가 없음.
5	통보 지연 또는 해외여권번호 확인 불가
6	정확한 상세내역은 출입국증명서로 확인하는데 보통 해당음면에 본인에게 증명서 첨부 해달라고 한다
7	본인이 신고하지 않을경우 확인이 어려움
8	행복e음 시스템 변동처리현황 미생성
9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확인 불가
10	국내여권 미 사용 시 전산에서 확인 불가(해외여권으로 출입국)
11	형제,자매가 있을경우 급여대상자이기때문에 유추 할수 있다. 급여대상자가 혼자인 경우 보호자의 경우 출입국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할수는 있으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므로 무의미함
12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상 알 수 없음
13	복수국적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변동사후(출입국내역)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복수국적자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 다른 자녀가 출생하여 신규복수국적자 등록 시,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아동수당 지급담당자가 복수국적자 아동의 장기체류여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14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는 전산 권한이 없습니다.
15	해외여권 미제출, 출입국 조회불가, 아동보호자 연락불가 등
16	해외여권으로 출입국할 경우 변동처리현황에서 알수 없어서 조회 불가
17	최초 신청 시 해외여권 및 임시여권(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한국여권)으로 입국하였으나 미제출 시 확인불가. 또는 최초신청시 한국국적만 있다가 추후 복수국적 취득한 경우 미신고하여 여권 미제출하는 경우 확인불가
18	시스템지원미비
19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조회 방법이 없다
2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되지 않은 상황은 자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움, 해당 대상자 담당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상황임
21	외국여권 미등록 시 현 사회보장시스템으로는 조회불가함.
22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및 행복e음 시스템은 한국 국적 여권만 조회가 가능함. 이에 출입국 기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복수 여권 사용자라고 추측만 함.
23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4	복수여권 여부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미리 알 수 없고, 추후 재입국시 확인
25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시스템으로 확인 불가함

No	내 용
26	보호자 미신고 및 전산처리 미적용
27	해외여권을 사용한것은 출입국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으며 보호자의 유선통화로 인해 인식할수밖에 없는것이며, 해외출입국자들은 해외체류증인경우가 많아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그마저 확인불가함.
28	행복e음 변동알림이 뜨지 않았다
29	프로그램 연계 x
30	신청시 이중국적 여부 등 정확한 정보 기재되지 않아 여권정보가 등록 누락이 많음
31	확인불가
32	해외 여권 사용의 경우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림에 뜨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
33	대상자가 해외출국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알림에서 조회되지 않음.
34	해외여권으로 출국여부를 알 수 없음
35	시스템상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입국 시에는 거주 읍면동사무소에 입국증빙을 통해 지급 재개를 요청하나 출국시에는 해당 부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제외하고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음.

자료: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임.

이상의 설문결과에서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서는 복수국적아동의 해외여권사용 출입국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설문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 복수국적 아동이 지자체에 변동신고 없이 해외여권으로 출국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확인 불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한 정보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며, 보호자 신고의무 이행 도모를 위한 제도개선, 복수국적 아동에 대한 현황조회, 출입국 알림 기능 및 해외여권 출국 아동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표 4-6>은 각 문제점에 대한 담당자들의 개선 의견을 정리해서 보여준다.

〈표 4-6〉 복수국적아동이 지자체에 변동신고 없이 해외여권으로 출국할 경우,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No	내 용
1	보호자의 복수국적 아동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부족 예상
2	해외여권으로도 시스템에서 확인할수 있으면 누락자발생이 없을것 같음. 해외여권으로 시스템 확인이 어려우므로 복수국적아동의 보호가 출입국 변동사항이라도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함.
3	시스템 신청단계에서, 복수국적자는 저절로 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조회만 되어도, 복수국적자의 여권을 추가 징구할 수 있기 때문.
4	나라시스템이 당연히 연동되었거니 라고 생각하여.. 내야되는지 인지하지 못함(안내면 수당안나간다고 협박?해야 겨우냄..) 동주민센터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몰라서 달라고 안하거나 받아도 여권발에 입력안함. 동도 업무가 바쁜데 여러가지 출산서비스를 안내하면서, 소수(복수국적자)를 위해 모든 민원인들에게 일일이 고지하고 확인하기 어려움.
5	복수국적아동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6	정보의 불확실성
7	우선은 지자체에서 복수국적 및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국내여권, 국외여권 등을 다 받아 놓고 해외 입국하는 아동이 전체 아동수에는 적지만 홍보나 포스터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경우 보편적 복지인 만큼 복수국적자나 해외출생으로 해외에 장기간 가는 아동들도 이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	온라인 신청아동의 복수국적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신청인이 체크하지 않으면 복수국적여권 등록을 할 수 없어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등록여부가 가려지는 실정임. 따라서 복수국적아동은 온라인 신청시 복수국적여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나 편리하게 여권을 등록할수 있는 팝업등을 제공하였으면 함.
9	서귀포 지역의 아동수당 대상자가 약1만명이 되는데 한사람 한사람 검색할수가 없음. 연령도래자의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중지처리가 됨. 해외장기체류자 또한 자동으로 정지처리가 될수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하는데, 시군구 담당자에게만 환수를 받으라하는건 너무 가혹함.
10	복수국적인 아동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면 확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11	출입국 기록 통보가 해외여권으로 나간 경우에도 통보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여권과 해외여권 사이에 주민등록이라는 매개체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연동될 필요성이 있음
12	메뉴("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변동사후변동집계현황인적변동")상 조회할 수 있는 대상자는 (1)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주민등록번호 부여) (2)사전에 해외여권 등록 아동 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어도 해외여권번호가 없어 아동의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공문회신을 많이 받았습니 다. 복수국적인 아동에 대한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필요 합니다.
13	보통 아동수당 담당자는 아동수만 업무만 담당하지 않고 있다. 조사팀이 아님이상 아동수당은 업무 부분에 있어서 미비하기 때문에 해당 상부 부서가의 관리팀이 있다면 주기를 정해서 내려보냈으면 한다.
14	복수국적아동 행복이음 변동집계현황에서 자동 조회 되도록 개선
15	아동수당 신청시 해당 아동이 복수국적인지 여부를 시스템에서 필터링할 수 있도록 구축

No	내 용
16	여권정보 없이 아동명, 주민번호 정보만 가지고도 출입국 조회가 가능했으면 좋겠음.
17	복수국적 아동의 해외 여권 사용시에도 전출입기록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함과 동시에 변동 알림에도 뜬다면 국내여권으로 출입국하는 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18	현재는 신청 단계에서 복수국적아동에 대해 여권정비를 잘하고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최초 신청시에 한꺼번에 대량의 접수를 받았을 때의 대상자들이 정비가 많이 안되어있다.
19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외여권으로 출국한 아동을 시스템으로 통보
20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기초한 전수조사 및 아동수당 담당인력 확충(아동수당 관리 및 환수 등)
21	복수국적 아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아동수당 담당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현재 상황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 담당 주무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주무관 한에서 가능합니다. 요청할 경우, 대부분 1주일 이상이 소요되며,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2	해외여권으로도 출입국통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발, 아동수당 대상자는 해외출입국당시 무조건 아동보호자에게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자동 안내문자발송 등 필요, 기본적으로 해외출입국이 되면 통보와서 시스템에 담당자가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자동으로 정지 재책정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함. 만약 자치구안에 하나의 읍면동 대상자에 해외출입국아동이 그리 많진 않는데다더라도 그 한아동이 출입국을 한달사이로 반복한다면, 담당자의 업무인력 소모 및 해외출입국아동의 수보다는 많은 출입국횟수에 따른 업무가중이 있기때문에 자동 재책정 및 중지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23	복수국적아동일 경우 한국여권으로 출입국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4	급여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해당내용을 크게 명시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해외출국 90일 초과시 급여정지되며 복수국적 취득시 반드시 신고하고 반드시 복수국적 서류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 행복e음으로 통보되는 내역 중 부모 또는 형제가 출입국 시(동반 출국이 맞으므로) 출국의 심아동으로 변동사후에 확인할 수있게 조치. 복수국적인 경우 해외여권으로 출국 시 출입국사무소에서 알림이 울수 있도록해야함하며 임시여권도 국내여권이므로 지자체 담당자가 미등록하여도 통보될 수 있어야 함.
25	희망이음에서 복수국적아동의 입출국을 확인하여 알람으로 떠야 함
26	외국여권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7	해외여권으로 출국해도 시스템 상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28	복수국적 아동에 대하여 여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국내여권, 해외여권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음
29	신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출입국정보시스템에서 자동 체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0	사회복지시스템상 조회 가능하도록 타 행정정보와 연계해야함
31	복수국적아동이 입국시 입국 관련 기관 등에서 안내 필요, 또는 환수 절차 강화 및 환수제도 과태료(법적으로 환수가능한) 절차 필요,,
32	출입국사무소 출입국기록내역과 행복이음 시스템 연계 필요하다고생각함
33	해외 여권으로 출입국 시에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비 필요
34	부모가 내국인인 아동수당 수급가능 연령의 자녀에 대해서는 해외여권으로 출입국을 해도 확인이 되거나 알림이 떠서 지자체에서도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은 아동수당 수급 아동은 연령이 낮아 혼자 출입국을 하기 어려워 거의 부모와 함께 출입국을 할 거 같다.

No	내 용
35	의무화 필요(미신고 시 법적 제재)
36	읍면동에서 최대한 안내를 하는 방법
37	출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아동수당수급자에 대한 출국 즉시 지자체 통보 시스템 구축
38	복수국적아동의 환수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1번이상 해외체류로 급여정지되는 이력이 있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문자발송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39	신규 신청 시 복수국적에 대한 안내 철저
40	해외여권 출국자도 출입국 기록을 행복이음시스템으로반영될수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개선. 안된다면 해외여권출국시 출입국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함이 의무임을 안내. 추후 소명시에도 민원인의 출입국증명서를 통한것이 아닌 지자체 직권으로 행정정보공공동이용을 바로 이용하여 조회후 급여 정지, 재책정할수 있는 권한 부여
41	출생신고 시 복수국적아동이라면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어야 할 듯
42	복수국적 미등록시 해외체류할 때에는 아동수당 미지급을 의무화 해야하며 민원인에게는 출생신고 및 아동수당 신청시 위의 사항을 반드시 안내, 동의서 작성 및 확인서 받아야함
43	신청시 여권 미제출시 신청 접수 불가하다면 신청시 모든 정보가 등록될 수 있을 것 같음. 신청시 필수로 제출하게 해야함.
44	시스템 개선 또는 해당 아동에 대한 자료를 한달에 한번씩 업데이트
45	적자에 대한 시스템 관리 체계를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그것이 안 될 경우 고의적으로 미신고하여 수급한 대상자에 대하여 환수뿐만이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제재 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자료: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임.

그 외 해외장기체류 의심자 통보를 받았으나, 담당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과중 등으로 지급정지 결정 지연이나 착오로 인한 과오지급 발생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동으로 급여가 정지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표 4-7〉 해외장기체류 의심자 통보를 받았으나, 담당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과중 등으로 지급정지 결정 지연이나 착오로 인한 급여정지기간(국외체류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중 과오지급 발생 문제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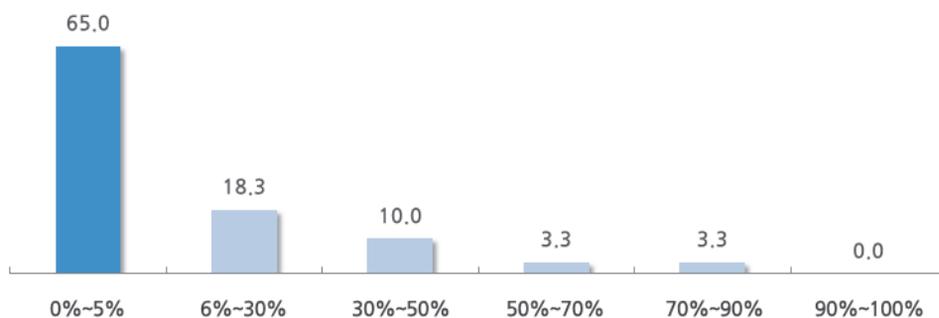
No	내 용
1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급여정지가 되면 편리할 것 같음
2	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해야함
3	인력 충원
4	해외장기체류로 급여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기급여 예상액 및 지급액 생성 시 담당자가 별도로 급여 정지 처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생성 되도록 개선
5	의심자 통보가 아닌 확인자 통보가 되면 정확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No	내 용
6	지급정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림이 왔으면 좋겠고 자세한 메뉴얼도 있었으면 좋겠다.
7	* 문제점 : 현재는 변동알림을 통해 90일 넘은 아동에 대해 일일이 지급정지, 개시를 변경해야하는데 알림이 뜨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며, 알림이 뜨더라도 담당자 1인이 처리함으로 종종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개선방안 : 출입국 변동 발생 시 90일이 되면 (연령도래로 자동으로 지급제외 되는 것처럼) 자동으로 지급제외시키는 시스템으로 변경. 그 이외에 출입국 가능성이 있는데 해외여권 사용 등으로 뜨지 않는 대상자면 변동 알림에 뜨는 경로 처리하면 누락되는 대상자가 줄 것으로 예상됨.

자료: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임.

한편, 현행 규정 상 해외장기체류에 대한 아동수당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고 의무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해외장기체류와 관련하여 수급아동 보호자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실제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아동 수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본 결과, 65.0%가 ‘신고율이 5% 미만으로 극히 낮다(0~5% 미만)’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4-5] 해외 장기체류 아동 수 대비 관련 신고 비율(2020~2021년)



자료: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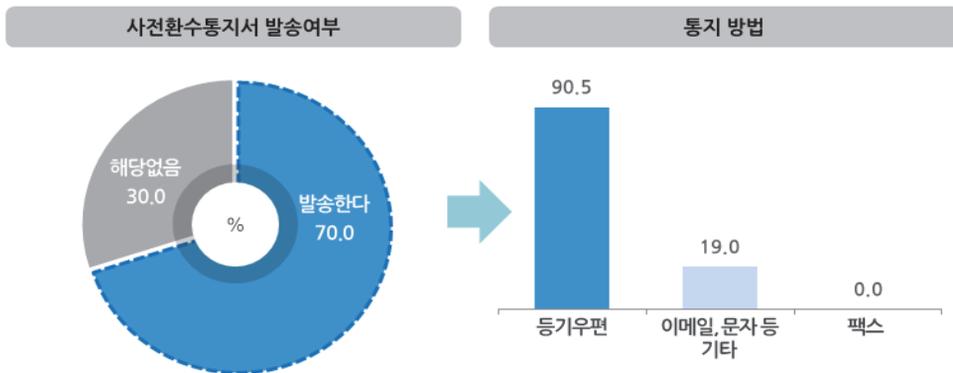
보호자들이 해외장기체류 변동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2개까지 복수응답),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가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보호자가 몰라서’도 68.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신고 관련 정보의 부족이나 신고절차 상의 불편 등은 각각 8.3%와 3.3%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관련해서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

외장기체류 변동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으로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2개까지 복수응답),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요건 강화'가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신고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변동 신고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35%, '아동수당 수급 조건으로 보호자 교육 이수를 지침이나 법령에 명시하는 등의 수급조건 강화'가 23.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해외여권 출입국 아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를 인지하고 환수결정을 내리게 되는 지 그 인지경로에 대해 모든 응답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아동수당 이외 기타 급여제도 등의 신청/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다가 업무담당자가 인지'가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감사/조사과정에서 확인 되는 등 외부에서 인지'되는 경우도 3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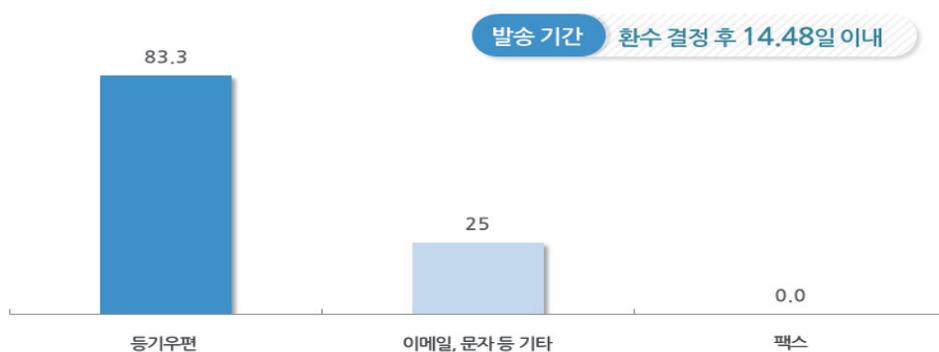
다음으로 환수결정 및 환수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지방식과 실비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아동수당 환수결정 후 사전환수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70%에 해당하였고, 이는 환수 결정 후 평균 10.24일 이내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환수통지서 통지 방법으로는 '등기우편'이 9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메일, 문자 등 기타'가 19%로 나타났다. 사전환수통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행정비용(등기비용 및 업무시간 환산)은 건당 평균 6434.29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6] 사전환수통지서 발송여부 및 통지방법



그리고 환수통지서 발송기간과 통지 방법 및 비용에 대한 설문 결과, 환수 결정 후 평균 14.48일 이내에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수통지서 통지방법으로는 ‘등기우편’이 83.3%로 가장 많았다. 환수통지서는 환수 결정 건 당 평균 1.17회 발송하며,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건 당 평균 7293.67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7] 환수통지서 발송기간 및 통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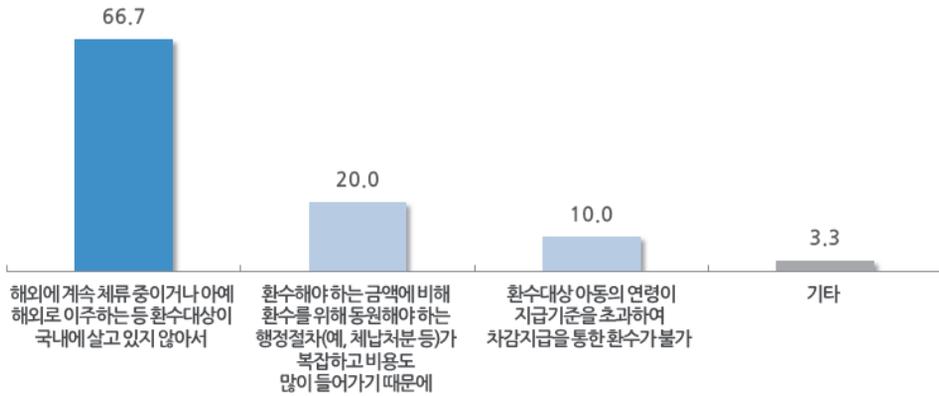


자료: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임.

공시송달공고는 통지서 반송 확인 후 평균 15.7일 이내에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수 결정 건당 평균 0.73회 발송하며,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건 당 평균 7194.67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설문결과를 종합해서 해외장기체류에 대한 환수결정 1건당 환수절차 개시와 관련된 직접 행정비용을 산출해 보면, 건당 평균 18,289.7원<sup>6)</sup>으로 2021년 기준 평균 환수결정액 338,874원의 5.4%에 해당한다. 한편, 40%대의 낮은 환수율, 환수 결정 건당 평균 0.73회 공시송달공고가 집행되는 등 실제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해외에 계속 체류 중이거나 아예 해외로 이주하는 등 환수대상이 국내에 살고 있지 않아서’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환수해야 하는 금액에 비해 환수를 위해 동원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20%)’, ‘환수대상 아동 연령이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차감지급을 통한 환수불가(10%)’, ‘기타(3.3%)’ 순으로 나타났다.

6) 사전환수결정통지(4504=0.7\*1\*6434.29)+환수결정통지(8533.59=1\*1.17\*7293.67)+공시송달공고(5252.1=0.73\*7194.67)

[그림 4-8] 실제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자료: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임.

## 나. 과오지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는 해외장기체류에 따른 아동수당 과오지급을 방지하고 환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련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먼저 보호자가 아동수당 신청 시, 아동의 복수국적 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 정보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본 결과 93.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 개선안으로 일정시간의 부모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자의 변동신고 등의 무사항과 절차 및 방법의 이해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3%정도만이 찬성하였다. 세 번째 개선안으로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 시 선제적으로 아동수당을 일시 지급정지하고,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시 아동수당 최종 지급정지를 결정하는 한편, 추후 입국일 확인 후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75%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네 번째 개선안으로 이번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등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아동수당 급여 “미생성” 및 변동알림을 보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수당 급여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추후 입국이 확인된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재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가 찬성하였다. 다섯 번째 개선안으로 불성실 신고, 신고의무불이행 또는 환수대상자 명단을 1년간 공표하는 것과 같이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

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어본 결과 70%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기타 아동수당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소급가능 신청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민원이 많은 현실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현재도 복지로 온라인 및 모바일 앱, 원스톱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주소지 불문 전국 읍면동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아 대상 14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정보 제공 등 충분히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소급지급 가능한 기간(60일 이내)을 민원인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강화 필요’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아동수당에 대한 국외체류기간 급여정지 기준 강화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본 결과, 급여정지 사유 발생 시 시스템상 자동으로 급여가 정지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전제로 영유아기 복지지원제도 신설 등을 고려했을 때,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하여 부정적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급여정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응답자의 70%가 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신청/지급, 사후관리 및 환수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조사한 결과, 크게 1) 시스템 정비 및 개선 2) 사후관리 규정 개선 및 제재조치 강화 3) 인력구조 개선 및 제도 홍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시스템 정비와 개선이 요구되었는데, 특히 해외출국아동에 대해 시스템 상 자동 급여 미생성 기능 등의 개선과 복수국적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복수국적자 시스템과 연계되는 등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행 행복e음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다.

〈표 4-8〉 ① 시스템 정비 및 개선 필요(시스템상 자동정지 및 급여 미생성 기능 필요, 시스템상 조회 기능 개선 필요, 시스템 오류개선 등)

No	내 용
1	시스템 관련하여 자동 정지되거나, 시스템 상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시스템 정비 시급
3	신속한 행복e음 정상화 요망
4	해외출국아동 등은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급여가 미생성되는 기능이 생기면, 환수할 필요가 없이 담당자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5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시스템에서 자동 중지 처리되는 방식이 조속히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o	내 용
6	차세대 행복이음 전환 후 아동수당 책정, 정지, 현물-현금 변경 등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오류들이 향후 환수 및 소급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것인데..... 지금도 시스템 오류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시군구 담당자들이 앞으로도 시스템 오류로 이어진 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받을게 눈에 확합니다. 부디,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있을 문제들을 시도, 시군구에만 전가하지 말고, 복지부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책정하지 못하고, 정지처리해도 급여가 생성되지 않고, 관리행정등을 변경해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에서 모든 시군구 담당자들이 아동수당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서, 22.8월말부터 향후 시스템이 정상화 될 때까지 나온 환수 및 소급 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7	환수건은 해외체류자, 복수국적자 등 해당 대상자도 인식을 못하고 있을뿐더러, 담당자도 환수에 대한 많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스템에서 이러한 상황을 거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해외장기체류 대상자의 경우 자동으로 급여 미생성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9	아동수당 신청시 복수국적임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알 수 없음. 신고하지 않더라도 복수국적자임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음.
10	임시 주민번호로 발급 받은 임시여권의 경우, 출입국 기록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임시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11	몇 만명 아동수당 지급보다 해외출입국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립니다. 시스템에서 자동 정지가 될 수 있고, 바로 담당 주무관이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	차감상계 등록 시 자동 차감해주시고 전출 가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13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시 보건복지부로 바로 통보되어 장기 체류자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정지가 되면 좋겠다
14	외국여권, 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여권 모두 시스템 상 자동 조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여권(뒤번호0000000)는 시스템 조회도 되지 않고 민원인들이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5	복수국적자 해외여권으로 나갈 때에도 시스템 상 출국으로 떴으면 좋겠다.
16	해외 여권으로 출입국 시 담당자가 인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17	실제 지자체에서는 아동수당 담당자가 아동수당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 과중이 크다. 최대한 사전에 전산 상으로 걸려져 과지급 되는 부분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접목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8	해외출국자의 경우 민원인 신고 안됨, 시스템연계 안됨의 문제를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잘못이 없음에도 민원인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여권정보 등록을 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영할 수 없는 문제를 왜 공무원이 책임지고 사과하며 환수해야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 시스템 및 제도가 개선되어야할것 같습니다.
19	아동의 해외 출국시, 출국장에서 지자체에 즉시 통보 시스템 구축 필요
20	아동수당 도입 초기 해외 거주중인 아동에게 지급된 아동수당과 행복e음에서 출입국 변동사항이 걸리지 않아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등은 환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화해도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해외에 있어서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다른 친척들이 대신 납부해주기도 하는데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2018년, 2019년에 잘못 나간 수당을 2021년 말에 대뜸 공문 보내서 대대적으로 거두어들이라고 한 것도 좀 그렇구요.....
21	아동수당 90일 이상 해외체류 할 시에 선제적으로 지급정지를 시키고 추후 입국할 경우 자동으로 지급개시를 시키고 입국정보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뜨도록 조치하면 좋을 것 같음.

No	내 용
22	부정수급 대부분이 해외출입국 아동 불성실 신고 및 시스템 오류로 인한 누락에서 발생하고 있음. 한명의 담당자가 수백 수천명의 해당 관리대상자를 매번 매달 하나하나 관리할 수 없음.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정지-재개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3	환수업무가 실제로 민원이 많고 납부가 잘 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환수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의 환수금은 대부분 입국한 후 재책정 급여지급 과정에서 차감상계환수가 되고 있음. 아동수당 지급 건수 대비 환수 발생 건수를 보면 극히 작은 건수이기 때문에 환수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임. 사전에 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관리 방법 개선이 필요해 보임.
25	법무부와 꼭 협력하여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6	대부분의 환수건은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자 등록 누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누락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법무부 출입국 정보 등을 활용한 처리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아동수당 부정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임.

다음으로 시급한 개선과제로 확인된 사항은 환수관련 절차 및 규정의 정비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의 필요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히 해외체류 90일 이상인 경우 지급 정지 규정을 출국 즉시 지급정지로 바꾸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환수관련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가산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9〉 ② 규정개선 및 제재조치 강화(환수절차방식 규정 필요, 90일 이상을 즉시 정지로 수정, 제재 조치 필요 등)

No	내 용
1	환수대상자가 해외체류중일 경우 안내하고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체류 중일 경우 환수절차방식 규정이 필요함.
2	해외체류 아동의 90일 이상 규정을 해외 출국 시 즉시 정지로 고쳤으면 합니다. 만약 지급 후 그 달에 다시 입국을 한다면 해당 월부터 지급하면 될 것이고, 익월에 입국한다면 익월부터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체류 90일이라는 규정으로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거주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 치의 아동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외출입국을 반복하는 아동 중 출국이후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이 아닌 입국한 다음달부터 급여를 정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	해외출국 후 90일 동안은 지급하고 입국 후 입국한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등 이런 규정을 삭제하고 해외출국과 동시에 중지처리해야 하고 입국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 계속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 지급해야 함 한두달사이에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아동수당 과오지급이 발생하며 행정력 낭비가 심함 특히 감사를 받게 될경우 해외거주하는 아동에 대해 어떻게 환수를 받으라는 건지 이에 대한 감사결과처리 방안도 개선되어야 함
5	해외체류자에 대한 환수는 사전통지 생략
6	환수시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환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응에 맞는 제도 필요

No	내 용
7	아동수당 환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환수에 대한 보호자의 반발(지자체가 잘 못했는데 왜 돈을 내야하냐?)이 심한 경우가 있다고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인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환수 결정이 쉽지 않다.
8	강제성이 부족함
9	환수통지하면 민원이 너무 쎄서 안내하는 것에 부담이 큼. 다른 과태료나 세금납부처럼 바로 고지서를 보내면 민원인이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으면 좋겠음. 환수금이 몇백 몇천이어도 연체료도 없으니 민원인은 납부 안하면 끝임.
10	해외체류 아동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아동수당 환수 시, 현행 환수방법으로는 즉각적인 환수가 거의 불가능함. 대다수의 아동이 조부모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장기 체류중인 것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조부모가 소액씩 납부하는 실정임. 해당 아동이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는 것에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음

자료: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임.

마지막으로 해외장기체류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정지 규정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식이 낮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량 증가의 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며, 담당 인력 구조 개선과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10〉 ③ 인력구조 개선 및 업무조정, 제도에 대한 홍보(민원에 따른 인력구조개선 및 업무조정, 업무 매뉴얼 개선,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홍보 필요 등)

No	내 용
1	해외 장기 체류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정지에 대한 홍보 필요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일정기간 이상 해외 체류하고 있다고 해서 아동수당 지급 정지 되는 건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
2	인력개선
3	지자체마다 한 부서에 책정, 신청/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당관련 업무들은 한 부서에서 모두 처리하고 기존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4	보통 아동수당 사후관리 및 변동사후에 대해서는 시군구 아동수당담당자가 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담당자가 아동수당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아동에 비해 1인 담당자가 안고 있는 업무 부담이 크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환수절차를 진행하는데 업무부담이 큰 실정임.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읍면동 및 시군구간 업무분담, 업무담당자 충원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장기해외체류아동에 대한 급여정지 및 환수에 대한 민원이 매우 강합니다. 민원인분들이 한국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부모님의 업무상 또는 교육상의 목적을 위해 해외체류하고 있는데 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지자체 담당자들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아동수당 급여 환수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 발생
7	출국시 지급 정지 등 정확한 정보 안내 필요함

자료: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조사(‘22.12)」 결과임.

이상과 같이 지자체 아동수당 지급 및 환수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장기체류에 대한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복수국적아동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관련 환수결정 사례를 보면 많은 경우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 아동 정보 등록이 누락되더라도 그 보호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행 시스템 상 담당자가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 또한 환수대상 아동이 해외에 체류 중 이거나 국내에 없는 등 복수국적아동과 관련되어 있고, 지자체의 환수고지에 대해 협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 현행 제도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관련 시스템 정비와 개선은 관계 규정 및 제도의 보완을 우선 요구하므로, 이하에서는 현행 아동수당 관련 법규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부정적 수급 유형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과 문제점 및 한계를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제2절 법제분석

이를 위하여 우선, 「아동수당법」을 중심으로 하여 해외장기체류를 원인으로 하는 부정수급과 이에 대한 지급관리 및 사후관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복지급여제도, 특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등 제도간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의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제도적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중심 테마인 아동수당제도와 유사한 복지급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해외장기체류로 수급자격을 일시 상실한 수급자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 1. 아동수당법의 변천과정

아동수당법은 2018년 제정되어 불과 4년동안 5차례 개정되었다. 아동수당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아동수당제도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제도의 설계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제도가 지향하는 철학에 입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아동수당제도 또한 초기의 선별적 급여방식에서 보편적 급여방식으로 변모해 왔으며, 급여방식의 변화에 따라 절차 등이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 가. 2018년 아동수당법 제정 당시

아동수당법 제정 당시인 2018년 법률은 다음과 같은 구성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표 4-11〉 아동수당법(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의 구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등)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신청)
제7조(조사·질문 등)
제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제15조(신고)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제19조(이의신청)
제20조(시효)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24조(벌칙)
제25조(양벌규정)
제26조(과태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 2018.9.1. 시행)

## 나. 2019년 개정 아동수당법의 내용

2019년 4월 1일자로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아동수당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6세 미만의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정취지에 따라 제4조의 제목이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에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으로 바뀌고, 수급아동의 연령을 “6세”에서 “7세”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를 삭제하고 이를 “매월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두었던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에 관한 규정인 제6조제2항, 소득, 재산 관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제7조제1항, 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에 관한 제8조, 소득변동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던 제15조제1항제3호 등을 삭제하였다.

요약하면, 2019년 개정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이 선별적 급여였기 때문에 두었던 경제적 수준(소득, 재산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정비함으로써 아동수당의 보편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다. 2022년 1월 개정 아동수당법의 내용

2022년 1월 개정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지급대상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2년 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은 현금 지급 원칙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이용권 지급방식을 추가한 것이었다.

## 라. 2022년 4월 개정 아동수당법의 내용

2022년 4월 개정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었다. 2018년 제정 당시의 아동수당법에서 세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달라진 현행 아동수당법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2〉 아동수당법 구성 및 내용의 변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등)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신청)  제7조(조사·질문 등) 제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제15조(신고)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제19조(이의신청) 제20조(시효)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24조(벌칙)  제25조(양벌규정) 제26조(과태료)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등) ②~④ 삭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신청) ② 삭제 제7조(조사·질문 등) 제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삭제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제15조(신고) ① 3. 삭제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제19조(이의신청) 제20조(시효)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24조(벌칙) 1. 삭제 제25조(양벌규정) 삭제 제26조(과태료)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 2018.9.1. 시행) 및 (법률 제18579호, 2021. 12. 14., 일부개정, 2022.4.1. 시행)

이렇게 아동수당의 법적 성격이 보편적 급여로 변화되면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보편적 급여로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절차는 아주 단순화되어야 함이 논리적 귀결일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는 것이 아동수당의 지급정지에 관한 제13조와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제14조의 규정이다.

## 2. 아동수당의 지급정지등과 환수의 문제

### 가. 아동수당의 지급정지와 수급자격의 상실 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하며, 아동수당 수급권자인 아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권자인 아동을 대리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고, 이 때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아동수당은 수급권자인 아동의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실종의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와 행정적으로 수급아동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사정인 주민등록에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수급권자인 아동의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급부하고자 하는 아동수당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서는 아동수당의 정지 또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수당이 보편적 급여라고 해도, 아동수당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재 또는 수급권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6조에서는 환수의 사유와 환수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아동수당이 오지급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환수할 것인가에 있다.

## 나. 아동수당 오지급에 대한 환수조치의 한계

법 제16조에서는 아동수당이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오지급된 아동수당의 환수 사유를 살펴보면, 우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로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공법상 부당이득의 반환책임에 다름 아니다.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며, 「아동수당법」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정지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는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서 오지급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와 경합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지급정지사유 변경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고의·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형사처벌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사유 중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급아동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기록의 확인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환수조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인 아동의 보호자 등에 대하여 취하여야 하는데 해당 보호자의 해외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국내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고지와 독촉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독촉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금이 소액일 가능성이 높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이 소액의 환수금을 환수하는 것보다 많을 가능성 등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규정의 의미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와 규정을 준용한다는 뜻이며<sup>7)</sup>, 체납처분절차란 압류·매각·청산 등 체납처

7)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3-0515(2013.11.29. 회신)

분의 집행 및 증결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으며(법 제5조), 대금지급 정지(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제7조의2), 체납자의 명단공개(제7조의3), 징수촉탁(제7조의4) 등 강력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체납처분의 경우 독촉(제8조)과 독촉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할 수 있고(제9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제11조의2)와 압류조서의 작성(제13조), 압류재산의 매각과 청산 등(제19조)을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액인 환수금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는 것은 환수금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 3. 타 복지급여제도 규율과의 비교검토

아동수당제도와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본질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등 유사한 사례에서 환수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아동수당의 환수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과 환수제도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양육수당의 지급결정이 없음에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중복 수급에 따라 양육수당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법률에 환수와 관련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고시에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즉, 환수와 같은 조치는

재산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하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이 고시에 그 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과 환수제도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국내거주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빈곤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급여이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정해지며, 일정한 요건 아래 지급이 정지되고 사망하거나 국적 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권이 상실된다(기초연금법 제16조 및 제17조).

기초연금액의 환수에 관한 규정은 제19조와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상계할 수 있고 환수금을 문서로써 납입고지하고, 독촉하며 독촉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아동수당의 환수제도와 동일하다.

#### 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환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급여가 결정되며,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 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고, 개별가구 가운데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보장시설에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등은 개별가구에서 제외된다. 만약 조사가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을 제외하지 않고 개별가구를 산정하여 급여가 결정된다면, 이는 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의 징수 또는 반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비용의 징수 명령 또는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벌칙 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급여와 환수제도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보험급여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중지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제도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보아서 징수하도록 하고(법 제57조),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며,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보장하는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4. 복지급여의 부정수급과 환수제도의 비교, 검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제도 등은 대표적인 복지급여 또는 사회보험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복지급여제도들은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환수제도를 두고 있는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은 법령의 규정이 아니라 고시에서 환수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고,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환수제도는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환수제도와 동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부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의 징수 명령이나 반환명령에 대해서 해당 명령을 위반한 때에 대응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미흡하며, 국민건강보험급여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민사상 관계에 적용되는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장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복지급여의 성격에 따라서 환수제도를 두고 있거나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 제3절 공공재정 환수에 관한 법령과 아동수당의 환수제도와의 관계

#### 1. 공공재정환수법의 법적 성격과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로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사회복지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을 열거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이러한 공공재정의 범위에 속하며, 따라서 공공재정 환수법의 적용대상이다. 다만,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반납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 함으로써 공공재정환수법은 다른 법률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우선 적용을 선언함으로써 이 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확보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에는 부정청구 등 금지,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등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으며, 제재부가금의 징수와 감면, 적용 배제 등 제재부가금제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청구 등에 대하여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의 성격으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유사한 형태의 제재부가금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예를 들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보다 높은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재부가금의 징수기준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강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들의 개정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밖에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명단의 공표, 부정청구 등의 신고, 신고자 보호, 책임의 감면,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이나 단체 내부의 양심있는 고발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 2. 공공재정 환수법과 아동수당 부정청구간의 관계

공공재정환수법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에 따른 조세 부과 및 징수는 각 법률에서 환수 등에 대해 정하고 있음을 존중하여 적용 제외하고 있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도 적용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계약관계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제외하였다(민경선, 2020).

그리고 부정청구의 범주에 관해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의 네가지 경우를 정의하고 있다. 허위청구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데도 공공재정청구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다청구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목적외 사용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그밖에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지급은 앞의 세가지 유형이외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말한다. 부정청구의 유형을 네가지로 구분한 것은 이 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제재부가금의 부과와 징수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즉,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에 해당하면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오지급은 제외된다.

우선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정지기간에 수급한 것은 부정청구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부정청구의 유형 중 과다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물론 과다청구의 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 할 때 비로서 적용될 것이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정지 요건은 수급권자 인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지급정지 요건에 해당하 면서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수당을 계속하여 수령한 경우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정청구의 요건에 적합 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허위청구 또는 과다청구된 아동수당의 환수에는 제재 부가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고 해석된다. 다만, 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 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복지급여 등에 대해서 제재부가금을 적용배제하는 기 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 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적용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 부정청구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부정청구에 제재부가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 제4절 아동수당 오지급 환수관리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 1. 부정청구 요건에 대한 사전고지 철저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이 부당하게 청구되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청구로 인하여 아동수당이 지급정지되는 사유를 사전에 철저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로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수급권자인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동수당 지급결정문 서식에 포함시켜서 수급권자인 아동의 보호자 등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권자인 아동의 장기해외체류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당청구에 해당되어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2. 수급권자인 아동의 출입국사실 신고의무의 신설

수급권자인 아동의 국외장기체류가 아동수당 지급정지 요건에 해당하며, 아동의 출입국 사실의 신고의무를 아동의 보호자가 충실히 이행한다면, 아동수당이 동 체류기간을 넘어서까지 지급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행의 조문체계로는 아동의 상황 변화에 대한 신고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법 제15조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동수당의 입급계좌가 변경된 경우,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수당 지급정지의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면, 수급권자인 아동의 보호자 등은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신고의무를 다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아동의 출입국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아동의 출입국 사실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체류기간의 경과 여부를 아동수당의 지급기관이 판단하여 사전에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조치라 생각된다.

### 3. 제재부가금의 부과 가능성 검토

제재부가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아동수당법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아동수당이 공공재정에 해당됨은 물론 환수제도 가운데 제재부가금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제재부가금이 부당이득의 5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수급권자의 보호자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제재부가금제도의 도입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제5장

###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

제1절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별 기대효과

제2절 제도개선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

제3절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 제 5 장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갈음하여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을 사안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수당 인식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아동수당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분석해본다. 이어서 제2절에서는 제도개선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제도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해외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과외지급을 방지하고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제1절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별 기대효과

#### 1. 아동수당제도 개선 방향

2022년도 실시한 아동수당 인식조사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수당 수급자 200명, 비수급자 800명이 포함된다.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음’은 322명, ‘없음’은 678명이다. 인식조사 결과, 아동수당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2.5%(매우 만족 22.5%, 만족하는 편 60%)이며, 이는 2021년 조사결과(87.3%)와 비교하여 약 4.8% 감소한 수치이다. 감소원인으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확대가 있었으나, 기존에 수급대상이었던 만 6세 아동이 다음연도에 만 7세가 되어서도 수급중단 없이 계속 아동수당을 받게 됨에 따라 제도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이 4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가의 미래 재정 부담에 대한 걱정’이 29.8%, ‘지급 대상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응답이 23.9%이다. 미성년 자녀가 1명, 2명, 3명이 있는 가정에서 모두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이 가장 큰 불만족 이유였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불만족의 응답비율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의 주요 역할을 묻는 조

사에서 역시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계소득 보전)(39.1%)’을 가장 주요한 역할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아동수당에서 ‘수급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월 10만원의 정액<sup>8)</sup>으로 명시된 아동수당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적 소득보전효과가 감소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급금액이 정액인 경우에 그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의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수당제도의 확대방안으로 다음 3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지급 금액인상), 둘째,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지급 연령 확대), 셋째,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아동수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지원) 중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국민은 ‘아동수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지원(44.1%)’을 가장 바람직한 확대방안으로 생각하였고, 전문가는 ‘지급연령 확대(45.8%)’라고 생각하였다.

일반국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수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월 10만원은 기본으로 하고,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고(일반국민 32.3%, 전문가 37.5%),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매우 도움 19.4%, 약간 도움 63.3%) 이상이였다.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차등지원’이 경제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16.9%(1명 자녀)→25.2%(2명 자녀)→50.0%(3명 자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전문가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확대방안은 ‘지급연령 확대’이다. ‘지급연령 확대’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은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40.5%)’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는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50.0%)’이라고 응답하였다. ‘지급연령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12세 미만)’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는 ‘아동복지법<sup>9)</sup>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까지 지급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8)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9)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로 많았다. OECD 국가가 대체로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포괄하고 있으며, 가장 연령대가 낮은 호주, 일본, 라트비아의 경우에도 만 14세로 최소 학령기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연령 확대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연령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초등학교 연령기(12세 미만), 그 다음은 중등교육 연령기(15세 미만, 혹은 18세 미만)으로의 확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최영, 2019; 김나영, 2019; 고제이 외 2019, 이영숙 외, 2020).

마지막으로 '지급금액 인상' 방안이다.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지급금액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일반국민 46.6%, 전문가 50.0%), 다음으로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가 두 번째로 많았다(일반국민 31.9%, 전문가 20.8%).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8세 이상은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가장 적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지급금액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 양육비용의 25%까지 보조(최대 월20만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일반국민 29.3%, 전문가 37.5%). 미성년자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비율이 상이한데,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는 '현재 지급 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를 유지(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것을 선호(29.9%)하는 반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보기 문항에서 최고 높은 금액인 '최대 25%까지 보조'할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아동수당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안과 둘째, 다자녀에 대한 추가지원 방식으로 둘째아 이상에 대해 1인당 수당액을 인상하는 안(둘째아는 매월 5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마지막으로 연령 확대와 다자녀에 대한 추가지원을 동시에 시행하는 안이다<sup>11)</sup>.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표 5-1>과 같이 총 7가지 아동수당제도 확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10) 그러나 본 조사결과는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집단 24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아동수당 수급자는 200명만 할당표집된 조사결과로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모두 지급되는 아동수당 제도를 대표하기에 그 표집수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조사결과와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방식의 개편 및 조사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의원 대표발의, 2022.5.11.) 개정안 참조제4조1항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은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아동이 둘째인 경우에는 매월 5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표 5-1〉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

구분	대상 연령	수당금액(월)
대상연령 확대	시나리오 1	12세 미만
	시나리오 2	15세 미만
	시나리오 3	18세 미만
다자녀 추가지원	시나리오 4	8세 미만
대상연령 확대 & 다자녀 추가지원	시나리오 5	12세 미만
	시나리오 6	15세 미만
	시나리오 7	18세 미만

자료: 저자 작성

## 2.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 가. 분석방법

이하에서는 아동수당제도 개편 기대 효과로서 앞서 제시한 7개 시나리오별 양육부담 및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해 본다. 우선 각 제도 확대 시나리오별 빈곤 완화 효과는 아동양육가구의 빈곤율과 빈곤갭 변화를 기준 지표로 살펴보고,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021년 조사: 2020년 소득 기준)를 활용하였다. 아동양육가구의 빈곤율과 빈곤갭은 아래 〈표 5-2〉와 같이 정의되며, 공표된 2020년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은 2,998만 원(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1a)으로 빈곤선은 1,499만 원으로 설정하였다. 참고로 2020년 기준 0~17세 연령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9.8%이다(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1b).

〈표 5-2〉 빈곤율과 빈곤갭 정의

○ 빈곤율=(균등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아동양육가구** 수/전체 아동양육가구 수)
○ 빈곤갭=((빈곤선-빈곤 아동양육가구의 소득)/빈곤선)의 평균
*빈곤선: 중위소득의 50%
**아동 양육 가구: 18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

두 번째로 각 제도 확대 시나리오별 양육부담 완화 효과는 통계청의 2021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고, 아동양육가구에서 아동 양육을 위한 지출 대비

아동수당 지급액의 비중을 주요 지표로 한다. 대상가구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 중이면서 부모와 자녀 2세대로 이루어진 가정이며, 앞 장의 자녀 양육비용 추계내역과 같이 자녀에 대한 지출 항목의 합계를 가구의 아동 양육부담으로 정의하였다.

## 나. 분석결과: 빈곤완화 효과

### 1) 대상연령 확대 시

현행과 같이 수당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을 유지하되, 대상연령이 확대되면서 수당 지급 가구 수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아동양육가구의 빈곤율과 빈곤갭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다음 표). 수당 지급 대상이 18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될 경우,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약 21만 2천 원이며, 빈곤율은 현행(8세 미만) 대비 약 16.4% (10.86 → 9.08%), 빈곤갭은 약 6.2%(29.73 → 27.89%) 낮은 수준이다.

〈표 5-3〉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별 빈곤 완화 효과(대상연령 확대)

구분	현행	대상연령 확대 시		
		12세 미만	15세 미만	18세 미만
가구당 평균 지급액 (만원, 연간)		191.0	205.1	211.5
아동양육가구 평균 균등화소득(만원, 연간)	3,428.7	3,493.6	3,514.0	3,532.9
아동양육가구 빈곤율(%)	10.86	9.73	9.40	9.08
빈곤갭(%)	29.73	28.74	28.36	27.89

### 2) 다자녀 추가지원 시

연령 기준은 현행과 같이 8세 미만으로 하되, 둘째아 이상부터 지급금액을 5만원씩 추가할 경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20만 원 수준이며, 수당 가구 수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앞의 대상연령 확대 시나리오에 비해 빈곤 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빈곤율은 현행과 대비했을 때 약 6.7% 감소하고, 빈곤갭은 약 2.5% 낮아진다(다음 표).

〈표 5-4〉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별 빈곤 완화 효과(다자녀 추가지원)

구분	현행	다자녀 추가지원 시
가구당 평균 수급액 (만원, 연간)		200.4
아동양육가구 평균 균등화소득(만원, 연간)	3,428.7	3,473.2
아동양육가구 빈곤율(%)	10.86	10.13
빈곤갭(%)	29.73	28.99

### 3) 연령 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원 시

수급 대상(연령) 확대와 다자녀 추가지원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수급가구의 수 및 평균 수급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빈곤 완화 효과도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수당 지급 대상이 18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둘째아 이상에 수급액이 추가될 경우, 평균 수급액은 가구당 약 26만 6천 원 정도이며, 빈곤율은 현행 대비 약 21.4%(10.86 → 8.54%), 빈곤갭은 약 5.8% 낮아진다(29.73 → 28%)(다음 표).

〈표 5-5〉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별 빈곤 완화 효과(대상연령 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원)

구분	현행	대상연령 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원 시			
		8세 미만	12세 미만	15세 미만	18세 미만
가구당 평균 수급액 (만원, 연간)		200.4	232.0	255.2	266.0
아동양육가구 평균 균등화소득(만원, 연간)	3,428.7	3,473.2	3,506.9	3,533.8	3,558.4
아동양육가구 빈곤율(%)	10.86	10.13	9.38	9.04	8.54
빈곤갭(%)	29.73	28.99	29.04	28.26	28.00

## 다. 분석결과: 양육부담 완화 효과

현재 아동수당은 자녀 수 혹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둘째아 이상에 대해 5만원씩 수당금액을 확대할 경우 아동양육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 전체 아동이 대상인 안을 가정하였으며, 다음 표는 양육부담 차원에서 현행과 같은 1인당 10만원 지

급안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안의 효과를 비교한 표이다. 현행과 같은 정액 급여 방식에서 자녀 양육부담(자녀에 대한 직접지출+공통지출) 경감에 대한 아동수당의 기여는 약 4.5%이고, 가구 총지출의 2.9% 수준이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추가될 경우에는 그 규모가 약 1%p 증가하게 된다

〈표 5-6〉 다자녀 추가지원 시 자녀 양육부담 완화 효과(전체)

(단위: 원/월)

구분	(A) 자녀 양육비용	(B) 공통지출	(C) 가구 총지출	(D) 아동수당	아동수당/양육 부담(D/(A+B))	아동수당/가구 총지출(D/C)
1인당 10만원	584,700	3,008,408	4,973,824	162,475	4.5%	2.9%
다자녀 추가 지원 시				197,782	5.5%	3.6%

이를 가구 내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 경감에 대한 아동수당의 기여도가 높아지며,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현재 7.6%에서 11.4%까지 증가하게 된다(다음 표).

〈표 5-7〉 다자녀 추가지원 시 자녀 양육부담 완화 효과(자녀 수별)

(단위: 원/월)

자녀 수	구분	(A) 자녀 양육비용	(B) 공통지출	(C) 가구 총지출	(D) 아동수당	아동수당/양육 부담(D/(A+B))	아동수당/가구 총지출(D/C)
1명	1인당 10만원	412,646	2,891,269	4,655,225	100,000	3.0%	2.0%
	다자녀 추가 지원 시				100,000	3.0%	2.0%
2명	1인당 10만원	714,270	3,080,679	5,224,934	200,000	5.3%	3.4%
	다자녀 추가 지원 시				250,000	6.6%	4.2%
3명 이상	1인당 10만원	823,829	3,271,503	5,346,298	309,211	7.6%	5.0%
	다자녀 추가 지원 시				468,422	11.4%	7.6%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소득수준별 영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수당의 기여도가 높는데 구조인데, 다만 다자녀에 대해 지원이 추가될 경우 5분위에서는 약 22.7%(3.6 → 4.4%)가 상승하고, 2분위 이하에서는 약 20.2%(6.8 → 8.1%)가 상승하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수당 확대 시 양육부담 완화 효과가 더 높다(다음 표).

〈표 5-8〉 다자녀 추가지원 시 자녀 양육부담 완화 효과(소득수준별)

(단위: 원/월)

소득수준	구분	(A) 자녀 양육비용	(B) 공통지출	(C) 가구 총지출	(D) 아동수당	아동수당/양육 부담(D/(A+B))	아동수당/가구 총지출(D/C)
2분위 이하	1인당 10만원	339,210	1,948,047	2,711,730	154,980	6.8%	5.1%
	다자녀 추가 지원 시				186,231	8.1%	6.1%
3분위	1인당 10만원	405,936	2,372,299	3,513,502	159,814	5.8%	4.1%
	다자녀 추가 지원 시				193,706	7.0%	4.9%
4분위	1인당 10만원	520,107	2,962,624	4,637,681	161,200	4.6%	3.1%
	다자녀 추가 지원 시				195,920	5.6%	3.8%
5분위	1인당 10만원	837,487	3,804,049	6,952,564	167,870	3.6%	2.2%
	다자녀 추가 지원 시				205,989	4.4%	2.6%

정리하면, 가구 총지출에 대비한 자녀 양육부담 총액(자녀에 대한 직접지출+공통지출)은 평균 약 72.2% 수준으로, 자녀에 대한 직접지출은 총지출의 11.6% 정도이다. 이러한 양육부담은 가구 소득수준이 낮거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지출 대비 그 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양육 중인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에는 양육비용이 총지출 중 71%를, 3명 이상일 경우에는 76.6%를 차지하게 된다. 만일 아동수당의 적용 연령을 확대하여 18세 미만 전체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3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이 양육비용 총액 중 7.7% 정도 기여하게 되고, 다자녀에 대해 지원을 추가할 경우 10.4%를 차지하게 된다.

[그림 5-1]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확대 방향별 양육부담(가구총지출 대비 양육비용)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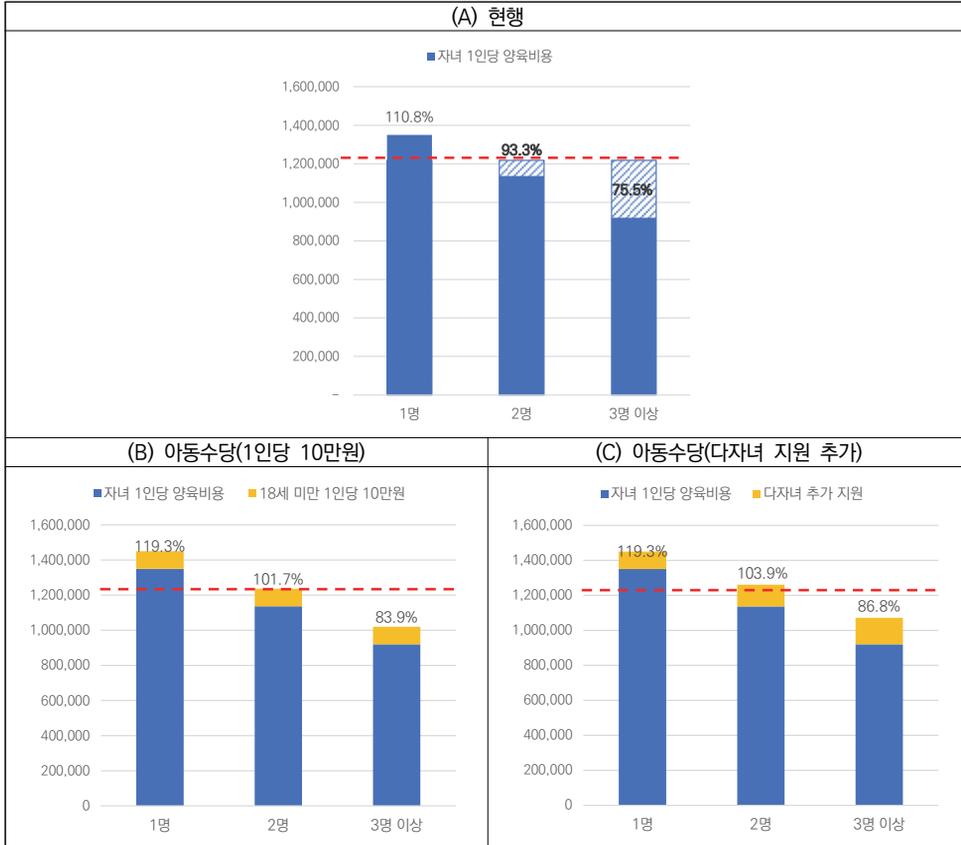
주: 1) (B)안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연령 확대); (C)안은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안(다자녀 지원 추가)

2) (A) 그래프의 레이블은 가구 총지출 대비 자녀 양육비용 비중(%); (B), (C)의 레이블은 자녀 양육비용(자녀지출+공통지출) 중 아동수당의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 이상), 2021년 원자료 분석.

이번에는 1인당 비용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양육비용 보충효과를 살펴보면, 특별히 양육 중인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전체에 비해 75.5% 수준에 불과하다(다음 그림 (A)).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적용 연령을 18세 미만 전체로 확대할 경우 3명 이상 양육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전체 평균 대비 83.9%까지 상승하고(다음 그림 (B)),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경우에는 86.8%까지 상승한다(다음 그림 (C)).

[그림 5-2]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확대 방향별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차이



주 : 1) (B)안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연령 확대); (C)안은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안(다자녀 지원 추가)

2) 빨간색 점선은 전체 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자녀에 대한 직접지출+공통비용)

3) 레이블은 전체 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 대비 자녀 수별 1인당 양육비용(아동수당 포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이상). 2021년 원자료 분석.

## 제2절 제도개선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소요재정은 기본적으로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도별 대상인구(아동) 수와 1인당 지급금액(안)을 활용하여 추계한다. 연도별 대상자 수는 통계청의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인용하였고, 아동수당 금액은 앞의 경우와 같이 1인당 월 10만 원 및 다자녀 추가지원안(출생순위별 10/15/2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과 국비, 지방비 지출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표 5-9〉 추계산식

- 연간 소요재정(전체)=대상자 수×아동수당 급여액(월)×12×집행계수(99.6%)
- 연간 소요재정(국비)=연간 소요재정(전체)×'23년 평균보조율(75.64%)
- 연간 소요재정(지방비)=연간 소요재정(전체)×(1-'23년 평균보조율)

자료: 저자 작성

### 1. 대상연령 확대 시

먼저 현행 8세 미만에 대해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유지할 경우, 2023년에는 약 253만 명의 아동에 대해 약 3조 23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국가 부담은 약 2조 2,870억 원 정도이다(다음 표). 이후 대상인구의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5년 후인 2027년에는 약 2조 4,116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3년 대비 약 79.8% 수준이다.

〈표 5-10〉 현행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대상자 수	2,529,742	2,327,864	2,175,590	2,075,841	2,017,717
아동수당(원/월)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소요재정(연간)	3,023,548	2,782,263	2,600,265	2,481,045	2,411,575
- 국비	2,287,011	2,104,504	1,966,841	1,876,663	1,824,116
- 지방비	736,536	677,759	633,425	604,383	587,460

자료(대상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3,23.12.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3,23.12.26) 인출)

수당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을 유지하면서 대상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2023년 기준 약 432.4만 명의 아동에 대해 약 5조 1,68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국가 부담은 약 3조 9,092억 원이다. 이는 현행 8세 미만 기준안과 비교했을 때 약 171% 수준이며,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약 8조 4,210억 원(국비 6조 3,696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현재(3조 235억 원)의 약 2.8배이다(다음 표). 다만 이후 아동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소요재정도 점차 감소하게 된다.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2027년에는 총 7조 3,994억 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이는 현재(3조 235억 원)의 2.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 5-11〉 연령확대 시나리오별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

(단위: 명, 백만원)

대상연령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12세 미만	대상자 수	4,324,142	4,080,350	3,851,891	3,665,106	3,484,179
	소요재정	5,168,215	4,876,834	4,603,780	4,380,535	4,164,291
	- 국비	3,909,237	3,688,837	3,482,299	3,313,436	3,149,870
	- 지방비	1,258,977	1,187,997	1,121,481	1,067,098	1,014,421
15세 미만	대상자 수	5,686,017	5,462,580	5,252,258	5,020,301	4,810,732
	소요재정	6,795,928	6,528,876	6,277,499	6,000,264	5,749,787
	- 국비	5,140,440	4,938,442	4,748,300	4,538,600	4,349,139
	- 지방비	1,655,488	1,590,434	1,529,199	1,461,664	1,400,648
18세 미만	대상자 수	7,045,642	6,836,570	6,614,945	6,379,689	6,190,896
	소요재정	8,420,951	8,171,068	7,906,182	7,625,004	7,399,359
	- 국비	6,369,608	6,180,596	5,980,236	5,767,553	5,596,875
	- 지방비	2,051,344	1,990,472	1,925,946	1,857,451	1,802,484

자료(대상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23.12.26. 인출)

## 2. 다자녀 추가지원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수당을 추가지원할 경우의 소요재정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출산순위별 아동 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2021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출산순위별 아동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23~2027년의 연도별 추계인구 대비 출산순위별 아동 수를 추정하였다. 한편, 2021년 기준 출산순위별 아동

수는 <표 5-12>에서와 같이 2021년을 0세로 기준점으로 하여 이전 출생연도를 고려하여 연령별 출산순위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표 5-13>와 같이 구한다. 예를 들어 7세 이하 인구에서 첫째아는 53.8%, 둘째아는 37%, 셋째아 이상은 9.2%를 차지하며, 연도별로 아동 수는 점차 감소하나 이러한 출산순위별 아동 비중(%)은 향후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표 5-12> 연령별 출산순위의 산출과정

	만17세	만16세	...	만2세	만1세	0세
출산순위별	2004	2005	...	2019	2020	2021
총계	476,958	438,707		302,676	272,337	260,562
1아	241,710	225,090		168,477	154,017	147,950
2아	185,511	167,881		108,391	95,635	91,287
3아	40,883	37,400		22,318	19,497	18,387
4아	4,076	3,923		2,731	2,520	2,327
5아	578	519		446	387	402
6아	118	128		115	107	81
7아	40	29		23	26	22
8아 이상	20	26		21	27	17
미상	4,022	3,711		154	121	89

주: 출산순위 미상인구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 22.12.26. 인출)

<표 5-13> 출산순위별 아동 수(2021년 기준)

출산순위별	7세 이하		11세 이하		14세 이하		17세 이하	
	명	%	명	%	명	%	명	%
총계	2,793,574	100	4,650,118	100	6,048,067	100	7,403,975	100
1아	1,502,110	53.8	2,450,919	52.7	3,187,315	52.7	3,887,276	52.5
2아	1,033,093	37.0	1,743,473	37.5	2,272,465	37.6	2,798,038	37.8
3아 이상	258,371	9.2	455,726	9.8	588,287	9.7	718,661	9.7

주: 출산순위 미상인구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 22.12.26. 인출)

우선 현행과 같이 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되 둘째아 이상부터 월 5만 원씩 추가지원 하게 될 경우, 2023년에는 약 253만 명의 아동에 대해 약 3조 8,623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다음 표). 이 중 국비는 약 2조 9,214억 원이고, 이는 1인당 지원금액이 10만 원으로 동일한 현행(2조 2,870억 원) 대비 약 1.3배 높은 수준이다.

〈표 5-14〉 다자녀 추가지원 시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2023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계
대상자 수	1,360,247	935,525	233,970	2,529,742
아동수당(원/월)	100,000	150,000	200,000	-
소요재정	1,625,767	1,677,209	559,281	3,862,258
- 국비	1,229,730	1,268,641	423,040	2,921,412
- 지방비	396,037	408,568	136,241	940,846

다만 앞의 경우와 같이 연도별로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 소요재정도 점차 감소하게 되며(다음 표), 2027년에는 약 3조 80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15〉 다자녀 추가지원 시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대상자 수	2,529,742	2,327,864	2,175,590	2,075,841	2,017,717
소요재정	3,862,258	3,554,043	3,321,560	3,169,269	3,080,529
- 국비	2,921,412	2,688,278	2,512,428	2,397,235	2,330,112
- 지방비	940,846	865,765	809,132	772,034	750,417

### 3. 연령 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원 시

세 번째로 대상연령을 확대하고 둘째아 이상부터 현재 10만원에서 5만 원씩 추가지원하는 안에 대해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 아동수당법 개정 발의안에 따라 12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을 때, 2023년에 약 6조 6,436억 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이는 현행 기준 지출(3조 235억 원)의 약 2.2배에 해

당한다<sup>12)</sup>.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2023년 기준 약 10조 8,39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데,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상인구 수가 감소하면서 2027년에는 약 9조 5,157억 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된다(다음 표).

〈표 5-16〉 시나리오별 대상자 수 및 연간 소요재정

(단위: 명, 백만원)

대상연령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12세 미만	대상자 수	4,324,142	4,080,350	3,851,891	3,665,106	3,484,179
	소요재정	6,643,577	6,269,017	5,918,015	5,631,040	5,353,065
	- 국비	5,025,202	4,741,885	4,476,386	4,259,318	4,049,058
	- 지방비	1,618,375	1,527,133	1,441,628	1,371,721	1,304,007
15세 미만	대상자 수	5,686,017	5,462,580	5,252,258	5,020,301	4,810,732
	소요재정	8,733,689	8,390,491	8,067,437	7,711,153	7,389,256
	- 국비	6,606,162	6,346,567	6,102,210	5,832,716	5,589,233
	- 지방비	2,127,527	2,043,924	1,965,228	1,878,437	1,800,023
18세 미만	대상자 수	7,045,642	6,836,570	6,614,945	6,379,689	6,190,896
	소요재정	10,829,506	10,508,152	10,167,503	9,805,903	9,515,719
	- 국비	8,191,438	7,948,366	7,690,699	7,417,185	7,197,690
	- 지방비	2,638,068	2,559,786	2,476,804	2,388,718	2,318,029

- 12)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5.26., 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 추가 비용소요액은 다음 표와 같다(국회예산정책처, 2022). 본 연구의 추계 결과와 연평균 약 1,480억 원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재정추계 가정상 아동수당 지급률(예정치: 97.5%(‘21년 기준) vs. 본 연구: 99.6%(‘22년 지급률 기준))과 미래 출산순위별 아동 수 추정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안 제4조제1항)	35,007	33,533	31,700	29,876	27,649	157,765	31,553
- 국비	25,765	24,681	23,332	21,988	20,350	116,115	23,223
- 지방비	9,242	8,853	8,369	7,887	7,299	41,650	8,330

- 주: 1. 국비는 2022년 예산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3.6%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2021.12.)의 12세 미만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12세 미만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가 바뀔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5-3]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별 연간 소요재정(국비+지방비)

(단위: 십억 원)



앞서 살펴본 제도 확대 시나리오들의 지출규모를 비교하면, 연령 확대 시나리오가 적용인구 차원에서 다자녀 추가지원 시나리오에 비해 그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지출 증가폭이 더 크고, 특별히 현행 8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상연령을 확대할 경우 그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크다(3조 240억 원 → 5조 1,680억 원: 1.7배). 다만 저출산 현상 지속 시 대상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추후 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지출 대비 소득분배 개선효과

지금까지의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예상 지출의 증가와 앞 절의 빈곤 완화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지출 대비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즉, 각 시나리오별로 현행(8세 미만, 1인당 10만원) 대비 소요지출의 증가폭 대비 빈곤지표 개선폭을 산출하여 단위지출당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파악하였다.

다음 표를 살펴보면, 대상연령만 확대하는 안 보다는 다자녀에 대해 추가지원을 함께 실시할 때 지출 대비 빈곤완화효과가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단 12세 미만 까지에 대해서만 연령 확대와 동시에 다자녀 지원이 추가되었을 때 지출 대비 빈곤율 개선 효과가 대상 연령만 확대할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빈곤율을 기준

으로 할 때에는 15세 미만까지 연령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지원이 추가될 경우가 12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지출 대비 빈곤완화효과가 더 크다.

〈표 5-17〉 시나리오별 지출 대비 소득분배 개선효과(2020년 기준)

지표	현행 (8세 미만)	연령 확대			다자녀 추가지원 & 연령 확대			
		12세 미만	15세 미만	18세 미만	8세 미만	12세 미만	15세 미만	18세 미만
대상자 수(명)	3,110,403	4,942,043	6,305,870	7,696,012	3,110,403	4,942,043	6,305,870	7,696,012
소요재정(백억 원)	371.76	590.67	753.68	919.83	474.88	759.29	968.58	1182.92
빈곤율(%)	10.86	9.73	9.40	9.08	10.13	9.38	9.04	8.54
빈곤갭(%)	29.73	28.74	28.36	27.89	28.99	29.04	28.26	28.00
지출 대비 빈곤율 개선효과*		-0.0052	-0.0038	-0.0032	-0.0071	-0.0038	-0.0031	-0.0029
지출 대비 빈곤갭 개선효과*		-0.0045	-0.0036	-0.0034	-0.0072	-0.0018	-0.0025	-0.0021

\*지출 대비 빈곤율(빈곤갭) 개선효과(%p/백억원)=(시나리오별 빈곤율(빈곤갭)-현행 빈곤율(빈곤갭))/(시나리오별 소요재정-현행 소요재정)

### 제3절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 1. 부정청구 요건에 대한 사전 고지 방안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아동수당 담당자들은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정지 또는 환수와 관련하여 수급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관련 제도의 주요 개선과제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를 요구하고 있다(〈표 4-9〉~〈표 4-10〉 내용 참조). 이는 현행법상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적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급아동 보호자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청구 요건에 대한 사전고지는 지급결정통지서에 부가하여 부정청구 요건과 부정청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됨에 따른 법률관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불이익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안내문을 교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 2. 수급권자인 아동의 출입국사실 신고의무의 신설 방안

법 제15조에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수급권자의 보호자 등이 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사유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65%가 해외장기체류와 관련한 신고율이 0~5%로 매우 저조하고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 지급정지에 대한 강한 민원 제기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의 문제는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를 행정담당자가 아는데 충분하며, 이를 아동수당의 수급권자 아동의 보호자가 알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즉, 수급권자인 아동의 해외장기체류가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그 보호자로 하여금 예상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실적으로 이 보다는 보다 명료하게 법조항을 통해 수급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동의 출입국 사실을 신고 받은 지급기관은 90일 이상 입국사실이 없는 경우 지급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줄 수 있으며, 지급정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입국하게 되면 그 사실을 지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게 유도하는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수당법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보호자가 아동의 출입국사실을 미리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3. 제재부가금제도의 신설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준용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에 있어 최근 3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저조한 환수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현재 해외장기체류에 대한 환수결정 건 당 환수금액이 338,874원 수준으로 소액이다. 미환수금 총액이 10만원인 지자체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지자체의 경우 환수결정 건당 직접적인 환수비용(18,289.7원) 이외 해당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개시해야 하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절차와 관련한 비용이 환수금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환수포기도 재·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재부가금은 소액의 아동수당 부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부정수급 한 금액에 더하여 제재적 성격의 부가금이 부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수급권자의 보호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상 의무를 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서 제재부가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과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재부가금제도를 준용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은 제17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를 두어서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기준, 제재부가금의 징수절차 등을 제도화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공공재정환수법의 준용방안으로는 아동수당법에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하면서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부정 청구에 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을 따른다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안이 가능하다.





- 고제이, 신윤정, 강신욱, 오미애, 안형석. (2015).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 자료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제이, 고경표. (201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제이, 김미곤, 이철희, 홍석철, 전병목, 여유진, 이소영, 조성은, 전진아, 김은정, 노용환, 서문희, 정희정, 최은영, 김성아, 권선정, 고경표, 서효진. (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 제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고제이, 박노옥, 하솔잎, 이아영, 안 영. (2022). 사회보장 재정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 적 기반 연구 (II) :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성 진단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 추계과.
- 김나영. (2019.3.21). 출산장려에 목적 두고 아동수당 확대해야[정책-정책제안]. 더 퍼블릭뉴스.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9>.
- 김수정. (2006).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참여연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민경선. (2020). 공공재정지원 관련 법률의 제재규정의 적정성 확보 방안-공공재정환수법상 환 수와 제재부과금 중심으로. 법학연구, 62, 65-8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 19123호, 2022. 12. 27.,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법률 제18213호, 2021. 6. 8.,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 공재정환수법). 법률 제18575호, 2021. 12. 7.,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법률 제16429호, 2019. 1.15.,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법률 제18579호, 2021. 12. 14.,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899호, 2022. 06. 10., 일부개정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3-0515(2013.11.29. 회신)
- 신윤정, 김지연. (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럽연합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858&langId=en>
- 이영숙, 하솔잎, 김은정, 국중호, 손동기, 고제이, 박영선. (2020). 아동수당 발전방향별 추진전략.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영. (2019). 아동수당 확대와 쟁점. “아동가족정책으로서의 현금수당: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이후 발전방향”. 제13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발표자료.
- 통계청. (2019-2021).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 1인 이상)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MDIS 원격접근서비스 이용, 23.1.12. 인출.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1a). 가계금융복지조사(2020년),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 23.1.10. 인출.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1b). 가계금융복지조사(2020년),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3), 23.1.12. 인출.
- 통계청. (2022). 2021년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지출, 전체가구\_1인 이상). 통계청 MDIS 원격접근서비스 이용, 23.1.11. 인출.
- 통계청. (2022). 인구동향조사(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 22.12.26. 인출.
- 통계청. (2022).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22.12.26. 인출.
-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Family Benefit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국가별 추가 참조 홈페이지>

노르웨이

<https://www.nav.no/en/home/benefits-and-services/relatert-informasjon/child-benefit#chapter-1>

덴마크

<https://lifeindenmark.borger.dk/family-and-children/family-benefits/child-and-youth-benefits>

독일 <https://handbookgermany.de/en/child-benefit>

라트비아

[https://www.vsaa.gov.lv/en/services/state-family-allowance?utm\\_source=https%3A%2F%2Fwww.google.com%2F](https://www.vsaa.gov.lv/en/services/state-family-allowance?utm_source=https%3A%2F%2Fwww.google.com%2F)

룩셈부르크

<https://guichet.public.lu/en/citoyens/brexit/allocations-familiales/allocations-familiales.html>

리투아니아

<https://socmin.lrv.lt/en/activities/family-and-children/social-assistance-to-families-and-children>

스웨덴 <https://www.forsakringskassan.se/english/parents/child-allowance>

스위스

<https://www.ch.ch/en/family-and-partnership/maternity-and-paternity/pregnancy-and-birth/family-allowance/>

슬로바키아 <https://www.mic.iom.sk/en/social-issues/social-support-benefits.html>

슬로베니아 <https://www.gov.si/teme/otroski-dodatek/>

아이슬란드 <https://www.skatturinn.is/english/individuals/child-benefits/>

아일랜드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social\\_welfare/social\\_welfare\\_payments/social\\_welfare\\_payments\\_to\\_families\\_and\\_children/child\\_benefit.html](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social_welfare/social_welfare_payments/social_welfare_payments_to_families_and_children/child_benefit.html)

에스토니아

<https://sotsiaalkindlustusamet.ee/en/family-and-child-protection/kinds-family-allowances>

<https://www.sotsiaalkindlustusamet.ee/en/family-and-child-protection/applicant-family-allowances#Pereh%C3%BCvitiste%20taotlemine>

오스트리아

<https://www.bundeskanzleramt.gv.at/en/agenda/family/family-benefits/family-allowance-and-tax-credit-for-children.html>

이탈리아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22-02-06/italy-single-and-universal-allowance-for-dependent-children-established/>

체코 <https://www.mpsv.cz/web/en/state-social-support>

포르투갈 <https://en.seg-social.pt/family-benefits-for-children-and-young-people>

프랑스 [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56?lang=en>

핀란드 <https://www.kela.fi/web/en/child-benefit>

헝가리 <https://helpersfinance.hu/family-allowance-in-hungary/>

네덜란드 <https://www.svb.nl/en/child-benefit>



[부록 1] 조사표: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 조사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일반국민)」 ID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제도와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본 설문지의 응답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0월

- 주 관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시 행 : 리얼미터

**SQ. 응답자 선정**

**SQ1. 귀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recode*

- ① 만 18세 이하 *조사대상 아님*
- ② 19~29세                      ③ 30대                      ④ 40대
- ⑤ 50대                              ⑥ 60대
- ⑦ 만 70세 이상 *조사대상 아님*

**SQ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광역시/도는 다음 중 어느 곳 이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 ⑮ 경남    ⑯ 제주

**SQ3. 귀하께서는 남성이십니까? 여성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 조사에 참여하시기 전 '아동수당'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15초 이상 노출

### 【아동수당】

#### □ 아동수당이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 대하여, 가구원 수나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아동수당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지급 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예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A1. 귀하께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임신 중인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① 있다 ( \_\_\_\_\_ 명) ☞ A1-1. 문항으로
- ② 없다 ☞ A3. 문항으로

**A1-1. 각 자녀는 만으로 몇 살이고, 재학 중인 학교는 어디입니까?**

구분	만	연령	구분
<input type="checkbox"/> 첫째 자녀	만	세	① 취학 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고등학생 이상
<input type="checkbox"/> 둘째 자녀	만	세	① 취학 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고등학생 이상
<input type="checkbox"/> 셋째 자녀	만	세	① 취학 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고등학생 이상
<input type="checkbox"/> 넷째 자녀	만	세	① 취학 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고등학생 이상
<input type="checkbox"/> 다섯째 이상	만	세	① 취학 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고등학생 이상

**A2. 귀하는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십니까?**

- ① 받고 있다 ☞ A2-1. 문항으로
- ② 받고 있지 않다 ☞ A3 문항으로

**A2-1. 귀 가정에서는 지급 받으신 아동수당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혹은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보기 1~6 로테이션)**

- ①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
- ② 자녀 물품 구입(기저귀, 유모차, 젖병, 이불, 의류, 신발, 장난감, 도서 등)
- ③ 자녀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
- ④ 돌봄·교육비(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 등 정규 과정 교육비, 학원·학습지 등 사교육비, 방과후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비용 등)
- ⑤ 금융상품(자녀 이름으로 된 저축·보험 등)
- ⑥ 기타(자세히 : \_\_\_\_\_ )

**A3. 귀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보기 1~6 순·역순 배열)**

- ① 매우 만족한다 ☞ B1. 문항으로
- ② 만족하는 편이다 ☞ B1. 문항으로
- ③ 불만족하는 편이다 ☞ A3-1. 문항으로
- ④ 매우 불만족한다 ☞ A3-1. 문항으로

**A3-1. 귀하께서 현행 아동수당 제도에 '불만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
- ② 지급 대상 아동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임
- ③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
- ④ 기타 ( 자세히 : \_\_\_\_\_ )

## B. 아동수당 개선방안

**B1. 귀하는 다음 중 아동수당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
- ②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계소득 보전)
- ③ 향후 사회구성원 부양을 담당하는 미래세대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 ④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

**B2. 만약, 아동수당제도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다음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확대 방안제시 순서 로테이션)**

확대방안	금액 인상	지급 연령 확대	아동수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내용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즉, 첫째보다는 둘째에, 둘째보다는 셋째 자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선호순위	_____ 순위	_____ 순위	_____ 순위

**B3. 만약, 아동수당제도를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
- ②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 ③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8세 이상은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④ 기타 ( 자세히 : \_\_\_\_\_ )

**B3-1.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면, 현재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액을 얼마나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자신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참고] 2019년 자녀 양육비용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약 78만원 입니다

- ① 현재 지급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 유지(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
- ② 실질 양육비용의 15%까지 보조(최대 월 12만원)
- ③ 실질 양육비용의 20%까지 보조(최대 월 15만원)
- ④ 실질 양육비용의 25%까지 보조(최대 월 20만원)

**B4. 아동수당제도를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한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 ②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
- ③ 일부 연령대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 ④ 기타 ( 자세히 : \_\_\_\_\_ )

**B4-1.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면, 몇 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
- ②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만12세 미만)
- ③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졸업 때까지(만 15세 미만)
- ④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

**B5. 아동수당제도 확대에 있어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에게 '얼마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출생 순위의 상관없이 8세 미만 아동당 10만원 지급)**

다음 중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예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① 현재처럼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만원 지급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②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이상부터 매월 2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2만원	월 12만원
③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매월 2만원, 셋째 이상부터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2만원	월 15만원
④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이상부터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⑤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부터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20만원

**B5-1.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차등 지원'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보기 1~4 순·역순 배치)**

- ① 매우 도움이 됨
- ② 약간 도움이 됨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다음은 현재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해외체류 및 이주아동'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B6. 현재 해외 체류기간(해외출생, 복수국적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입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①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②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
- ③ 기타 (자세히 : \_\_\_\_\_ )

**B6-1.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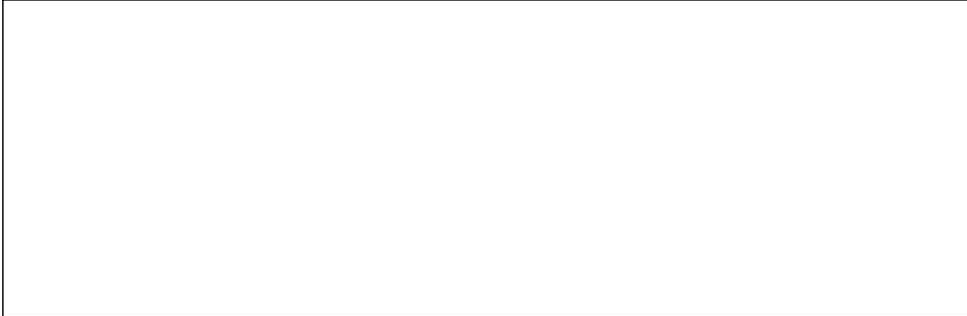
- ①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현행 유지)
- ② 급여정지기준이 되는 해외체류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아동수당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받도록 한다.
- ③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므로 급여정지기준이 되는 해외체류기간을 줄여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 한다.

**B7.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인정 및 특별기여자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아동(만 8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①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이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
- ②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

**B8. 아동수당 확대 및 제도개선 관련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아동수당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the respondent to provide their comments and suggestions regarding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child allowance system.

## DQ. 배경문항

**DQ1.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미만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전문대학교(2~3년제) 졸업
-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 ⑤ 대학원 재학 이상

**DQ1.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현재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자영업 (상업,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 ② 판매/영업/서비스직 (상점 점원, 세일즈맨, 방문 판매원, 미용사 등)
- ③ 기능/숙련직 (운전기사, 세탁, 선반, 목공, 기능공 등)
- ④ 생산/노무직 (제조업 생산직, 현장직업, 일용노무직, 청소관리, 경비원 등)
- ⑤ 사무직 (차장 이하 사무직, 초중고 교사, 6급이하 공무원)
- ⑥ 경영/관리직 (5급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급 이상)
- ⑦ 전문/자유직 (변호사, 의사, 교수, 예술가, 종교지도자 등)
- ⑧ 학생
- ⑨ 가정주부 (가사와 육아만 하는 전업주부)
- ⑩ 농업/임업/축산업/어업
- ⑪ 은퇴자 (연금생활자 등)
- ⑫ 무직
- ⑬ 기타
- ⑭ 응답거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전문가)」

ID □□□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제도와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본 설문지의 응답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0월

■ 주 관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시 행 : 리얼미터

**SQ. 응답자 선정**

**SQ1. 귀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recode*

- ① 만 18세 이하 *조사대상 아님*
- ② 19~29세                      ③ 30대                      ④ 40대
- ⑤ 50대                              ⑥ 60대
- ⑦ 만 70세 이상 *조사대상 아님*

**SQ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광역시/도는 다음 중 어느 곳 이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 ⑮ 경남    ⑯ 제주

**SQ3. 귀하께서는 남성이십니까? 여성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 조사에 참여하시기 전 '아동수당'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15초 이상 노출

### 【아동수당】

#### □ 아동수당이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 대하여, 가구원 수나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아동수당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지급 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예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A1. 귀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보기 1~6 순역순 배열

- ① 매우 만족한다 ☞ B1. 문항으로
- ② 만족하는 편이다 ☞ B1. 문항으로
- ③ 불만족하는 편이다 ☞ A3-1. 문항으로
- ④ 매우 불만족한다 ☞ A3-1. 문항으로

**A1-1. 귀하께서 현행 아동수당 제도에 '불만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
- ② 지급 대상 아동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임
- ③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
- ④ 기타 ( 자세히 : \_\_\_\_\_ )

**B. 아동수당 개선방안**

**B1. 귀하는 다음 중 아동수당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
- ②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계소득 보전)
- ③ 향후 사회구성원 부양을 담당하는 미래세대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 ④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

**B2. 만약, 아동수당제도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다음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확대 방안제시 순서 로테이션)**

확대방안	금액 인상	지급 연령 확대	아동수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내용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즉, 첫째보다는 둘째에, 둘째보다는 셋째 자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선호순위	____ 순위	____ 순위	____ 순위

**B3. 만약, 아동수당제도를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
- ②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 ③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8세 이상은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④ 기타 ( 자세히 : \_\_\_\_\_ )

**B3-1.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면, 현재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액을 얼마나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자신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참고] 2019년 자녀 양육비용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약 78만원 입니다

- ① 현재 지급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 유지(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
- ② 실질 양육비용의 15%까지 보조(최대 월 12만원)
- ③ 실질 양육비용의 20%까지 보조(최대 월 15만원)
- ④ 실질 양육비용의 25%까지 보조(최대 월 20만원)

**B4. 아동수당제도를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한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 ②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
- ③ 일부 연령대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 ④ 기타 ( 자세히 : \_\_\_\_\_ )

**B4-1.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면, 몇 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
- ②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만12세 미만)
- ③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졸업 때까지(만 15세 미만)
- ④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

**B5. 아동수당제도 확대에 있어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에게 '얼마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출생 순위의 상관없이 8세 미만 아동당 10만원 지급) 다음 중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예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① 현재처럼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만원 지급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②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이상부터 매월 2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2만원	월 12만원
③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매월 2만원, 셋째 이상부터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2만원	월 15만원
④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이상부터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⑤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부터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20만원

**B5-1.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차등 지원'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보기 1~4 순·역순 배치)**

- ① 매우 도움이 됨
- ② 약간 도움이 됨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다음은 현재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해외체류 및 이주아동'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B6. 현재 해외 체류기간(해외출생, 복수국적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입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①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②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
- ③ 기타 (자세히 : \_\_\_\_\_ )

**B6-1.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현행 유지)
- ② 급여정지기준이 되는 해외체류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아동수당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받도록 한다.
- ③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므로 급여정지기준이 되는 해외체류기간을 줄여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 한다.

**B7.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인정 및 특별기여자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아동(만 8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①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이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
- ②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

**B8. 아동수당 확대 및 제도개선 관련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아동수당 제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2] 조사표: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 조사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귀 지방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영아수당 제도 운영에 있어 수당의 신청/변경/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수행하는 온라인조사(모바일조사)로 응답에는 약 30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기 때문에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응답해주신 내용은 정책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조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입력 후 익명처리된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연구의 최종결과물(연구보고서, 설문조사 결과데이터 등)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이후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아동수당지급관리 제도 개선 등 아동수당제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00	(044- )
담당자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원희 부연구위원	(044-287-8107) (044-287-8498)



해당 항목에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귀하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시고, 부서와 담당하고 계신 핵심업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직] 시/군/구 지자체 드롭박스로 구현

지자체 선택	1) 지역	2)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1	서울	본청/강남구/강서구...
<input type="checkbox"/> 2	부산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3	대구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4	인천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5	광주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6	대전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7	울산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8	세종	본청
<input type="checkbox"/> 9	경기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0	강원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1	충북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2	충남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3	전북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4	전남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5	경북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6	경남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7	제주	본청

Q1-2. 귀하의 소속부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Q1-3. 귀하의 담당업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시) 아동수당 환수, 아동수당 지급, 등)

( )

Q2. 지난 2년간 장기해외체류(90일 이상)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결정 및 환수사례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사례 없는 경우 '0' 기입. 담당자 착오나 중복지급 등의 사유는 제외하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환수결정건수	환수건수 [로직] '환수결정건수'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입력 가능	환수율 [로직] 자동 노출 계산식=환수건수/환수결정건수*100
2020	( )건	( )건	( )%
2021	( )건	( )건	( )%

**Q3.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결정 대상 아동 중,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시 해외여권 사용 여부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확인 가능하십니까?**

- 1) (어느 정도) 확인 할 수 있다
- 2) 확인 할 수 없다 -> 문항 3-2로 이동

**Q3-1. 장기해외체류사유로 인한 환수결정 대상 아동 전체를 100%라 할 때 해외여권(복수국적) 사용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로직] 해외여권(복수국적아동)과 대한민국여권 비율 합이 100%가 되어야 함

[로직]응답 후 Q4 이동

연도	환수결정 대상	해외여권 (복수국적아동)	대한민국여권
2020	100%	( )%	( )%
2021	100%	( )%	( )%

**Q3-2.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_\_\_\_\_)

**Q4. 장기해외체류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즉, 환수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1개만 선택)**

- 1) 복수국적아동이 지자체에 변동신고 없이 해외여권으로 출국할 경우,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서
- 2) 해외장기체류 의심자 통보를 받았으나, 담당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과중 등으로 지급정지 결정 지연이나 착오로 인한 급여정지기간(국외체류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중 과오 지급 발생 ->Q5로 이동
- 3) 기타(\_\_\_\_\_) ->Q5로 이동

**Q4-1. 아동수당법 제15조 및 아동수당사업 지침에 따르면, 해외출생이나 복수국적 여부를 신청자가 신고해야 하며, 읍면동 담당자는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자 여부를 체크하여 확인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외여권 사본을 징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군구 담당자는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변동 알림 시 자격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국적 아동의 해외여권 사용 출입국 정보 인지/확인이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직] 응답 후 Q5로 이동

- 1) 아동수당 신청 시 보호자가 해외출생/복수국적 여부를 정확히 신고했는지(보호자의 불성실/부정 신고) 확인할 수 없어서 (즉, 복수국적 사실 미신고 아동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해외여권 사용 출입국 정보 통보를 받지 못함)

- 2)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 정비 미비
- 3) 기타(\_\_\_\_\_)

**Q5. 앞서 응답하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로직] Q4.에서 선택한 보기값 노출

( \_\_\_\_\_ )

**Q6. 아동수당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지급정지 사유발생·소멸한 경우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해외장기체류와 관련해서 수급아동 보호자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사례는 실제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아동수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신고율이 5%미만으로 극히 낮다(0%~5%미만)
- 2) 신고율이 매우 낮다(6%~30%미만)
- 3) 신고율이 다소 낮다(30%~50%미만)
- 4) 신고율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50%~70%미만)
- 5) 신고율이 높은편이다(70%~90%미만)
- 6) 신고율이 상당히 높다(90%~100%) ->Q7로 이동

**Q6-1. 변동사항에 대해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1개인 경우 1개만 선택)**

[로직] 최대 2개 선택 문항

- 1)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 2)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호자가 몰라서
- 3) 신고의무는 알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 4) 신고양식의 제출이 직접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에 한정되어있어 실제 신고절차가 매우 불편해서
- 5) 기타(\_\_\_\_\_)

**Q6-2 변동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까지 선택, 1개인 경우 1개만 선택)**

[로직] 최대 2개 선택 문항

[로직] 응답 후 Q7로 이동

- 1)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요건을 강화
- 2) 아동수당 수급 조건으로 보호자 교육 이수율 지침이나 법령에 명시하는 등의 수급조건 강화

- 3) 신고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변동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4) 기타 (\_\_\_\_\_)

**Q7.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아동수당의 과오지급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여 환수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까? 즉, 인지경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 1개를 선택해주시시오**

- 1) 아동수당 이외 기타 급여제도 등의 신청/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다가 업무담당자가 인지
- 2)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감사/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외부에서 인지
- 3) 기타 (\_\_\_\_\_)

〈※ 다음은 아동수당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환수를 완료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행정력이 소요되는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환수결정 1건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Q8. 아동수당 환수결정 후 환수대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한 행정비용은 통지 1회당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서 행정비용은 실제 등기비용 등 실비를 포함하여, 담당자가 처리하는데 사용한 업무시간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당 임금을 생각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1. 발송여부	2. 기간	3. 통지방법 (중복선택가능) [로직]복수응답 문항	4. 통지회수	5. 행정비용
사전환수 통지서	1) 발송한다 2) 해당없음 ->'환수통지서'로 이동	환수결정 후 ( ) 일 이내	1) 등기우편 2) 팩스 3) 이메일, 문자 등 기타	( ) 건	건당 ( ) 원
환수통지서		환수결정 후 ( ) 일 이내	1) 등기우편 2) 팩스 3) 이메일, 문자 등 기타	( ) 건	건당 ( ) 원
공시송달공고		통지서 반송 확인 후 ( ) 일 이내		( ) 건	건당 ( ) 원

**Q9. 귀하께서는 실제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환수대상 부재) 해외에 계속 체류 중이거나 아예 해외로 이주하는 등 환수대상이 국내에 살고 있지 않아서
- 2) (아동연령 초과) 환수대상 아동의 연령이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차감지급을 통한 환수가 불가
- 3) (환수액 대비 과도한 행정부담) 환수해야 하는 금액에 비해 환수를 위해 동원해야 하는 행정절차(예, 체납처분 등)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4) 기타 (\_\_\_\_\_)

〈※ 해외장기체류에 따른 아동수당 과오지급 방지 및 환수를 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Q10-1.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여부를 보호자가 신고했는지 여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 정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
- 2) 반대

**Q10-2. 일정 시간의 부모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수당(영아수당/부모급여 등 포함)을 지급, 보호자의 변동신고 등 의무사항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
- 2) 반대

**Q10-3.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시 선제적으로 일시 지급정지(시스템 자동 정지 등)하고, 체류기간 90일 이상시 최종 지급정지 결정하는 한편, 추후 입국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
- 2) 반대

**Q10-4. 90일 이상 해외체류 등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급여 “미생성” 및 변동알림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여정지 여부 결정, 추후 입국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
- 2) 반대

**Q10-5. 불성실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환수대상자 명단 등을 1년간 공표 하는 것과 같이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
- 2) 반대

〈※ 기타 아동수당 제도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Q11. 현재 아동수당법령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법원절차 진행,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을 60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급가능한 신청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민원(90일 등)이 있는데 일선현장의 민원 해소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개선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민원 방지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소급지급 가능한 신청기간을 늘리는데 찬성
- 2) 현재도 복지로 온라인 및 모바일 앱, 원스톱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주소지 불문 전국 읍면동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아 대상 14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정보 제공 등 충분히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소급지급 가능한 기간(60일 이내)을 민원인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강화 필요
- 3) “천재지변 등”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유가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Q12. 현재 아동수당(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가정양육수당 등 포함)의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급여정지사유 발생으로 보아 급여정지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의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급여정지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해외에 장기체류하며 단기간 입국과 출국 반복 등 부정적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국외체류기간 급여정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1) (찬성) 영유아기 복지지원제도 신설과 강화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하여 부적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급여정지기준 강화에 찬성함. 단,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할 때 시스템상 자동으로 급여가 정지되는 등 시스템 개선 필요
- 2) (반대) 현재 환수결정건의 대부분이 90일 이상 국외체류로 인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급여정지기준 강화시 지급정지 처리 주기가 짧아지고 환수결정건수 증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

Q13. 기타 아동수당 신청/지급, 사후관리 및 환수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DQ. 답례품(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tall 1잔)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핸드폰 번호)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개인정보는 답례품 지급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 연락처 당 한 번의 답례품만 지급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조사 참여에 대한 사례비 지급
    - 응답 결과에 대한 통계 자료 작성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조사 종료 후 3개월까지
  - 4. 사례품 지급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업무 위탁에 대한 업체 안내
    - 기프트콘 전송: 기프트앤
- 본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동의합니다 (이름 :                      휴대폰 번호 :                      )

2)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문 종료